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161-10

www.mohw.go.kr

2023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부록 개인정보보호지침, 권한관리통합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알리는 글

- 그 동안 각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 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선담당자들이 개별 사업 지침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별 다양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기술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동 「사회보장 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법령 또는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과 일선 담당자가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제도와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들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Chapter

01

총괄

| | |
|------------------------|----|
| I.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 3 |
| II.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 7 |
| III.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 12 |

Chapter

02

공통업무절차

제1장 | 상담·신청 25

| | |
|----------|----|
| I. 상 담 | 27 |
| II. 신 청 | 29 |
| III. 접 수 | 43 |

제2장 | 조 사 45

| | |
|----------------------------|-----|
| I. 조사개요 | 47 |
| II. 보장가구의 확정 | 52 |
| III. 소득조사 | 60 |
| IV. 재산조사 | 82 |
| V.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114 |
| VI. 소득인정액 산정 | 118 |
| VII. 부양의무자 조사 | 129 |
| VIII. 연령산정 방식 | 131 |
| IX.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 132 |
| X.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 | 135 |

| | |
|------------------------|------------|
| 제3장 보장결정 | 147 |
| Ⅰ. 개요 | 149 |
| Ⅱ.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49 |
| Ⅲ.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150 |
| Ⅳ. 보장결정 | 153 |
| Ⅴ. 통지 | 154 |
| Ⅵ. 이의신청 | 155 |
|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 159 |
| Ⅰ. 급여·서비스 개요 | 161 |
| Ⅱ. 복지급여 | 166 |
|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183 |
| 제5장 사후관리 | 195 |
| Ⅰ. 개요 | 197 |
| Ⅱ. 변동사항 관리 | 198 |
| Ⅲ. 기타 관리 | 206 |
| Ⅳ. 보장비용 환수 | 216 |
| Ⅴ. 반환명령 | 221 |
| 제6장 서식 | 223 |

Chapter

03**부 록**

| | |
|-------------------------|------------|
| 제1장 개인정보보호지침 | 305 |
| 제2장 권한관리 통합 지침 | ??? |

2023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주요사업별 제도 요약 p12~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 '23년도 주요 변경사항 반영 <p>※ 세부내용 본문 참조</p> |
| 직권신청 p31~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1)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조사, 누락서비스 등을 통해 급여 변경·추가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사후동이가 가능한 사업수행 시 직권신청 이후 동의 의사 확인 (2)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또는 가족, 후견인 등의 동이가 있어야 가능하고 - 신청조사·확인조사 결과 또는 보유자격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경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또한, 각 개별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3)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이음 신청·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 또는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 발견 시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연락(전화, 문자 등)하여 동의를사 확인 *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확인일시 및 시간, 담당공무원 및 대상자, 동의 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 ※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2항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 '동이가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산정하되,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사업에서 따라 산정 - 기존 신청서(참고)를 활용하거나 추가 동의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입력·제출 <p>※ 세부내용 본문 참조</p> |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 | <p>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신청</p> <p>(1)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 - 이 경우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신청에 대한 본인동의 절차 생략 <p>(2) 본인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3항)</p> <p>: 요건 1, 2에 둘다 해당하는 경우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1 : ① 파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 ③ 미성년자인 경우 - 요건2 :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대리인이 없는 경우 <p>(3)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이음 신청·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이 확인된 자 또는 위기(긴급상황) 가구(개인)로 확인된 자 중 동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인 동의 절차 생략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신청/제출 - 선 직권신청 후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보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나, 업무처리의 위임에 따른 경우 직권신청을 수행한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해당 -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 이후 절차는 본인 신청과 동일하게 관리 <p>(4) 대상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재산조사가 필요없는 복지 급여·서비스(현금 현물지원, 사회서비스 등) * 직권신청 불가한 사업 : 금융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사업, 소송수행 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의사 무능력자가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 <p>※ 세부내용 본문 참조</p> |
| <p>온라인 신청 p3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사업 28종 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종 복지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 |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 |
|--|---|--|--|---|---------|--|
| | 교육정보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장애인연금, 요금감면서비스, 아동수당, 여성 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 급여, 아동급식,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청소년특별지원, 에너지바우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영아수당(현금), 첫만남이용권 | 교육정보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요금감면서비스, 아동수당,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해산급여, 결식아동급식, 여성 장애인출산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청소년특별지원, 에너지바우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 방과후보육료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다문화 가족방문교육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3종,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 | | | |
| 전국단위 신청 p34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종 서비스는 비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전국신청 대상 사업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장애급여, 해산급여) ※ 세부내용 본문 참조 | | | | |
| 신청시 안내사항 p41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는 제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선택적 동의'란에서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 | | | | |
| 가구구성 처리절차 (기초생활보장) p55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제외할 가구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체류중인 사람 </td> </tr> </tbody> </table> | 제외할 가구원 |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체류중인 사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제외할 가구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180일간 6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 </td> </tr> </tbody> </table> | 제외할 가구원 |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180일간 6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 |
| 제외할 가구원 | | | | | | |
|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체류중인 사람 | | | | | | |
| 제외할 가구원 | | | | | | |
|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180일간 6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 | | | | | | |

| 주요내용 | 2022년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가구구성 처리절차 (긴급복지) p57</p> | <p>포함될 가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득자(생계 의존) - 자녀(생계 의존) - 동거인(생계 의존) - 사실혼 배우자 (생계 의존) - 외국인 배우자 (생계 의존) | | <p>제외할 가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병역법상 병역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복무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재외국민 | | <p>포함될 가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 자녀(생계·주거 의존) - 외국인 배우자(생계·주거 의존) | | <p>제외할 가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병역법」상 병역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복무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단,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재외국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자활근로소득 p6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 수당 25만원/월,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월, 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월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50만원, 장애인고용전환 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 자립성과금 : 분기당 최대 21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11.6만원/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 수당 25만원/월,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월, 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월 • 성과금 성격의 금액: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50만원, 장애인고용전환성공수당 최대 100만원)/자립성과금 (분기당 최대 210만원)/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 (최대 2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11.6만원/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사업별 공적이전 소득 반영 및 공제현황 p74~75</p>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 류</th> <th rowspan="2">소분류</th> <th colspan="2">기초·장애인연금</th> </tr> <tr> <th>반영</th> <th>공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국가유공자 급여</td> <td>보상금</td> <td>○</td> <td>X</td> </tr> <tr> <td>6.25 자녀수당 등</td> <td>○</td> <td>X</td> </tr> <tr> <td>독립유공자 보상금</td> <td></td> <td>○</td> <td>X</td> </tr> </tbody> </table> | 분 류 | 소분류 | 기초·장애인연금 | | 반영 | 공제 | 국가유공자 급여 | 보상금 | ○ | X | 6.25 자녀수당 등 | ○ | X |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X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 류</th> <th rowspan="2">소분류</th> <th colspan="2">기초·장애인연금</th> </tr> <tr> <th>반영</th> <th>공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국가유공자 급여</td> <td>보상금</td> <td>○</td> <td>△</td> </tr> <tr> <td>6.25 자녀수당 등</td> <td>○</td> <td>△</td> </tr> <tr> <td>독립유공자 보상금</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분 류 | 소분류 | 기초·장애인연금 | | 반영 | 공제 | 국가유공자 급여 | 보상금 |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 |
| 분 류 | 소분류 | | | 기초·장애인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영 |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급여 | 보상금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5 자녀수당 등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류 | 소분류 | 기초·장애인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영 |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급여 | 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p79 | <p>나) 산정기준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73,28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2년 최저임금) ※ '22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기준(효력 : '22.1.1~12.31, 전년대비 440원 인상) | <p>나) 산정기준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76,96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 ※ '23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기준(효력 : '23.1.1~12.31, 전년대비 460원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용재산 p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대도시</th> <th>중소도시</th> <th>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생계·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북한이탈주민)</td> <td>12,000 만원</td> <td>9,000 만원</td> <td>5,200 만원</td> </tr> <tr> <td>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td> <td>1억원</td> <td>6,800 만원</td> <td>3,800 만원</td> </tr> </tbody> </table> <p>예시 중소도시에서 8,000만원 주택 보유시,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적용하고 1,2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적용액(6,800만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을 적용</p>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북한이탈주민) | 12,000 만원 | 9,000 만원 | 5,200 만원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1억원 | 6,800 만원 | 3,800 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p>(가) 4급지 체계개편('23.1.1.적용/차상위자활 '23.3.2.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서울</th> <th>경기</th> <th>광역시· 세종· 창원</th> <th>그외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장애수당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중요무형 문화재, 북한이탈주민)</td> <td>17,200 만원</td> <td>15,100 만원</td> <td>14,600 만원</td> <td>11,200 만원</td> </tr> </tbody> </table> <p>예시 경기지역에서 2억원 주택 보유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1억5,1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적용하고 4,9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경기지역의 기본공제액(8,0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적용액(1억5,100만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7,1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을 적용</p> <p>(나) 3급지 체계유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대도시</th> <th>중소도시</th> <th>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차상위본인부담경감</td> <td>1억원</td> <td>6,800 만원</td> <td>3,800 만원</td> </tr> </tbody> </table> <p>*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p>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 세종· 창원 | 그외 지역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장애수당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중요무형 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17,200 만원 | 15,100 만원 | 14,600 만원 | 11,200 만원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1억원 | 6,800 만원 | 3,800 만원 |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계·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북한이탈주민) | 12,000 만원 | 9,000 만원 | 5,20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1억원 | 6,800 만원 | 3,80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 세종· 창원 | 그외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장애수당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중요무형 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17,200 만원 | 15,100 만원 | 14,600 만원 | 11,20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1억원 | 6,800 만원 | 3,80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차보증금 p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동산 (기계장비) p9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법 - 2022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 세부내용 본문 참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법 - 2023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 세부내용 본문 참조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p95 | <p>가)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 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p>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 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권리: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내수면양식어업 |
| 금융재산 공제기준 p100 |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p1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p>참고 각 사업별 자동차 기준</p> <p>※ 세부내용 본문 참조</p> |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p107 | <p>*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초·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 가능</p> | <p>*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확인, 기초·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 가능</p> |
| 자연적 소비금액 p108 | <p>※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p> <p>* ('22년 기준) 단독가구 2,097,351원, 부부가구 2,560,540원</p> | <p>※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p> <p>* ('23년 기준) 단독가구 2,217,408원, 부부가구 2,700,482원</p> |
|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p114 | <p>V 소득·재산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p> <p><변경></p> | <p>V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p> <p>※ 세부내용 본문 참조</p> |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인정액 산정 p1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0.7×(근로소득 -103만원)} + 기타소득 -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0.7×(근로소득 -108만원)} + 기타소득 -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 - 88만원)} + 기타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소득 공제 p1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8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p123 |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구분</th> <th>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th> <th>공제액 및 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td> <td>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td> <td>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td> <td>상시소득 전체</td> <td>103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td> <td>상시소득 전체</td> <td>84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td> </tr> </tbody> </table>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공제액 및 공제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 상시소득 전체 | 103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 상시소득 전체 | 84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구분</th> <th>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th> <th>공제액 및 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td> <td>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td> <td>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td> <td>상시소득 전체</td> <td>10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td> <td>상시소득 전체</td> <td>8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td> </tr> </tbody> </table>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공제액 및 공제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 상시소득 전체 | 10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 상시소득 전체 | 8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 | | | | |
|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공제액 및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 상시소득 전체 | 103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 상시소득 전체 | 84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공제액 및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 상시소득 전체 | 10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 상시소득 전체 | 8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재산액 (일반재산) p124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사업명</th> <th colspan="3">지역</th> </tr> <tr> <th>대도시</th> <th>중소도시</th> <th>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td> <td>6,900 만원</td> <td>4,200 만원</td> <td>3,500 만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 타법의료급여 (중요무형문화재) </td> <td>5,400 만원</td> <td>3,400 만원</td> <td>2,900 만원</td> </tr> </tbody> </table> | 사업명 | 지역 |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 6,900 만원 | 4,200 만원 | 3,500 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 타법의료급여 (중요무형문화재) | 5,400 만원 | 3,400 만원 | 2,900 만원 | <p>(가) 4급지 체계개편('23.1.1.적용/차상위자활 '23.3.2.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울</th> <th>경기</th> <th>광역·세종·창원</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td> <td>9,900 만원</td> <td>8,000 만원</td> <td>7,700 만원</td> <td>5,300 만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자활지원 </td> <td colspan="3">13,500만원</td> <td>8,500 만원</td> </tr> </tbody> </table>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 9,900 만원 | 8,000 만원 | 7,700 만원 | 5,300 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자활지원 | 13,500만원 | | | 8,500 만원 |
| 사업명 |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 6,900 만원 | 4,200 만원 | 3,50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 타법의료급여 (중요무형문화재) | 5,400 만원 | 3,400 만원 | 2,90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 9,900 만원 | 8,000 만원 | 7,700 만원 | 5,30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자활지원 | 13,500만원 | | | 8,50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내용 | 2022년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th> <th>사업명</th> <th>대도시</th> <th>중소도시</th> <th>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td> <td>13,500 만원</td> <td>8,500 만원</td> <td>7,250 만원</td> </tr> </tbody> </table> | | | | 지역 | 사업명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13,500 만원 | 8,500 만원 | 7,250 만원 | <p>(나) 3급지 체계유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도시</th> <th>중소도시</th> <th>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td> <td>13,500 만원</td> <td>8,500 만원</td> <td>7,250 만원</td> </tr> </tbody> </table> | | |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13,500 만원 | 8,500 만원 | 7,250 만원 |
| 지역 | 사업명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13,500 만원 | 8,500 만원 | 7,25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13,500 만원 | 8,500 만원 | 7,250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별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 |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별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 | | | | | | | | | | | | | | | | | | | |
| 유형군별 대상사업 목록 p133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업목록</th> <th>시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td> <td>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td> <td>'22.1~</td> </tr> </tbody> </table> | | | | 구분 | 사업목록 | 시행시기 | 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 | '22.1~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업목록</th> <th>시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td> <td>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u>가사간병방문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u>,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u>치매치료관리비</u> 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td> <td>'23. 단계별 추진</td> </tr> </tbody> </table> | | | | 구분 | 사업목록 | 시행시기 | 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u>가사간병방문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u> ,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u>치매치료관리비</u> 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 | '23. 단계별 추진 | | | | | | |
| 구분 | 사업목록 | 시행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 | '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사업목록 | 시행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u>가사간병방문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u> ,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u>치매치료관리비</u> 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 | '23. 단계별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4유형 p135 | 〈신설〉 | | | | <p>X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p> <p>※ 세부내용 본문 참조</p>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중위소득 p149 | <p>● 2022년 기준 중위소득</p> <table border="1"> <thead> <tr>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1,944,812</td> <td>3,260,085</td> <td>4,194,701</td> <td>5,121,080</td> </tr> </tbody> </table>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p>● 2023년 기준 중위소득</p> <table border="1"> <thead> <tr>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u>2,077,892</u></td> <td><u>3,456,155</u></td> <td><u>4,434,816</u></td> <td><u>5,400,964</u></td> </tr> </tbody> </table> <p>※ 세부내용 본문 참조</p>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u>2,077,892</u> | <u>3,456,155</u> | <u>4,434,816</u> | <u>5,400,964</u>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u>2,077,892</u> | <u>3,456,155</u> | <u>4,434,816</u> | <u>5,400,964</u>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내용 | 2022년 | | | 2023년 | | |
|------------------|---|---|---|--|---|---|
|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p150 | 기준 | 기초 생활보장 | 기초 연금 | 기준 | 기초 생활보장 | 기초 연금 |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 교육급여 기준 중위 소득 50%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22년 단독 180만원, 부부 288만원)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기준 중위 소득 50%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23년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
| | 기준 | 긴급복지 | 한부모 가족지원 | 기준 | 긴급복지지원 | 한부모 가족지원 |
| | 소득·재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 · 대도시 : 241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52백만원 이하 · 농어촌 :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2%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 소득 60%) | 소득·재산 |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 - 재산 · 대도시 : 241~310 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52~194 백만원 이하 · 농어촌 : 130~165 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60%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 소득 72%) |
|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p1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지원 ※ 세부내용 본문 참조 | | |
| 주요 복지급여 p161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
| | 급여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 331,000원/년 - 중등 : 466,000원/년 - 고등 : 554,000원/년 학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 72,000원/년 - 중·고등 : 83,000원/년 | | 급여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 415,000원/년 - 중등 : 589,000원/년 - 고등 : 654,000원/년 <삭제> | |
| | 지급일 | 분기별 25일까지 | | 지급일 | 분기별 25일까지** | |
| | | (**)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바우처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사를 통해 지급(선불카드는 수령 확인 후 별도 지급) | | | | |

| 주요내용 | 2022년 | | | | 2023년 | | | |
|-------------------|--------------------------------|--|---|---|--|---|---|--------------------------------|
| 주요 복지급여 p162 | 구분 |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구분 |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 | 급여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단독 - 최고 307.5천원 노인부부 - 최고 492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경증 - 4만원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2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64세 : 최대 307.5천원* * 부부장애인 - 최대 492천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 부가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단독 - 최고 323,180원 노인부부 - 최고 517,808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경증 - 6만원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4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64세 : 최대 323,180원* * 부부장애인 - 최대 517,080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 부가급여* | |
| | * 부가급여 | | | | * 부가급여 | | | |
| |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 | 기초(생계·의료) | 8만원 | 387.5천원* | 기초(생계·의료) | 8만원 | 403,180원* | | |
| 주요 복지급여 p163 | 구분 | 영아수당 (현금) | 한부모가족지원 학용품비 | | 구분 | 부모급여 (현금) | 한부모가족지원 학용품비 | |
| 급여액 | 월30만원 | 연 83,000원 | | 급여액 | 0~11개월 - 월 70만원 12~23개월 - 월 35만원 | 연 93,000원 | | |
|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p164 | 구분 | 영유아보육료지원 (i-사랑카드) | | | 구분 | 영유아보육료지원 (i-사랑카드) | | |
| | | 만3-5세아 보육료지원 | 장애아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지원 | | 만3-5세아 보육료지원 | 장애아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지원 |
| 서비스 내용 | 소득수준 무관 지원 월/ 280천원 (3.1부터) | 월 532천원 * 누리만3-5세 장애아 : 532천원 | 정액 100천원 * 방과후장애 아동 : 266천원 | | 서비스 내용 | 소득수준 무관 지원 월/ 280천원 (3.1부터) | 월 559천원 * 누리만3-5세 장애아 : 559천원 | 정액 100천원 * 방과후장애 아동 : 279천원 |
|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p165 | 〈신설〉 | | | | 구분 | 사회서비스(바우처) 청년마음건강지원 | | |
| | |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순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 청년 | | |
| | | | | | 서비스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본 3개월 10회 지원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 차등 적용 | | |

| 주요내용 | 2022년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 구분 |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내용 | | - 중증장애인의 사회 활동 지원 위해 지급 (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 활동지원급여 : 889~7,105천원, · 특별지원급여 : 297~1,185천원 | 서비스 내용 | - 중증장애인의 사회 활동 지원 위해 지급 (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 활동지원급여 : 936~7,475천원, · 특별지원급여 : 313~1,247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 지급절차 (개요) p166 | <p>가. 개요</p> <p>* 급여자료생성은 당월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이후에는 급여지급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불가(단, 지급제외처리는 가능)</p> | | <p>가. 개요</p> <p>* 급여자료생성은 당월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이후에는 급여지급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불가(단, 지급제외처리는 가능)</p> <p>※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의뢰(교육청→한국장학재단) 후 다음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카드 포인트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 가능</p>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 지급절차 (지급의뢰) p167 | <p>●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p> <p>*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p> | | <p>●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p> <p>*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p> <p>※ 교육급여는 교육행정시스템(NIES)을 통해 관리 하되, 바우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교육바우처 시스템과 연동하여 지급관리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 지급절차 p169 | <p><신설></p> | | <p>참고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①교육급여 신청 접수 (상시)</td> <td style="width: 25%;">②소득재산 조사 (상시)</td> <td style="width: 25%;">③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td> <td style="width: 25%;">④지급의뢰 (매월 16일 급여생성 후 7일 이내)</td> </tr> <tr> <td>(온라인) 복지포 (방문) 주민센터</td> <td>시·군·구</td> <td>학교</td> <td>교육청 (급여 대상 확정) → 장학재단</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⑤바우처 신청접수 (의뢰접수 익월 1일~)</td> <td>⑥바우처 대상 검증 (바우처 신청접수 후)</td> <td>⑦바우처 배정 처리 (승인접수 2~5일 이내)</td> <td>⑧바우처 사용 지원 (바우처배정 이후)</td> </tr> <tr> <td>(온라인) 장학재단</td> <td>장학재단</td> <td>장학재단 → 카드사 ※선불카드는 장학재단 직접배정</td> <td>장학재단·카드사 ※배정 및 잔액 문자 안내 등 지속 응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 ①교육급여 신청 접수 (상시) | ②소득재산 조사 (상시) | ③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④지급의뢰 (매월 16일 급여생성 후 7일 이내) | (온라인) 복지포 (방문) 주민센터 | 시·군·구 | 학교 | 교육청 (급여 대상 확정) → 장학재단 | ▶ | ▶ | ▶ | ▶ | ⑤바우처 신청접수 (의뢰접수 익월 1일~) | ⑥바우처 대상 검증 (바우처 신청접수 후) | ⑦바우처 배정 처리 (승인접수 2~5일 이내) | ⑧바우처 사용 지원 (바우처배정 이후) | (온라인) 장학재단 | 장학재단 | 장학재단 → 카드사 ※선불카드는 장학재단 직접배정 | 장학재단·카드사 ※배정 및 잔액 문자 안내 등 지속 응대 | ▶ | ▶ | ▶ | ▶ |
| ①교육급여 신청 접수 (상시) | ②소득재산 조사 (상시) | ③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④지급의뢰 (매월 16일 급여생성 후 7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복지포 (방문) 주민센터 | 시·군·구 | 학교 | 교육청 (급여 대상 확정) → 장학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바우처 신청접수 (의뢰접수 익월 1일~) | ⑥바우처 대상 검증 (바우처 신청접수 후) | ⑦바우처 배정 처리 (승인접수 2~5일 이내) | ⑧바우처 사용 지원 (바우처배정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장학재단 | 장학재단 | 장학재단 → 카드사 ※선불카드는 장학재단 직접배정 | 장학재단·카드사 ※배정 및 잔액 문자 안내 등 지속 응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급여기준 (정기지급일) p174 | - 교육급여는 분기별 25일까지 지급 | - 교육급여는 분기별 25일까지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급되며, 급여자로 생성 다음달 부터 바우처 이용이 가능함 |
| 급여지급 계좌관리 (급여계좌 원칙) p177 | 1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추가> | 1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급여형태를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체크 카드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로 지급 |
| 급여지급 계좌 관리 (급여계좌수) p179 | 나.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1 배 경 ● 그동안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급할 때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함에 따라 급여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 작업 추진('09년 6월~9월) 2 급여계좌 등록 ● 2개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한부모지원사업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지원사업또한 1인 1계좌가 원칙. | 나. 급여계좌 수 1 배 경 ● 그동안 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2개 이상의 사회복지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복지사업 별로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거나, 영유아복지 및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 확대 등에 따라 각 사업별로 계좌의 명의인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급여계좌 수를 제한하는데 한계 2 급여계좌 등록 ● 2개 이상의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규정하는 계좌 명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급여 별로 계좌 지정 가능 ※ 단, 기초생활보장, 한부모지원사업 등 동일보장사업 내에서 여러 종류의 현금성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각 사업의 지침에서 요구하는 대로 1계좌 운영 - 예시 1: 한부모가정지원사업(모자가정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는 모두 1계좌로 수급 - 예시 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개인단위 급여로 각각 다른 통장으로 지급가능. 양육수당 통장A은행 통장, 아동수당C은행 통장 지급 가능 |
| 바우처 생성일 (정기생성) p189 | ● 정기생성 : 매월 말일(월 1회 생성) <추가> | ● 정기생성 : 매월 말일(월 1회 생성) -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지원기간 시작 전 달 말일 22시에 1회 생성 |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 | | | | | | | | |
|---------------------------|--|---|------------|-------------|---|--|-----|--|------------|---|-------------|--------|----|----|
| 바우처 생성일 (추가생성) p1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생성 : 당월 16~25일(매일 생성)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당월 11~25일 중 제공 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생성 : 당월 16~25일(매일 생성) <p>〈삭제〉</p> | | | | | | | | | | | | |
| 바우처 유효기간 p191 |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서비스 지원기간(3개월)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처리 | | | | | | | | | | | | |
| 수급자 변동사항 p200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변동사항 확인 항목</th> <th>정보시스템 알림 기능</th> </tr> </thead> <tbody> <tr> <td>거주원 변동</td> <td>가출</td> <td>×</td> </tr> </tbody> </table> | 변동사항 확인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거주원 변동 | 가출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변동사항 확인 항목</th> <th>정보시스템 알림 기능</th> </tr> </thead> <tbody> <tr> <td>거주원 변동</td> <td>가출</td> <td>알림</td> </tr> </tbody> </table> | 변동사항 확인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거주원 변동 | 가출 | 알림 |
| 변동사항 확인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 | | | | | | | | | | |
| 거주원 변동 | 가출 | × | | | | | | | | | | | | |
| 변동사항 확인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 | | | | | | | | | | |
| 거주원 변동 | 가출 | 알림 | | | | | | | | | | | | |
| 변동사항 (장기출국자) p2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전제로 한 급여*는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보장중지되면 해당 급여도 당연 중지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인 경우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지급 중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전제로 한 급여*는 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보장중지되면 해당 급여도 당연 중지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인 경우 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지급 중지 | | | | | | | | | | | | |
| 거주지 변경처리 p204 |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별</th> <th>신 거주지에서 할일</th> </tr> </thead> <tbody> <tr> <td>긴급 복지 지원</td> <td>전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필요시 조사)</td> </tr> </tbody> </table> | 사업별 | 신 거주지에서 할일 | 긴급 복지 지원 |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필요시 조사) |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별</th> <th>신 거주지에서 할일</th> </tr> </thead> <tbody> <tr> <td>긴급 복지 지원</td> <td>① 시스템에서 전입사항 알림 ②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위기 상황 계속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후 지원 결정(가구원 변동 시 사후조사 추가 실시)</td> </tr> </tbody> </table> | 사업별 | 신 거주지에서 할일 | 긴급 복지 지원 | ① 시스템에서 전입사항 알림 ②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위기 상황 계속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후 지원 결정(가구원 변동 시 사후조사 추가 실시) | | | | |
| 사업별 | 신 거주지에서 할일 | | | | | | | | | | | | | |
| 긴급 복지 지원 |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필요시 조사) | | | | | | | | | | | | | |
| 사업별 | 신 거주지에서 할일 | | | | | | | | | | | | | |
| 긴급 복지 지원 | ① 시스템에서 전입사항 알림 ②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위기 상황 계속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후 지원 결정(가구원 변동 시 사후조사 추가 실시) | | | | | | | | | | | | | |
| 사망자의심자 정보 관리 p213~2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경과 〈추가〉 ● 처리 방법 - (입수) 사망의심자 정보를 보유한 행정망 내 4개 입수기관과 정보 연계, 행복e음 화면*에 사망의심자 정보 조회 기능제공 * 행복e음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사망의심자 HUB > 사망확인대상(사망의심자) 조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경과 - (20.10.)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 입수 정보 확대 ● 처리 방법 - (입수) 사망의심자 정보를 보유한 행정망 내 5개 입수기관과 정보 연계, 행복이음 화면*에 사망의심자 정보 조회 기능제공 * 행복이음 > 변동·사후 > 사망의심자HUB > 사망 의심자사망확인조회 <p>※ 세부내용 본문 참조</p> | | | | | | | | | | | | |

|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 |
|--------------------|---|---|
| <p>서식 p225</p> | <p>2022년 고시개정사항 반영·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갑-1)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별지 제11호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0차) -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 <p>2023년 고시개정사항 반영·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0차) -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p>사업별 서식 제7호 사업별 서식 제9호</p> |

2023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apter

01

총괄

- I.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 II.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 III.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I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① 목 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구축과 함께 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가구 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효율적 업무처리 절차 제시
- 각종 사회보장사업 집행 시 적용할 공통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여 사회보장사업별로 다양한 기준을 일선 담당공무원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②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③ 적용대상 사업(사회보장급여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다. 아동복지법
- 라. 노인복지법
- 마. 장애인복지법
- 바. 장애인연금법
- 사. 영유아보육법
- 바. 입양특례법
- 자. 의료급여법
- 차. 기초연금법
- 카. 긴급복지지원법

- 타. 한부모가족지원법
- 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너. 아동수당법
- 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러.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4 용어의 정의

-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보장급여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의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보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 보장기관 :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시스템(범정부·행복이음)
- 바우처 : 사회보장급여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 : 전자적인 형태를 가지는 바우처를 의미하며, 급여의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과정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
- 조사 : 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 자격 등의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지원대상자의 경제력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
- 소득 : 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대상 소득을 의미하며,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됨. 급여별로 조사대상 소득항목은 급여의 목적·취지 등에 따라 다름
- 재산 : 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대상 재산을 의미하며, 크게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동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 금융재산(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가 해당됨. 급여별로 조사대상 재산항목은 급여의 목적·취지 등에 따라 다름
-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하여 단일값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제력 평가 방식. 선정기준선 역시 단일값
-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 : 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고, 소득과 재산 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선을 가지는 경제력 평가 방식
- 건강보험료 부과금 방식 :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순서로 변환하여 경제력을 평가하는 방식
- 자격 확인 : 특정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경제력 평가를 갈음하는 방식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는 금액

[소득재산 조사 방법]

-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방법은 크게 소득·재산 항목별 조사, 건강 보험료 부과금 활용, 자격 확인으로 구분
 - 소득·재산 항목별 조사 : 소득·재산 항목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경제력을 측정
 - ※ 재산의 소득 환산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 방식과 재산평가분리 방식으로 구분

| 구분 | 소득인정액 |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 |
|-----------|--------------------------------|---|
| 소득 재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평가액 |
| 대상자 선정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선) ⇒ 경제력 기준 부합 | (소득평가액 < 소득기준선) (재산평가액 < 재산기준선) ⇒ 각 요건 충족 시 경제력 기준 부합 |

- 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측정
- 자격확인 :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경제력 평가를 같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확인, 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II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1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 구분 | ① 유형 (통합조사팀 조사 후 사업팀 이송) | ② 유형 (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 ③ 유형 (시·군·구 또는 보건소 접수) | ④ 유형 (읍·면·동 즉시 처리) |
|------------|--|--|--|---|
| 대상 사업 | -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 기초연금 -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 장애인연금*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 -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 비우치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 청년미용건강지원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 긴급복지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 장애인등록 - 각종발급업무 -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차량표지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 각종 감면 등 |
| 상 담 신청 | 읍·면·동 ↓ 시·군·구 요청 | 읍·면·동 ↓ | 시·군·구 (또는 보건소) ↓ | 읍·면·동 ↓ 즉시처리 |
| 조 사 | 통합조사관리팀 ↓ · 소득·재산조사 · 근로능력 판정·주택조사 의뢰 (기초생활) | 읍면동 또는 사업팀 ↓ ·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청년미용건강지원사업 별도조사 없음 | 사업팀 (또는 보건소) ↓ 자격확인 소득재산 확인 | |
| 보 장 결 정 | 사업팀 ↓ 결정, 통지 | 사업팀 ↓ 결정, 통지 | 사업팀 (또는 보건소) ↓ 결정, 통지 | |
| 금 여· 서 비 스 | 사업팀 ↓ 급여 지급 | 사업팀 ↓ 서비스 제공 | 사업팀 (또는 보건소) ↓ 급여·서비스 제공 | |
| 변 동 관 리 | 통합조사관리팀 ↓ ·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확인조사 | 읍·면·동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통합조사관리팀/사업팀 (또는 보건소)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보 장 중 지 | 사업팀 ↓ 급여 중지 | 사업팀 ↓ 서비스 중지 | 사업팀 (또는 보건소) ↓ 급여중지 | |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정도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정도 심사는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조사·보장결정·보장중지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경우 보호지청(문화재청)에서 신청·접수, 선정·통지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②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

① 상담·신청

- (상담)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수급 가능한 급여·서비스 안내,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등 의뢰
- (일괄 신청) 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 개별 사업 각각 신청, 개별 조사 → 일괄신청, 통합조사
- (신청서 기재항목 최소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를 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추후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액을 반영
- (민원등록 절차 간소화) 신청서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등록, 접수번호 자동 부여

② 조사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 (기초생활)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경우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 조사결과 반영(공적자료 우선 적용)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능력 판정 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사업*은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되,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시 반영
- 해당 사업팀에 보장결정 요청

3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팀에서 선정 기준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통지
 - ※ 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자 중 보장결정 전 긴급히 생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4 급여지급

- 급여지급자료 생성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 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의뢰
-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나.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 소득재산 변동사항 : 확인조사시 알림
 -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 : 매일 알림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 긴급지원대상자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금융재산 조회 포함)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소득·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예 :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 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팀에 통지하고 사업팀에서는 해당 월 급여 변동 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 익월급여에 반영

※ 소득인정액 재산정(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팀에 보장 중지 요청
⇒ 보장중지 및 결정(사업팀), 보장비용 징수(사업팀/회계부서)

3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양곡 공제 :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양곡공제 연간계획'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액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음·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생계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 예상급여액 확인시 급여생성 이상자(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상계 계획 수정

*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양곡 계획 수정

4 급여지급자료 생성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5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 “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와 동일

6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와 동일

III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 국민기초생활보장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 신청 | 신청권자 |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 | 신청장소 |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적등본, 소득·재산 확인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 처리기한 |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 구 분 | | 내 용 |
|-----|----------|--|
| | 부양의무자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판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급여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 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 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나시행) 등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2 기초연금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확인서류, 이력관리신청서 등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연령 기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이상 노인 |
| 소득인정액 기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노인단독 202만원, 노인부부 323.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108\text{만원})\} + \text{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자동차가액}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text{연 } 4\%) \div 12\text{월}]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례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 선정 기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특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 구 분 | | 내 용 |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급여 | 지원액 (23.1월~ 23.12월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급여액 : 월 최고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금액(323,180원), 부가연금액(161,590원) 또는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 연금액을 산정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200%이하 : ❶과 ❷중 큰금액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초과 : ❶로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적용 산식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❷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div> -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부부2인 수급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③ 영유아 보육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 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비우체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종일반 사유확인서 및 증빙서류(보육 종일형 자격 신청시)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0~85개월) : 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0~85개월) : 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0~85개월) :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59천원 • 장애아 보육료 : 월 559천원(정부지원시설 기준)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시간제보육료 :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단가 3천원+부모부담 1천원) • 연장보육료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월 279천원 |

4 장애(아동)수당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조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만18~20세인 초·중등교육법상 재학중인 장애아동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 | 신청장소 |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 | 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 | 부양의무자 기준 |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 | 기타 기준 | ● 등록 장애인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
| 급여 | 종류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22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3만원 |

5 장애인연금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본인명의로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예외적인 경우,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필요)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등 |
|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3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122만원, 장애인부부 195.2만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8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8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례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 기타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 | 지원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급여: 323,18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감액구간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급여(차등)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65세 미만</th> <th>65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td> <td>8만원</td> <td>403,180원¹⁾</td> </tr> <tr> <td>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td> <td>0원</td> <td>0원</td> </tr> <tr> <td>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td> <td>0원</td> <td>7만원²⁾</td> </tr> <tr> <td>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td> <td>7만원</td> <td>7만원</td> </tr> <tr> <td>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td> <td>-</td> <td>14만원</td> </tr> <tr> <td>차상위초과(일반)</td> <td>2만원</td> <td>4만원</td> </tr> </tbody> </table> | | | 구 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403,180원 ¹⁾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 ²⁾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 | | 구 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403,180원 ¹⁾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 ²⁾ | | | | |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4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긴급복지지원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신고 | 요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신청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요구자료(해당자에 한함): 위기상황별 요건확인자료,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요구자료 제출거부 시 긴급지원심의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 없이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기준 (사후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 재산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조, 제14조에 따른 위기상황, 현장확인, 적정성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소득, 재산의 합계액(부채 포함), 금융재산 위기상황 해당 여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 | 종류 및 내용 |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지 원 내 용</th> <th>지 원 금 액</th> <th>최 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금전 · 현물</td> <td>생계</td> <td>○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td> <td>월 1,620,200원(4인)</td> <td>6회</td> </tr> <tr> <td>의료</td> <td>○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td> <td>300만원 이내</td> <td>2회</td> </tr> <tr> <td>주거</td> <td>○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td> <td>월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td> <td>12회</td> </tr> <tr> <td>시설 이용</td> <td>○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td> <td>월 1,494,100원 이내 (4인)</td> <td>6회</td> </tr> <tr> <td rowspan="2">지 원</td> <td>부 가 지 원</td> <td>교육</td> <td>○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td> <td>- 초 127,900원/분기 - 중 180,000원/분기 - 고 214,000원/분기 및 입학금·수업료 등</td> <td>2회 (주거지원 시 최대 4회)</td> </tr> <tr> <td>기타</td> <td>○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td> <td></td> <td>1회 (연료비 6회)</td> </tr> <tr> <td>민간 연계 등</td> <td>○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td> <td></td> <td>횟수제한 없음</td> </tr> </tbody> </table> |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최 대 | 금전 · 현물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월 1,620,200원(4인)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 | ○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월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 | 12회 |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월 1,494,100원 이내 (4인) | 6회 | 지 원 | 부 가 지 원 | 교육 |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900원/분기 - 중 180,000원/분기 - 고 214,000원/분기 및 입학금·수업료 등 | 2회 (주거지원 시 최대 4회) | 기타 |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 1회 (연료비 6회) | 민간 연계 등 | ○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횟수제한 없음 |
| | |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최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전 · 현물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월 1,620,200원(4인) | 6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 | 300만원 이내 | 2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 | ○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월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 | 12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월 1,494,100원 이내 (4인) | 6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원 | 부 가 지 원 | 교육 |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900원/분기 - 중 180,000원/분기 - 고 214,000원/분기 및 입학금·수업료 등 | 2회 (주거지원 시 최대 4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 1회 (연료비 6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 연계 등 | ○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횟수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72%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 | 부양의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
| | 기타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포함) |
| |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
| 급여 | 지급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5%이하) |
| | 종류 및 지원액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3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 월 50,000원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당 월 100,000원 추가 지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양육하는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000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중위소득 65% 이하/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기준중위소득 65%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응시생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겐 연간 154만원 이내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겐 연간 154만원 이내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

2023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apter

02

공동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상담·신청

1

I. 상담 • 27

II. 신청 • 29

III. 접수 • 43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01 | 상담·신청



I 상담

1 목적

- 지원대상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사회보장급여의 안내 및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 실시

2 상담유형

- 내방상담 : 지원대상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내방하여 실시하는 상담
- 방문상담 :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 전화상담 :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전화로 걸려온 상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부터 시·군·구로 이관된 상담

3 상담내용

- 지원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
 - 인적사항, 가구원, 부양의무자 유무 등
-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 건강상태, 소득·재산,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원하는 사회보장급여
- 사회보장급여 신청안내
 - 지원 가능한 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 신청서, 구비서류 등

Chapter

02

 공통
 업무
 절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5장

4 상담 절차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지원대상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의 인적정보, 가구구성, 소득재산, 수급이력 등을 확인하여 상담을 준비 |
| 상 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주요문제, 복지욕구,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탐색 |
| 상담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내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
| 연계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연계 ●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경우 등은 사례관리 의뢰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요청 ● 민간 서비스 등 연계 |

5 유의사항

- 상담을 통해 가구 특성, 주요 문제 및 욕구 등을 통합적으로 충분히 파악
 -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고 제공가능한 각 분야의 사회보장급여를 점검하여 안내
- 해당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를 충분히 안내하여 재방문을 최소화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 둘 이상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치 않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상담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리
- 공적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안내

II 신청

1 신청 유형

- 본인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직권신청 :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참고 신규신청과 변경신청

- 기존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시,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정보시스템에 입력
- 가구원(부양의무자) 추가 및 정보의 변경, 보장의 추가·변경, 첨부서류 변경 및 신고소득·재산의 변경

2 신청절차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신청 안내 | ●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의 신청방법, 절차 안내 |
| 신청서 작성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사업별 구비서류 등 제출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 등록·접수 |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
| 서류보완 안내 |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를 보완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수 있음을 안내 |

③ 신청권자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밖의 관계인
 - 지원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 구 분 | 지원대상자, 친족, 담당공무원 이외 신청권자 |
|---|--|
| 기초생활보장 | -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 사회복지시설장 등(위임장, <u>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필요) |
| 한부모가족지원 | - 그밖의 이해관계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 하는 학교의 교사) |
| 장애(아동)수당 | -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 장애인활동지원 | - 그밖의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인 지정서 필요)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그밖의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필요) |
| 영유아보육· 양육수당·부모급여 |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등 | - 법정대리인·후견인 |

● 복지 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1) 의미

- 지원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조사, 누락서비스 등을 통해 급여변경·추가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사후동화가 가능한 사업수행 시 직권신청 이후 동의의사 확인

(2) 요건

- 지원대상자 또는 가족, 후견인 등의 동기가 있어야 가능하고
- 신청조사·확인조사 결과 또는 보유자격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경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또한, 각 개별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3) 절차

- 행복이음 신청·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 또는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 발견 시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연락(전화, 문자 등)하여 동의의사 확인

* 전화 등을 통해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확인일시 및 시간, 담당공무원 및 대상자, 동의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

※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2항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 ‘동기가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산정하되,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지침에서 따라 산정

- 기존 신청서(참고)를 활용하거나 추가 동의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입력·제출

참고 기존신청서 활용의 근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선택적 동의'에 의거

| 선택적 동의 | 동 의 (√ 체크) |
|--|---------------|
|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
| 7.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신청

(1) 의미

-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
- 이 경우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신청에 대한 본인동의 절차 생략

(2) 본인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3항)

: 요건 1, 2에 둘다 해당하는 경우 가능

- 요건1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 ③ 미성년자인 경우
- 요건2 :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대리인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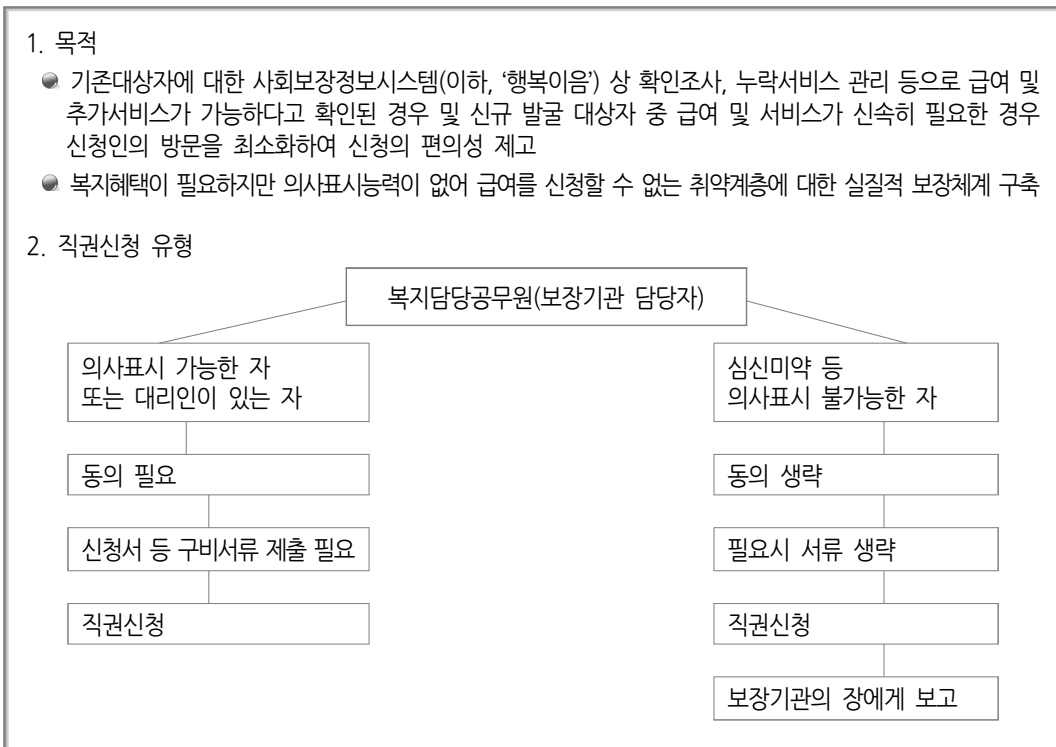
(3) 절차

- 행복이음 신청·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이 확인된 자 또는 위기 (긴급상황) 가구(개인)로 확인된 자 중 동의를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인동의 절차 생략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신청/제출
- 선 직권신청 후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 보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나, 업무처리의 위임에 따른 경우 직권신청을 수행한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해당
-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 이후 절차는 본인 신청과 동일하게 관리

(4) 대상사업

- 금융재산조사가 필요없는 복지 급여·서비스(현금현물지원, 사회서비스 등)
 - * 직권신청 불가한 사업 : 금융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사업, 소송수행 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의사 무능력자가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

[업무처리절차]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일부 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소년특별지원 등), 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에서 신청 가능
 -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 44종 복지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요금감면서비스, 아동수당,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결식아동급식,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청소년특별지원, 에너지바우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 방과후보육료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3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11종 서비스는 비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전국신청 대상 사업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 해산급여)

[업무처리절차]

1. 목적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주소지 관할·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가. 주소지 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 안내 및 상담
 - 안내 가능한 사업내용 및 수급자 선정 관련 일반적인 상담 진행
- 신청
 - 민원인의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 전부를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서류의 이송
 -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은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전부를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 서류의 보완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요구 가능
 -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스캔 등록 가능

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역할

- 접수
 - 타 주소지에서 신청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접수처리
 -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이송받은 문서(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급여신청의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 접수처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시 접수 처리하며 이때 접수일자는 민원처리 산정의 기준일이 됨
 - ※ 급여지급기준일은 신청일이 되므로 혼선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보완
 - 주소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신청서류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완이 안 될 경우는 반려 처리
 - 서류의 보완 요청 시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지자체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비관할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가능함을 안내
 - * 신청인은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보완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가능
- 보장결정
 -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보장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사업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지
 - * 통지의 방법, 통지기일, 통지의 내용 등

3. 신청처리 절차

| 단 계 | 업 무 내 용 | 주 체 |
|----------------------------------|---|-------------|
| 비관할지 방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민원인 |
| ↓ | | |
| 급여신청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 | 민원인 |
| ↓ | | |
| 급여신청서 제출 및 비관할지 수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한 주민센터에 제출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령 | 민원인 비관할지 |
| ↓ | | |
| 급여 신청 서류 시스템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민원인의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 등록 | 비관할지 |
| ↓ | | |
| 문서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류 이관(3일 이내) | 비관할지 |
| ↓ | | |
| 관할지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지 지자체는 전산정보로 이관된 급여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추후 이관된 서류에 대한 구비여부 등 확인 후 접수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 관할지 |
| ↓ | | |
| 서류보완 요청 또는 급여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 절차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보완 요청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접수를 재개하고 급여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절차 진행 -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더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안 될 경우 반려 처리 | 관할지 |
| ↓ | | |
| 보장결정 및 통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준처럼 조사 및 결정처리, 통지 | 관할지 |

5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한 서식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서식을 따름

참고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 명령) 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 (보존기한)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최소 1년까지 보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존기한에 대한 예외 설정 가능

| 사 업 | 필수서류 |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
|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생계·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포함)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기초생활보장)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본인계좌 통장사본 |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확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통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부채)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등 |

| 사 업 | 필수서류 |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
| <p>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14세 미만)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19세 이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동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 의사소견서, 비만 지수·심리결과 확인서, 추천서 등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
| <p>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부모급여</p> | <p>[보육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p>[양육수당·부모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의사 진단서(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 * 행복이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 (농·어촌양육수당)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신청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기초생활보장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 보육료지원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기초연금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한부모가족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장애인연금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통지방법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 신고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자) 아래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 수급권 상실사유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사유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지급정지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자) 장애인연금법 제 16조에 따라 아래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수급권 소멸 사유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 인정액 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사유 :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개명, 주민등록 번호정정,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한 경우

* 지급정지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보육료 종일형 신청자) 종일형 자격의 중지·소멸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보장비용의 환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환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제49조)
- 기초연금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3항)
- 의료급여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5조4항)
- 장애인연금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제3항)
- 영유아보육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9조4항).

-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3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기초생활보장 지침)
-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 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 *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가능성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는 제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선택적 동의'란에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

참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기초·장애인연금)

-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연금 신청 안내
- (2) 조사대상
 - (기초연금) '18.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장애인연금) '17.8.9.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17.8.9.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장애수당) '19.7.1. 이후 장애수당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및 장애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19.7.1.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3) 조사방법 : 「행복이음」에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 자료를 유지
- (4) 조사결과 : 기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 (5) 관리중지 : 연금 수급권 취득 시,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시
(☞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기초·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III 접수

① 신청 등록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 정보시스템에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 민원 접수처리(행복이음), 접수확인(민원행정시스템), 처리완료(행복이음)
- 신청일자는 급여기준일, 접수일자는 민원처리기한 산정 기준일이 됨

②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조사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즉시 조사 실시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조사

2

- I. 조사개요 • 47
- II. 보장가구의 확정 • 52
- III. 소득조사 • 60
- IV. 재산조사 • 82
- V.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114
- VI. 소득인정액 산정 • 118
- VII. 부양의무자 조사 • 129
- VIII. 연령산정 방식 • 131
- IX.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 132
- X.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 • 135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02 | 조 사



I 조사개요

1 조사유형

- 신청조사 : 급여 신청 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확인조사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실시하는 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자 등 별도조사가 필요한 수급자에 대하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기초생활보장)
-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2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 그 외 사업 : 보장가구원

3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사원칙

- 자산조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 되나, 일부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므로 조사확인 후 반영
 - * (자동반영 자료)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조사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반영
 - * (참고용 자료) 가액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예: 보유정보)만 입수가가능하거나 가액정보의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자료 조사 후 반영(또는 제외)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 변동 등 처리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은 '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은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직권으로 근로소득 반영

5 조사방법

- 별도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 →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실시(통합조사관리팀)
- 건강보험료로 소득·재산 확인하는 사업 → 건강보험료 수준을 조회하여 판단 (읍·면·동, 시·군·구)
- 자격확인으로 대체하는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자격확인으로 대상자 여부 판단(읍·면·동)

6 ⑥ 조사절차 (신청조사)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조사대상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 시 공적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
| 자료제출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여부 판단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의뢰 |
| 조사결과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

⑦ 자료 제출 요구

-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⑧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내방 최소화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목적 | 제출 서류 | 비 고 |
|----------------|--|---|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
| 소득확인 |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 근로소득 파악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 취업·퇴직사실 확인 |
| |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 | -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파악 |
| |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 임업소득 파악 |
| | - 임대차 계약서 |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 | - 사용대차 확인서 | - 사적이전소득 파악 - 주거급여 대상 확인 |
| |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 |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
| | -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
| 재산확인 |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 임차보증금 파악 |
| 부채 |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 개인간 부채 확인 |
|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보증금 |
| 근로능력 판정 |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 - 근로능력 판정 |
| 급여계좌 확인 | - 통장사본 |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

II 보장가구의 확정

1 목 적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가구 단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신청 시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보장단위가 되는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보장결정 이후에도 인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재확인

2 사업별 보장단위

- 선정단위 : 가구
- 급여단위 : 가구 또는 개인

| 구 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기초 연금 | 장애(아동) 수당 | 장애인 연금 | 긴급복지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
| 선정단위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 급여단위 | 가구/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가구/개인 | 개인 |

*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선정·보장 가능

3 사업별 가구의 범위

- 급여지원 사업

| 구분 | ① 동일주민등록 | ② 별도주민등록 | ③ 외국인 |
|-----------|---|---|--|
| 국민기초 생활보장 |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는 사람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 · 배우자(사실혼포함) · 30세미만 자녀(취업시 제외) ·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 구분 | ① 동일주민등록 | ② 별도주민등록 | ③ 외국인 |
|------------|---|--|---|
| |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
| 기초 연금 | ·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자 * 고유식별 번호 : 외국인 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 |
| 영유아 보육 | · 부모 및 형제 자매 · 성인(만19세 이상)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 자가 선택 하도록 함 ※ 조부모(가정 해체로 조부모 양육 시)와 아동 ·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 · 부모 및 형제 자매 · 성인(만19세 이상)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 자가 선택 하도록 함 | · 아동의 부 또는 모 |
| 장애 (아동) 수당 |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는 사람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30세미만 자녀(취업시 제외) ·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 자와 이혼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 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
| 장애인 연금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자 * 고유식별 번호 : 외국인 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 |
| 긴급 복지 지원 |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비동거 중인 배우자 포함) ·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등록표 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 ·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가구구성원과 분리된 가구의 주(부)소득자 · 교육, 양육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주민등록표상 거주확인 불가하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사·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등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 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

| 구분 | ① 동일주민등록 | ② 별도주민등록 | ③ 외국인 |
|-----------------|--|--|--|
| 한부모 가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아동 ·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등록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또는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 중인 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모 또는 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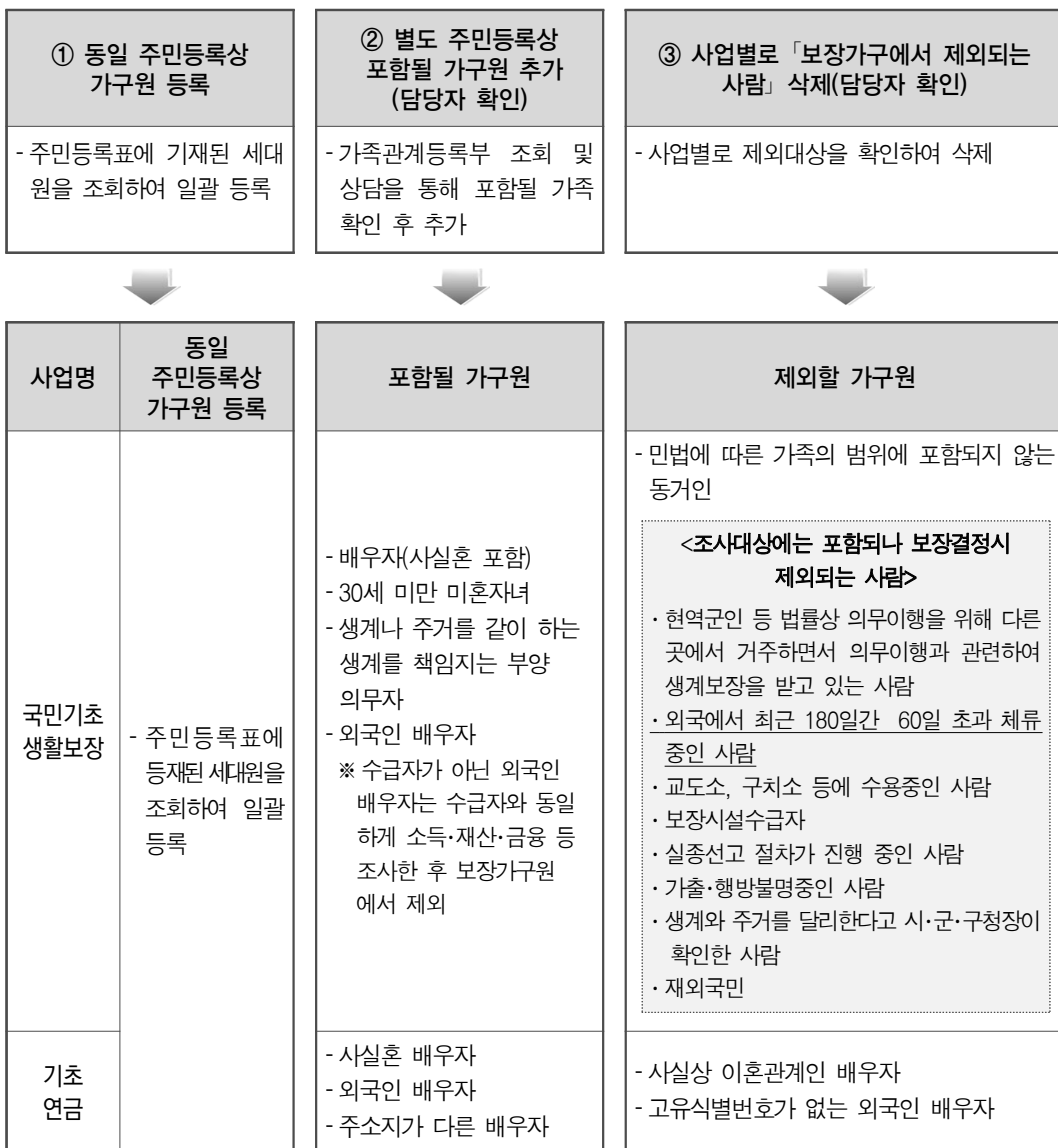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구분 | ① 동일주민등록 | ② 별도주민등록 | ③ 외국인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 서비스이용 대상자 · 배우자 · 미혼자녀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출생신고 전 출생아(산모신생아) · 미혼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 지역사회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가사간병 서비스이용 대상자</u> · 배우자 · 미혼자녀 · <u>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u> * 가족 : <u>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미혼자녀(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
| 발달재활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 |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 |
| 장애인 활동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및 배우자(사실혼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 |

4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구성원 추가
- ③ 사업별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가구구성 처리 절차]



| 사업명 |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포함될 가구원 | 제외할 가구원 |
|-----------|-----------------|---|--|
| | | | <p><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배우자중 혼인신고 후 2년 경과된 사람 |
| 영유아 보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 외국인 부 또는 모 - 조부모(가정해체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 20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시) ※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 등록 시) |
| 장애(아동) 수당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30세 미만 자녀 -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p><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
| 장애인 연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

| 사업명 |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포함될 가구원 | 제외할 가구원 |
|-------------|-----------------------|---|--|
| | | | <p><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긴급복지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 자녀(생계·주거 의존) - 외국인 배우자(생계·주거 의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병역법」상 병역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 하면서 의무복무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사회복지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재외국민 |
| 한부모 가족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외국인포함) -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의 자녀외의 세대원 <p><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 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 22세)을 초과하는 혼인 전 자녀 |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자'는 조사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5 부양의무자의 범위

● 사업별 부양의무자 범위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초 연금 | 장애인 연금 | 장애(아동) 수당 | 긴급복지 지원 | 한부모 가족 |
|----------|---|-------|--------|-----------|---------|--------|
| 부양의무자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촌의 직계혈족 •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X | X | X | X | X |

● 부양의무자 확정방법

| ① 신청인의 보장가구 구성 | ② 부양의무자 확인 (담당자 확인) | ③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등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가구 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권자의 가구범위 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등을 확인 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 가구구성형태(제혼한 부모, 부모가 다른 자녀 등)에 따라서 제적등본 확인 ※ '08.1.1일 전 가족관계 변동 자료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주민 등록조회를 통해 부양 의무자가구원 등록 |

Ⅲ 소득조사

①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②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 보장기관 확인소득
 - ※ 실제 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종류는 사업별로 다름(“4. 사업별 소득조사항목” 참조)
-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보육,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유사 금품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수당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 ※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의 종류는 사업별로 다름

③ 소득 산정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 근로상태 변경없이 공적자료에 대한 소명시도 동일 기준 적용

- 상시근로소득¹⁾,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전월 소득' 반영

나. 변동자 소명 시 처리 기준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 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지급월부터 바로 적용)을 산정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 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 확인조사(정기)시 일용근로자소득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반영할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상반기 확인조사는 전년도 2·3분기, 하반기 확인조사는 전년도 4분기, 당해년도 1분기 월평균소득 반영)

④ 사업별 소득 조사 항목

- 수급권자가 신청한 사업과 관계없이 공적자료는 모든 소득항목에 대해 조회됨
 - 다만 각 사업별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항목은 사업별로 다름
- 수급권자가 신청한 사업별로 공적자료 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소득항목 결정

1)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한 사업만 신청시 : 아래 표의 (x) 해당 소득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조사할 필요 없음
- 둘 이상의 사업 신청시 : 각 사업의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하고, 사업 별로 (x)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미적용

예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 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
- ②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
- ③ 기초연금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만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되고, (x)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미적용

| 항목별 | 사업명 | 국민기초 | | 기초연금 | 긴급복지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지원 | 차상위자산형성 | 한부모가족 |
|--------------|---------|------|----|------|------|------|-------|-----------|---------|---------|-------|
| | | 생계 | 의료 | | | | | | | | |
| 1. 근로소득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자활근로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일자리소득 | ○ | ○ | × | ○ | ○ | × | ○ | ○ | ○ | ○ |
| 2. 사업소득 | | | | | | | | | | | |
| | 농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임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3. 재산소득 | | | | | | | | | | | |
| | 임대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연금소득 |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소득 | | | | | | | | | | | |
| | 공적이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사적이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부양비 | × | ○ | × | × | × | × | × | × | × | × |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료임차소득(기초연금)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장애인연금)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6억원 이상)에 무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5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단, 비과세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2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지키(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②-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②-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 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 시만 자료 제공
-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다만,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사업소득 반영기준 참고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 ※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료로서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예시)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시 근로 소득으로 반영

나) 일용 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기관(국세청 또는 고용 노동부)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각각 입수됨(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제공 기관 표시)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 제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 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참고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국세청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를 제출받아 처리
 - ① 근로하였으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 ②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③ **조회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 **수급자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받을 것
 - ※ ①, ②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액이 조정됨을 민원인에 설명할 것
 - ※ ③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타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전국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를 제출 받아 처리

다) 자활근로소득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 ※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²⁾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 금액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25만원/월,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월, 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월
 - 성과급 성격의 금액: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50만원, 장애인고용전환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210만원)/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최대 2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고용노동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5만원/월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50만원/월

2)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³⁾의 임금은 별도로 확인(해당 사업부서 협조요청 등) 하여 시스템에 등록 - 정보시스템의 참고확인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시소득, 자활소득, 일용소득 등의 기반영 소득자료와 비교하여 중복이 아닌 경우 해당 공공일자리 소득 금액을 직권으로 근로소득 반영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 경종업(耕種業)⁴⁾,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⁵⁾,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⁶⁾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정보시스템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소득정보 :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농업경영」-(농산물가격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 × 작물별 단가

-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4)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5)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6)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임업소득

가) 정의

-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목재산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 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 어업소득 및 양식업 소득

가) 정의

-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 및 양식업가 어업 및 양식업 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과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및 양식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권)의 어가별 및 양식업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아래 원칙에 따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두 소득을 더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소득 자료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만 “사업소득”으로 반영
 -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료 중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소득이 참고자료로 회신된 경우, 상담을 통해 별도 파악된 소득으로 반영처리. 각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별 처리방법을 우선 적용
 - ※ 단, 참고자료로 회신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는 사회보험 자료의 반영순위는 상시근로소득의 순위로 반영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②-1 고용보험, ②-2 산재보험 순으로 반영
 -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수급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수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 조사 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예시) 행사,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임대소득)을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 대법원,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하도록 안내 요망

2 이자소득

가) 정의 :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 금융기관 이자소득 회신 대상 사업*은 금융기관 자료반영, 미회신 대상 사업은 국세청 자료 반영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사업(계층확인, 자활, 자산형성지원), 타법의료급여
- 금융기관 이자소득 회신 대상 사업은 금융기관 자료에서 이자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
 - 타법의료급여 : 월 1만원(연 12만원) 공제

-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사업 : 월 2만원(연 24만원) 공제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월 4만원(연 48만원) 공제
 -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추가 공제 가능

[금융 이자·배당소득 관련 처리 주의사항]

- * 민원인이 계좌 해지를 근거로 이자·배당소득을 소명하는 경우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여부
 - ⇒ 이자소득은 금융상품의 만기, 해지를 통해 발생되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 원천기관 정보 확인(소명)방법 : 민원인 개인이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출력)해서 접수, 이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처리

3 연금소득

가) 정의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퇴직 보험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 정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되, 그 중 5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함. 또한,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은 부채로만 반영

라.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 가)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아동분야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직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 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⁷⁾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 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 이·통장 직책수당은 20만원 범위 내 공제
 - ※ 공적이전소득 세부항목의 소득산정 여부 및 기준은 사업별로 다름

다)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7)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참고 사업별 공적이전소득 반영 및 공제현황

| 분 류 | 소분류 | 기초생활보장 등* | | 기초·장애인연금 | |
|----------------------------|----------------|-----------|----|----------|----|
| | | 반영 | 공제 | 반영 | 공제 |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 | ○ | ○ | × | - |
| | 국가유공자 | ○ | ○ | × | - |
| | 보훈대상자 | ○ | ○ | × |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 | × |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 | ○ | × | - |
| 참전명예수당 | | ○ | △ | × | - |
| 기초연금 | | ○ | × | - | - |
| 장애수당 | 장애수당 | ○ | ○ | × | - |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 ○ | × | - |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 ○ | ○ | - | - |
|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 ○ | ×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 | ○ | × | -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 | ○ | × | - |
|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 × |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 × | - |
| 연금급여 | 국민연금급여 | ○ | × | ○ | × |
| | 공무원연금급여 | ○ | × |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 | 휴업급여 | ○ | × | ○ | × |
| | 장해급여 | ○ | × | ○ | × |
| | 유족급여 | ○ | × | ○ | × |
| | 상병보상연금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 진폐보상연금 | ○ | × | ○ | |
| | 진폐유족연금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 | △ | × | - |
| 국가유공자 급여 | 보상금 | ○ | × | ○ | △ |
| | 간호수당 | ○ | × | × | - |
| | 무공영예수당 | ○ | × | × |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 ○ | △ |

| 분 류 | 소분류 | 기초생활보장 등* | | 기초·장애인연금 | |
|--------------------|----------------------|-----------|----|----------|----|
| | | 반영 | 공제 | 반영 | 공제 |
|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 | ○ | △ |
| 진폐위로금 | | ○ | × | × | -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 | ○ | ×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유족연금 | ○ | × | × | - |
| | 장애연금 | ○ | × | × | - |
| | 간호수당 | ○ | × | ×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 | × | - |
| 보훈대상자급여 | 간호수당 | ○ | × | × | - |
| | 부양가족수당 | ○ | × | × | - |
| | 중상이부가수당 | ○ | × | × |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 | × | - |
| 석면피해자 영양생활수당 | | ○ | × | × | -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 | × | × | - |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수당 | | ○ | × | ○ | - |
|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 재활보조금 | ○ | ○ | × | - |
| | 피부양보조금 | ○ | ○ | × | - |
| 지자체 지원 | 이·통장 직책수당 | ○ | △ | × | -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 × | × | - |
|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 × | - |
| |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 - | - |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 ○ | ○ | × | - |
| |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 ○ | ○ | × | - |
| |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 ○ | ○ | × | - |
| | 발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 ○ | ○ | × | - |
|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 ○ | ○ | × | - |

*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 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2 사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가) 정의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나) 조사방법

- 사적이전소득(지원금)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⁸⁾으로 지원 받는 금품 등
 -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 참조
-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 보장가구원이 아닌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 (무료임차료)
 - 수급권자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사업안내」 무료임차소득 산정방식 참조

3 부양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의료급여)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인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비 산정
-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4 국외기타소득(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준용사업, 장학재단)

- 개념 :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등
 - ※ 예시) 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 산정방식 : 확인되는 모든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8)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마. 보장기관 확인소득

1 정 의

- 확인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사회보장시스템 등의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및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소득을 의미함.(이를 이하 ‘확인소득’ 또는 ‘추가소득’으로 표기)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2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 산정가능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 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조건부과제외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 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 (1)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된 자
 -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 (2)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3)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3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가) 소득관리 방법

-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 (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나) 산정기준 금액

● 1월 76,96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

※ '23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기준(효력 : '23.1.1~12.31, 전년대비 460원 인상)

다) 유형별 산정기준

(1)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가)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나)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다)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2)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가)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나)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다)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산정 가능

4 유의사항

(1)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산정하는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 되는 경우
-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익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2)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 유예하는 기준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8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 유예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월 9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조건부과 제외 사유를 만족하는 소득의 종류가 될 수 없음.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다른 종류의 실제 소득임

(3)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 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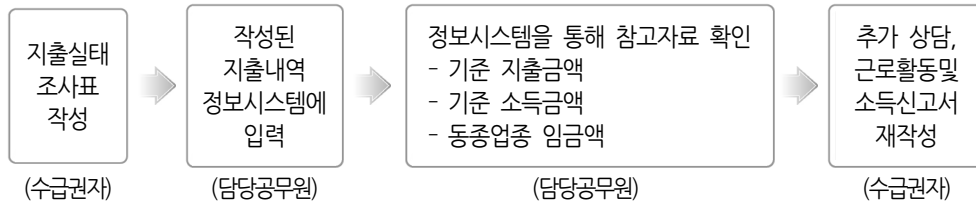
(4)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소득의 성실 신고를 유도

참고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적용 대상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근로·사업소득 등에 비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 적용 절차



- 재신고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어·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검토

-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 동종업종 임금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IV 재산조사

①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⁹⁾, 건축물¹⁰⁾ 및 주택(제104조제1호, 2호, 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제11호)
- 「지방세법」에 의한 어업권 및 양식업권(제6조제13호 및 제13조의2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9) 논·밭·임야 등

10) 건물, 시설물 등

나.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다.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②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③ 사업별 재산조사 항목

| 항목별 | 사업명 | 국민 기초 | 기초 연금 | 긴급 복지 | 장애 수당 | 장애인 연금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한부모 가족 | 차상위 자산 형성지원 |
|---------|-------------|-------|-------|-------|-------|--------|--------|----------------|--------|-------------|
| 1. 일반재산 | | | | | | | | | | |
| | 토지, 건축물, 주택 | ○ | ○ | ○ | ○ | ○ | ○ | ○ | ○ | ○ |
| | 임차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선박·항공기 | ○ | ○ | ○ | ○ | ○ | ○ | ○ | ○ | ○ |
| | 동산 | ○ | × | ○ | × | × | ○ | ○ | ○ | ○ |
| | 입목재산 | ○ | ○ | ○ | ○ | ○ | ○ | ○ | ○ | ○ |
| | 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 조합원입주권 | ○ | ○ | ○ | ○ | ○ | ○ | ○ | ○ | ○ |
| | 분양권 | ○ | ○ | ○ | ○ | ○ | ○ | ○ | ○ | ○ |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 | ○ | ○ | ○ | ○ | ○ | ○ | ○ | ○ |
| 2. 금융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 재산 항목 | | 산정 기준 |
|----------|---|----------------------------------|
| 일반 재산 |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보정계수(0.95) |
|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 • 가축·종묘 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 | • 입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 어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재산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 |
|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

※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 재산종류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토 지 |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 표준지공시지가 × 면적 |
| |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 건 축 물 | 주 택 |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
| | |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
| | 건 물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시설물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선박/항공기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입목재산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회 원 권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수급권자가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 재산으로 처리)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의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건축법 시행령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정의 :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및 제3자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를 통하여 주택의 사용, 수익 사실관계를 확인한 임차보증금
-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 곳만 인정(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조사방법

① 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 재산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②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 적용한도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가) 4급지 체계개편('23.1.1.적용/차상위자활 '23.3.2.적용)

| 구 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장애수당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 주민) | 17,200 만원 | 15,100 만원 | 14,600 만원 | 11,200 만원 |

예시 경기지역에서 2억원 주택 보유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1억5,1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으로 적용하고 4,9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경기지역의 기본공제액(8,0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적용액(1억5,100만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7,1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을 적용

(나) 3급지 체계유지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 독시설 및 접안시설 : 독, 조선대
- 도관시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토지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사업 등 일부 사업 토지산정 시 토지가격적용률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text{토지가격} = \text{시가표준액} \div \text{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 |
|---------|---|
| 서울특별시 | 0.9(전지역) |
| 부산광역시 | 0.9(전지역) |
| 대전광역시 | 0.9(전지역) |
| 인천광역시 |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 대구광역시 | 0.9(區지역) / 0.8(달성군) |
| 광주광역시 |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
| 울산광역시 | 0.9(區지역) / 0.8(울주군) |
| 세종특별자치시 | 0.8(전지역) |
| 경기도 |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
| 강원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 충청북도 |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畝·面지역, 충주시 畝·面지역, 제천시 畝·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
| 충청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 전라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 전라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 경상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 경상남도 |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畝·面지역, 진주시 畝·面지역, 김해시 畝·面지역, 사천시 畝·面지역, 거제시 畝·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
| 제주특별자치도 | 0.9(전지역) |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참고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가. 기초연금·장애연금

- 일차적으로는 「민법」 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 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 ※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나. 기초생활보장

- 사망자의 미상속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면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 ※ 미상속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영
-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 수급(권)자가 「민법」 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3 임차보증금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주택임차보증금),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이 조회되며 아래 규칙에 따라 반영됨(참고 참조)

참고 임차보증금 시스템 반영 규칙

가. 주택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적용 우선순위 : (1순위) 대법원, (2순위) 국토부, (3순위) LH주택조사 정보
 - 대법원과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임차보증금)이 모두 조회되는 경우, 대법원 자료 우선 적용
 - ※ 대법원 자료는 등기 자료로서, 민사(민법)상 전세권의 인정을 우선 받음을 감안
- 다음의 경우에는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조사 정보를 반영
 - ①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가 없는 경우(미회신) 또는 계약종료일이 지난 경우
 - ⇒ 현재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유효한 자료만 반영함에 따라 전월세 계약 갱신을 안 할 경우 재산 산정시 누락되는 문제 방지
 - ② 공공임대의 경우
 - ⇒ 성격상 공공임대는 주택조사 정보가 보다 공신력이 있으며, 전월세거래정보는 수급자의 재산이 과다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조사 정보 우선 반영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금액이 수급자의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나. 상가 임차보증금

-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상가임차보증금 신고금액 적용
- 금액정보를 재산으로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미적용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된 경우,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상가임차보증금정보가 중복으로 조회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정동 전체주소가 동일한 경우 등)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¹¹⁾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임차보증금가액} = \text{임차보증금} \times \text{보정계수}(0.95)$$

* 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1) 보정계수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4 선박·항공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선박(지방세법 제6조제10호) : 기선·범선·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항공기(지방세법 제6조제9호)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²⁾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5 동산

가)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 등 생활 필수품은 제외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처리
 - * 건설기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외의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캐이퍼,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은 동산으로 처리

나) 조사방법

-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여부 확인하고 건설기계 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 반영

12)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참고 건설기계 시스템 반영 기준

1. 지방세정 자료 활용(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2. 국토부 취득가액 활용(국토부 취득가액에 잔존가치율 적용)
3. 실거래가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적용
 - ※ 현재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정보가 시스템에 입수가 안 됨에 따라 국토부 취득가액 정보에 행정자치부 공시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반영
 - 예) 제조년도 2021년인 굴삭기의 취득가액이 27,000,000원인 경우 17,199,000원 반영
 - 취득가액(27,000,000원) X 잔가율(0.637) = 17,199,000원

[2023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 자료]

| 대 상 | 내용 연수 | 경 과 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 10 | 0.832 | 0.708 | 0.637 | 0.545 | 0.439 | 0.349 | 0.290 | 0.231 | 0.184 | 0.146 | 0.110 | | | | | | | | | |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 레이러 | 13 | 0.871 | 0.768 | 0.709 | 0.603 | 0.543 | 0.455 | 0.381 | 0.318 | 0.279 | 0.234 | 0.196 | 0.165 | 0.138 | 0.110 | | | | | | |
| 불도저, 가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베틀링 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향타및향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15 | 0.885 | 0.793 | 0.736 | 0.644 | 0.603 | 0.511 | 0.439 | 0.376 | 0.323 | 0.290 | 0.249 | 0.214 | 0.183 | 0.158 | 0.135 | 0.110 | | | | |
|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 17 | 0.904 | 0.831 | 0.763 | 0.680 | 0.627 | 0.551 | 0.488 | 0.431 | 0.382 | 0.346 | 0.307 | 0.272 | 0.242 | 0.215 | 0.191 | 0.162 | 0.131 | 0.110 | 0.100 | |

6 입목재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굴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 시설이용회원권, 요트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8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조회(스캔 등)하여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 추가부담금(=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반영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

9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10 어업권 및 양식업권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 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권리: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1 정의**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 금융자산 :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2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신용정보, 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회대상 사업 : 법률상 근거가 있는 다음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 ※ 차상위자활,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포함

-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1항)
-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 장애수당 등(「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료급여법 제3조의3)
- 암환자 의료비지원(「암관리법」 제13조)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 조사대상자

- 보장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 : 보장가구원, 그 부양의무자)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조회기준일 : 조회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회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 : 조회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최종시세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 비상장주식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평가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정보가 있으면 그 금액을 회신,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액면가액으로 회신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17.5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정보를 수신)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등 : 조회 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 : 조회기준일 당시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 금융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비상장주식, ISA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회신

[신용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조회기준일 당시 대출 잔액
- 신용카드 미결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 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그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원금만 회신

[보험정보]

- 보험증권 : 조회기준일 당시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1천원 이상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조회 실시(정기 확인조사 본정비 시행일 기준 약 2개월 전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 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신규신청, 보장추가 시 기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용 금지(반드시 해당 보장에 대해 신규 작성 제출 요구 및 등록)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 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회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 용 도 | 증빙서류 |
|-------------|-------------------------------|
| 일시금의 출금 확인 |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

6 금융재산 공제기준

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사업 등

- 생활준비금 공제 : 가구당 500만원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 금융재산 조사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 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 ※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동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다.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 최초취득가액×잔가율과 취득가액×잔가율 중 큰 금액
 -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3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법인등기 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 다만 동일 가구수급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동일 차량이 조회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재산으로만 반영(부양 의무자의 재산으로는 미반영)
- 전기자동차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
 -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승용·승합) 가액산정은 차령 30년까지 잔가율 적용하여 산정
 - 산정방식 :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차령 20년까지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20년 초과 차량은 20년 차량가액에서 매년 15%씩 차감하여 산정

참고 리스 차량의 반영방법

- 타인 명의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의 재산 반영방법
 - 가. 리스 차량 소유여부 확인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현황'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리스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리스대출'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리스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사업 반영방법
 - 리스 자동차로 확인되는 경우 '리스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리스 관련 대출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도록 확인
 - 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사업 등 준용사업
 - 리스 자동차로 확인되는 경우 '리스계약서'의 차량가액을 자동차재산으로 100% 반영하고, 리스 관련 대출을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부채에 추가
 - 소명을 통해 해당 차량을 사용·수익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리스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고, 리스 관련 대출은 부채로 반영하지 않음
- * 예) 수급자가 리스 계약을 했으나, 타인이 월 리스료를 부담하며 차량 운행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차에 대한 적용 기준은 각 사업별로 다름(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등)
-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종으로 배기량 기준 부합 여부 판단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고급자동차 판단 시, 전기자동차는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으로만 판단

참고 각 사업별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보장 등 자동차 기준]

| 사업구분 | 차량가액 산정 방식 | | | |
|---------------------------|---|--|--|------------|
| | 제외 | 50% 감면 | 일반재산(월4.17%)환산율 | 100% 환산율 |
| 기초 생활보장 (생계, 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자동차로 가구당 1대 * 상이등급 1~3급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용 자동차(생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로 가구당 1대 * 50% 감면, 50% 일반환산율 (월 4.17%) 적용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 11인 이상 승합차 -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등 - 특수자동차(견인·구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사용 자동차¹³⁾로 가구별 1대 -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승용차 - 11인이상 15인이하 승합차 - 10인승 이하 승합차(봉고 등) - 1톤이하 화물차 -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 1,600cc 미만 소형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 중 자동차가액 2백만원 미만 - 1,600cc 미만 소형자동차 중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편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1,000cc 미만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미만 중 자동차가액 2백만원 미만 ■ 이륜자동차 - 260cc이하 중형 이륜차 ■ 기타 - 압류·폐차 등으로 매매불가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자동차 - 불법명의(대포차 등) 자동차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 또는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일반 재산으로 인정 | 그 외 모든 자동차 |

Chapter

02

 공통
 업무
 무
 절
 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5장

| 사업구분 | 차량가액 산정 방식 | | | |
|------------------|-------------|---|---|------------|
| | 제외 | 50% 감면 | 일반재산(월4.17%)환산율 | 100% 환산율 |
| 기초 생활보장 (주거, 교육) | <생계·의료와 동일> | <생계·의료와 동일> | <아래 외 생계·의료와 동일> ■ 승용자동차 - 2,000cc 미만 중형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 중 자동차가액 5백만원 미만 - 2,000cc 미만 중형자동차 중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편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승합·화물자동차 - 소형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미만 중 자동차가액 5백만원 미만 | 그 외 모든 자동차 |
| 차상위 장애 수당 | <생계·의료와 동일> | <생계·의료와 동일> | <생계·의료와 동일> | 그 외 모든 자동차 |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 <생계·의료와 동일> | <생계·의료와 동일> | <생계·의료와 동일> ■ 승용자동차 -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1,600cc 미만 중 자동차가액 200만원 미만 | 그 외 모든 자동차 |
| 차상위 계층 확인 | <생계·의료와 동일> | <생계·의료와 동일> | <아래 외 주거·교육과 동일> ■ 승용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국산 한정) | 그 외 모든 자동차 |
| 차상위 자활 | <생계·의료와 동일> | <아래 외 생계·의료와 동일> ■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 승용차 | <아래 외 주거·교육과 동일> ■ 승용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그 외 모든 자동차 |
| 차상위 자산 형성 | <생계·의료와 동일> | <차상위 자활과 동일> | <차상위 자활과 동일> | 그 외 모든 자동차 |

13)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를 발급받은

| 사업구분 | 차량가액 산정 방식 | | | |
|--------|-------------|-------------|-----------------|------------|
| | 제외 | 50% 감면 | 일반재산(월4.17%)환산율 | 100% 환산율 |
| 한부모 지원 | <생계·의료와 동일> | <생계·의료와 동일> | <주거·교육과 동일> | 그 외 모든 자동차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자동차 기준]

| 사업구분 | 차량가액 산정 방식 | | |
|--------|---|---|--|
| | 제외 | 일반재산(연4%)환산율 | 100% 환산율 |
| 기초 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사용 차량 가구당 1대 * 모든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가 아닌 자동차 ■ 고급자동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이 10년 이상 - 폐차·매매로 운행 불가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된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10년 미만 |
| 장애인 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유 차량 1대 | <기초연금과 동일> | <기초연금과 동일> |

[전기자동차의 배기량 대체 기준]

| 차량 종류 | 배기량 |
|----------|-----------|
| 경형 전기자동차 | 1000cc 미만 |
| 소형 전기자동차 | 1600cc 미만 |
| 중형 전기자동차 | 2000cc 미만 |
| 대형 전기자동차 | 2000cc 이상 |

※ 자동차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각 사업지침을 참고

자동차 또는 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훈처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에 유의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정의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 |
|---|
|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 - (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 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 ‘기 보유했던 재산’의 범위
 - 신규신청자가 보유하였으나 보장 신청 이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행복이음으로 조회되는 재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였을 경우 기 등록된 재산
 -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 신고한 재산
 - ※ 기 보유했던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 : 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 하여 재산*으로 산정
 -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새로 취득한 재산의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기준
(기초생활보장) 새로 취득한 재산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
 -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확인, 기초·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기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 가능

●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 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 및 그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화장장 등 포함)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 (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기초연금)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장애인연금)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양육비 포함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⑥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가능하나, 취득한 재산에 대한 확인 및 반영 철저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 적용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참고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 사 업 | 자연적 소비금액 |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사업 등 |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기초의료급여)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23년 기준) 단독가구 2,217,408원, 부부가구 2,700,482원 ※ (기초생활, 차상위사업)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

참고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상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1. 소득 | |
| ○ 근로소득 |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 <p>- 「소득세법」 제20조제1항</p> <p>1. 갑종</p> <p>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p> <p>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p> <p>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p> <p>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p> <p>2. 을종</p> <p>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p> <p>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p> <p>-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p> <p>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p> <p>-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p> <p>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p> |
| ○ 사업소득 | <p>●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p> <p>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p> |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 ○ 임대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 이자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카. 비영업대금의 이익 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 ○ 연금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3호에 따른 소득 및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 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 <p>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p> <p>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p> |
| ○ 주택연금, 농지연금 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 공적이전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
| ○ 사적이전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 ○ 부양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소득 가. 제5조의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
| ○ 보장기관 확인 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 2. 재산 | |
| ○ 토지, 건축물,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토 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나. 건축물 :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다. 주 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 ○ 임차보증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 ○ 동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
| ○ 입목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 가. 입목 : 입목, 지상의 과수. 입목과 죽목을 말한다. |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 항공기, 선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항공기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선 박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
| ○ 회원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 규정에 의한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 체육 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라.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 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 조합원입주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8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 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분양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및 양식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나.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업권을 말한다 |
| ○ 금융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 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V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구 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원천기관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 |
|------|-----------------|---|----------------|---|-------------------------------|------|
| 소득 |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4월 | 전월 보수월액 | 매월 | |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 1월 | 전월 표준보수월액 | 매월 | |
| | |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 4월 | 전월 보수월액 | 매월 | |
| |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에만 제공 | 매월(수시) | 전월 보수월액 | 연 2회 | |
| |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11월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 연 2회 | |
| | | 일용 근로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매분기 | 신청조사시 : 최근 3개월 자료 | 연 2회 |
| | |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 매분기 | 확인조사시 : 최근 6개월 자료 | 매분기 |
| | | 자활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매월 |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 | 매월 |
| | 공공일자 리 소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 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 수시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 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 정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 연 2회 |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 | 어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 |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 | 기타사업 소득 (자영업자)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 | | *사업자등록증 | 수시 | 사업자등록자료 | 연 2회 |
| | | | *소유사업장 직원수 | 수시 |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 연 1회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이자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11월 | 이자소득/12 | 연 2회 | |
|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4월 | (이자소득-보장별공제금*)/12 | 연 2회 | |

| 구 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원천기관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
|----------|-------------------------|------------------------|-------------------------|---|----------------------|
| 기타 소득 | 연금(개인)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수시 |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 연 2회 |
| |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별정우체국연금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비정기 |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 매월 |
|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비정기 |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 매월 |
| |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 매월 |
| | | *농지연금 | 매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 직접직불금 | 12월 | 직불금/12 | 연 2회 |
| 구직촉진수당 | 매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재산 | 일반 재산 | 토지 | ○재산세 : 11월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연 2회 (취득세 : 매월) |
| | | *국토부 지적대장 | 수시 |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 매월 |
|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연 2회 (취득세 : 매월) |
| | |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 수시 |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 매주 |

| 구 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원천기관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 |
|-----|--------------|----------------|-------------------------|---|---|------|
| | 선박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연 2회 (취득세 : 매월) | |
| | 항공기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 매월 | |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정(취득세) | 수시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매월 | |
| | 입목재산 | 지방세정(취득세) | 수시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매월 | |
| | 회원권 | 지방세정(취득세) | 수시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매월 | |
| | 임차보증금 |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 수시 |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 매월 | |
| | 분양권 | 분양권(국토부) | 수시 | 분양권 보유정보 | 매월 | |
| | 조합원 입주권 | 조합원입주권(국토부) | 수시 |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 매월 | |
| | 건설기계 | 건설기계(국토부) | 수시 | 건설기계 보유정보 | 연 2회 | |
| | 금융 재 산 | 요구불예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 연 2회 |
| | | 저축성예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계좌잔액 | 연 2회 |
| | | 증권거래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등 :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 인수권 증서 등 : 액면가액 (3) 예수금 : 잔액 | 연 2회 |
| | | 보험증권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1) 보험 해약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 저축 해약 시 환급금 | 연 2회 |

| 구 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원천기관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
|-----|---------------------|-------------|--------------|---------------------------------|----------------------|
|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 연 2회 |
| | 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 수시 |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 연 2회 |
| | | 보험개발원 | 분기 | 차량기준가액 | 매분기 |
|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1월 | 시가표준액 | 매년 |
| 부채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 수시 | 대출 잔액 | 연 2회 |
| | 신용카드 연체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신용카드 미결제액 | 연 2회 |
| | 임대보증금 | 국토부 임대보증금 | 수시 |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 매월 |

* 굵은 글씨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며 그 외는 참고자료로 제공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 구 분 | 1사분기 자료 | 2사분기 자료 | 3사분기 자료 | 4사분기 자료 |
|---------|----------|----------|----------|----------|
| 사업주 신고 | 4월말 | 7월말 | 10월말 | 다음연도 2월말 |
| 신청조사 입수 | 7월말 | 10월말 | 다음연도 1월말 | 다음연도 5월말 |
| 확인조사 입수 | 같은연도 하반기 | 다음연도 상반기 | 다음연도 상반기 | 다음연도 하반기 |

VI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 분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자활지원 ○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 월 2.0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 $\{0.7 \times (\text{근로소득} - 108\text{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자동차가액}) - \text{부채}\} \times$ 연 소득환산율 / 12월] + P* | 연 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 $\{0.7 \times (\text{근로소득} - 88\text{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 긴급복지지원 : 소득인정액제도 미적용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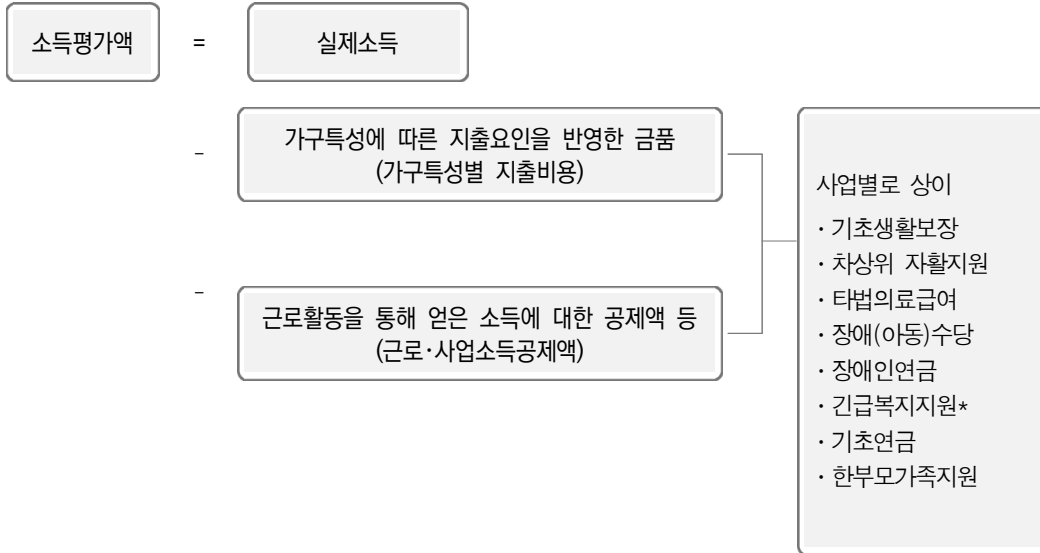
· (소득평가액) 상시·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0.7 \times (\text{근로소득} - 52\text{만원})\} + \text{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부양의무자는 재산 미적용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차상위 장애수당 지출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②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미적용

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구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자활지원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제2항에 의한 추가 아동 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¹⁴⁾ <p>*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p> |

| 사업구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월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입양특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월 15만원)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기초생활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발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¹⁶⁾(타법의료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본인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해당 제출금액 |

| 사업구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 |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학기~전전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 ÷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른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 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 긴급복지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로서 평균 1개월간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수업료 등 월평균 지출액 •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차감한도액: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주거지원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 |

- 14)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 15)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16)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지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 제 16조에 의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휴학·졸업유예 시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 「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 이외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상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행복이음 자동반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u>108만원</u>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u>88만원</u>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전액 공제 *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하역종사자) 미만자의 소득 |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공제액 및 공제율 | 시스템 자동 공제 여부 |
|--|--|--------------------|-----------------|
| ○ 기초생활보장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지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50% | X |
|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 만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X |
| | 만25세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 및 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X |
| | 75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O |
| |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 | O |
| | 65세이상~74세이하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 30% | O |
| | 특례보호기간 중인 북한이탈주민 | | X |
|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의 여성 | | X |
|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대상 아님에 유의) | | X |
| | 25세이상~64세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 30% | O |
|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 30% | X | |
| ○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상시, 일용 소득 | 52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 대상유형별 공제 적용 | X |
| ○ 기초연금 | 상시소득 전체 | 10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 장애인연금 | 상시소득 전체 | 8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 상시, 일용근로소득 전체 | 10% | O |
| ○ 차상위계층 확인 |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전체 | 10% | O |
| ○ 한부모가족지원 | 일용근로소득 전체 | 30% | O |

* 일부 항목 별도 적용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미적용

- '만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및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기초생활보장 중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미적용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0원”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가) 4급지 체계개편('23.1.1.적용/차상위자활 '23.3.2.적용)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 창원 | 기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지원 | 13,500만원 | | | 8,500만원 |

(나) 3급지 체계유지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자동차 및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서만 공제함에 유의

나.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2 부채 인정범위 및 조사방법

| 항목별 | 사업명 | 기초생활 보장 | 차상위지원 | | | | 기초연금 장애연금 연금 | 긴급 복지 |
|--------------------------------|-----|------------|------------|------|----|----------|--------------------|----------|
| | | | 본인부담 경감 | 장애수당 | 자활 | 계층 확인 | | |
| 금융기관 대출금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 ○ | ○ | ○ | ○ | ○ | ○ | ○ |
| 임대보증금 | | ○ | ○ | ○ | ○ | ○ | ○ | ○ |
| 개인 간 부채 (법원 판결문·화해조정 확인 사채) | | ○ | ○ | ○ | ○ | ○ | ○ | ○ |
| 개인 간 부채 (공정증서 확인 사채) | | × | × | × | × | × | × | ○ |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미결제금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 대출금

(가) 범위

- 금융회사 등에는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참고 금융회사 등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fa.or.kr>/등록업체조회)넷 조회

(나)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정보는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참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 : 반영,
 -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 : 미반영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가) 범위

- 공공기관 대출금(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나) 조사방법

- 해당 기관에서 확인·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 개인 간 부채(사채)

(가) 범위

- 판결문(결정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나) 조사방법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 불인정(긴급복지지원은 인정)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의 전월세거래정보, LH 주택조사 자료가 조회 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 타 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반영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전월세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 산정방식 : 「기초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의 임대보증금 산정방식 참조

3 부채차감 순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업에서는 부채차감 순서가 없으며, 재산의 총액에서 차감

4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5 부채로 인정시 유의사항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음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사업명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 동 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자활지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 월 4.17% * 주거용재산 월 1.04% | 월 6.26%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월 4.17% | 월 1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예술인복지 | | 연 4% | 연 4% | 연 4% *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적용 |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2.08% 적용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 고급자동차 기준(소득환산율 100%) 미적용

VII 부양의무자 조사

① 대상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 : 필수 지출비용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01)에 따른 특례 보장가능여부 검토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계획]

- ('17.11월,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9.1월,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된 경우 적용
 -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의료)
- ('22.1월,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의료)

②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가. 부양의무자 유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조사*) -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소득만 조사 반영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원칙 및 조사방법 적용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조사하지 않음

● 기본재산액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금액 | 22,800만원 | 13,600만원 | 10,150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월 2.08% 환산율 적용

다.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확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처리
 - ※ 부양의무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안내」 참조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 의료급여】

| | | |
|--|---------------------------------------|------------------|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times 40\%) + (B \times 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B \times 100\%$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있음 |
|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의료급여 30% 또는 15%) | |
| | 부양능력 없음 | |
| | $(A+B) \times 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 \times 40\%) + (B \times 100\%)]$ 와 $[(A+B) \times 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VIII 연령산정 방식

- 사업별 연령산정 방식 : 신청자(수급자) 또는 가구 구성원의 연령을 확인 하고자 할 때 산정하는 방식
 -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 단, 영유아보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은 현행대로 ‘출생년’ 기준으로 산정

Chapter

02

공
통
요
구
문
절
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5장

IX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1 개요

- 사회보장사업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 부처(서)별로 분산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식이 제각각 설계되어,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서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격관리를 보다 효율화할 수 있도록 업무자동화를 위한 조사기준 정비 추진

2 근거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7조(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의 정의

- (유형군 분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복지부 내 주요 복지사업을 사업목적, 대상자 범위, 급여성격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

| 구분 | 대상사업 |
|---------------------|---|
|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 최저생활보장을 위하나 보충급여로 엄격한 자산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유형 |
| 2유형군 (차상위사업군) | 차상위 계층의 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 |
| 3유형군 (기초연금형사업군)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등 보편적인 지원에 가까운 사업 유형 |
| 4유형군 (바우처형사업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판정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 등 대규모의 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 |

4 유형군별 대상사업목록

| 구분 | 사업목록 | 시행시기 |
|---------------------|--|----------------|
|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 '21.1~ |
| 2유형군 (차상위사업군) |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사업,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사업은 21.1월부터 시행 | '21.7~ |
| 3유형군 (기초연금형사업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21.1~ |
| 4유형군 (바우처형사업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u>가시간병 방문지원</u> , <u>청년마음건강지원</u> , <u>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u>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취학전아동 실명예방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 | '23. 단계별 추진 |

※ 기타 미분류된 중앙부처사업 및 지자체사업은 5년간 순차적으로 적용예정

5 소득재산조사항목

- 제1유형군
기존 조사항목 유지
- 제2유형군

| 구분 | 조사 항목수 | 주요조사항목 |
|----|--------|---|
| 소득 | 35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 재산 | 42 |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
| 공제 | 27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 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
| 부채 | 6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

● 제3유형군

| 구분 | 조사 항목수 | 주요조사항목 |
|----|--------|---|
| 소득 | 22 |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
| 재산 | 40 |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 공제 | 6 | 이자소득공제, 임대소득경비율 공제(노인)상시근로소득공제, 일반재산자연감소분, 금융재산자연감소분, 한센인피해자국가보상금 |
| 부채 | 7 |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사채, 공공기관대출금 |

● 제4유형군

| 구분 | 조사 항목수 | 주요조사항목 |
|----|--------|---|
| 소득 | 14 |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 재산 | 21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자동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등 |
| 공제 | 3 |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만 2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X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

① 소득재산 조사항목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수기 2개), 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30여 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되, 금융재산·부채는 조사기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외
 - 수기항목(2개)의 경우, 보유빈도는 낮으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산으로 취득여부 확인 후 반영이 가능한 분양권, 회원권 등 포함

[4유형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 대 | 중(소) | 세목 | 대 | 중(소) | 세목 |
|---------------|------------------|---------------|------------------|------------------|--------------------------|
| 소득 (14)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재산 (21) | 일반재산(토지) | 토지(논) |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 | 토지(대지) |
| | 재산소득 (임대소득) | 임대소득 | | | 토지(임야) |
| | | 이자소득(국세청) | | | 토지(기타) |
|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 상가보증금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 선박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항공기 | |
| | | 별정우체국연금 | | 일반재산(임주 권) | 조합원임주권수기 |
| | | 실업급여 | | 일반재산(분양 권) | 분양권수기 |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 일반재산(회원 권) | 골프회원권 |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 | 콘도미니엄회원권 |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 | 승마회원권 |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일반재산 (건축물) | 건축물(건물) | 공제 (3)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자동차 | 요트회원권 |
| | 건축물(시설물) | | | | 자동차 |
| | 건축물(기타) | | | |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주택) | | 주택 |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토지) | | 토지(밭) | | 만2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② 조사방식

- 소득인정액 방식과 소득재산 분리평가(cutoff) 중 선택

②-1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인정액 방식에 적용(소득재산 분리평가(cut-off)시 미적용)

-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1~3유형 중 자산조사 엄격성이 가장 낮은 3유형(기초연금형 사업군)을 기초로 적용
 - (소득환산율 및 근로소득공제) 건보료 활용 시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재산 고려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충격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환산율(연 4%) 및 근로 소득 정률 공제(30%) 적용
 - (기본재산 공제) 4유형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타 제도와 동일하게 지역별 공제 적용
 - (자동차 소득환산율) 바우처형 사업의 기초연금보다 대상 및 선정기준 범위가 넓음을 감안,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과 같은 연 4% 소득 환산율 적용

* 4천만원 이상, 3천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만24세 이하자,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기초생활보장제도 최대 공제를 적용)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구분기준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③ 가구 구성

-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료 서비스이용자 및 그 배우자의 2촌이내 직계가족*(미성년 아동은 형제자매 포함)을 원칙으로하며,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 적용

* 타 주소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포함(미성년자녀가 서비스이용자인 경우 부모 및 미성년 포함)

** 난임부부사업은 난임시술 대상 부부의 사실혼 인정

④ 전달체계

- 사업별 현행 전달체계 유지

참고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최종조정안

● 소득

| 종 | 소 | 구분 | 세목 | 1유형군(78) | | | | | 2유형군 (35) | 3유형군 (22) | 4유형군 (14) | |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 |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 | 자활근로소득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 | ○ | ○ | ○ | ○ | ○ | × | × |
| | | | | 공공근로소득 | ○ | ○ | ○ | ○ | ○ | ○ | × |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농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축산소득 | ○ | ○ | ○ | ○ | ○ | ○ | × | × | | |
| | 임업소득 | 임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어업소득 | 어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임대소득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 | 이자소득(국세청)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소득(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합계) | ○ | ○ | ○ | ○ | × | ○ | ○ | × | |
| | | 연금소득 | 연금(개인)소득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연금 | ○ | ○ | ○ | ○ | ○ | ○ | × | × | |
| 농지연금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무료임차료(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배우자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무료임차료(장애인연금·기초연금) | × | × | × | × | × | × | ○ | × | | |
| | 부양비 | 부양비 | × | × | × | × | × | × | × | × | | |
| | | 기초생계급여부양비 | ○ | × | × | × | × | × | × | × | | |
| 기초의료급여부양비 | | × | ○ | × | × | × | × | × | × | | | |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78) | | | | | 2유형군 | 3유형군 | 4유형군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35) | (22) | (14) |
| 공적이전소득 | |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간호수당)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무공영예수당)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기타) | ○ | ○ | ○ | ○ | ○ | ○ | ○ | × |
| | |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참전명예수당 | ○ | ○ | ○ | ○ | ○ |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급여 | ○ | ○ | ○ | ○ | ○ | ○ | ○ |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 | ○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 | ○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 ○ | ○ | ○ | ○ | ○ | × | × | × |
| | | 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 | ○ | ○ | × | × | × |
|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 ○ | ○ | ○ | × | × | ×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이·통장직책수당)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출산·고령화관련수당)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교통수당)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보훈대상자추가지원)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복지대상자추가지원) | ○ | ○ | ○ | ○ | ○ | × | × | × | | |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78) | | | | | 2유형군 | 3유형군 | 4유형군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35) | (22) | (14) |
| | | 직업훈련수당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급여 | ○ | ○ | ○ | × | ○ | ○ | × | ×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진폐위로금 | ○ | ○ | ○ | ○ | ○ | × | × | × |
| | |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중상이부가수당) | ○ | ○ | ○ | ○ | ○ | × | × | × |
| | |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 | ○ | ○ | ○ | ○ | × | × | × |
| | | 기초연금 | ○ | ○ | ○ | ○ | ○ | ○ | × | × |
| |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발농사직접지불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진폐보상연금 | ○ | ○ | ○ | ○ | ○ | ○ | ○ | × |
| | | 진폐유족연금 | ○ | ○ | ○ | ○ | ○ | ○ | ○ | × |
| | | 체육유공자연금수당 | ○ | ○ | ○ | ○ | ○ | × | × | × |
| | | 공적이전(기타지원) | ○ | ○ | ○ | ○ | ○ | × | × | × |
| | 국외기타소득 | 국외기타소득 | ○ | ○ | ○ | ○ | ○ | × | × | × |
| 보장 기관 확인 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 | ○ | × | × | × | × |

● 재산

| 종 | 소 | 구분 | 1유형군(46) | | | | | 2유형군 (42) | 3유형군 (40) | 4유형군 (21)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 | |
| 일반재산 | 건축물 | 건축물(건물)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시설물)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기타) | ○ | ○ | ○ | ○ | ○ | ○ | ○ | ○ |
| | 주택 | 주택 | ○ | ○ | ○ | ○ | ○ | ○ | ○ | ○ |
| | 토지 | 토지(밭) | ○ | ○ | ○ | ○ | ○ | ○ | ○ | ○ |
| | | 토지(논) | ○ | ○ | ○ | ○ | ○ | ○ | ○ | ○ |
| | | 토지(대지) | ○ | ○ | ○ | ○ | ○ | ○ | ○ | ○ |
| | | 토지(임야) | ○ | ○ | ○ | ○ | ○ | ○ | ○ | ○ |
| | | 토지(기타) | ○ | ○ | ○ | ○ | ○ | ○ | ○ | ○ |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상가보증금 | ○ | ○ | ○ | ○ | ○ | ○ | ○ |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 | ○ | ○ | ○ | ○ | ○ | ○ | ○ |
| | | 항공기 | ○ | ○ | ○ | ○ | ○ | ○ | ○ | ○ |
| | 동산 | 가축 | ○ | ○ | ○ | ○ | ○ | × | × | × |
| | | 종묘 | ○ | ○ | ○ | ○ | ○ | × | × | × |
| | | 기계,기구류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계 | ○ | ○ | ○ | ○ | ○ | ○ | × | × |
| | 어업권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 | ○ | ○ | ○ | ○ | ○ | ○ | × |
| | 입목재산 | 입목재산 | ○ | ○ | ○ | ○ | ○ | ○ | ○ | × |
| | 조합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 | ○ | ○ | ○ | ○ | ○ | ○ | ○ |
| | 분양권 | 분양권 | ○ | ○ | ○ | ○ | ○ | ○ | ○ |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콘도미니엄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승마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요트회원권 | ○ | ○ | ○ | ○ | ○ | ○ | ○ | ○ |
| | 기타(증여)재산 | 기타(증여)재산_일반 | ○ | ○ | ○ | ○ | ○ | ○ | ○ | × |

Chapter

02

국
회
법
원
부
회
장
의
결
정
사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5장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6) | | | | | 2유형군 (42) | 3유형군 (40) | 4유형군 (21)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 | |
| 금융재산 | 기타(증여)재산 | 기타(증여)재산_금융 | ○ | ○ | ○ | ○ | ○ | ○ | ○ | × |
| | 금융재산 | 요구불예금 | ○ | ○ | ○ | ○ | ○ | ○ | ○ | × |
| | | 저축성예금 | ○ |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 | ○ | ○ | ○ | ○ | ○ | ○ | ○ | × |
| | | 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1년이내지급된 보험금 | ○ | ○ | ○ | ○ | ○ | ○ | ○ | × |
| | | 비상장주식 | ○ | ○ | ○ | ○ | ○ | ○ | ○ | × |
| | 기타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 | ○ | ○ | ○ | ○ | ○ | ○ | ○ | × |
| | | 보훈대상자보상급여(사망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사망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 ○ | ○ | ○ | ○ | ○ | ○ | × |
| 기타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 | ○ | ○ | ○ | ○ | ○ | ○ | ○ | |
| 주거용 재산 | 주거용재산 | 주거용재산 | ○ | ○ | ○ | ○ | ○ | × | × | |
| 고급재산 | 고급차 및 회원권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 | × | × | × | × | × | ○ | × |

● 공제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6) | | | | | 2유형군 (27) | 3유형군 (6) | 4유형군 (3)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 | |
| 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 | 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 | ○ | ○ | × | × | × |
| | | 고엽제후유증 중 중증장애인수당 | ○ | ○ | ○ | ○ | ○ | × | × | × |
|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 ○ | × | × | × |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6) | | | | | 2유형군 | 3유형군 | 4유형군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27) | (6) | (3) |
| |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 ○ | ○ | ○ | × | × | × |
| |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본인분담보험 75% 감면 | ○ | ○ | ○ | ○ | ○ | ○ | × | × |
| |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대학생 학비 | × | × | × | × | × | × | × | × |
| | | 근로무능력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의 40% | × | × | × | × | × | × | × | × |
| |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변제액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 | × | × |
| | | 부양의무자교육비표준공제 | × | × | × | × | × | × | × | × |
| | |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부양의무자의본인거주용 월세 | × | × | × | × | × | × | × | × |
| | | 요양기관이용료 및 생활시설유료실비이용료 | × | × | × | × | × | × | × | × |
| | | 희귀질환자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 | ○ | ○ | ○ | ○ | ○ | × | × |
| |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 의료비 및 간병기관 간병단체 간병비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 × | × | × | × | × | × | × | × |
| | |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국제경기대회 입상 장애인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공제 | ○ | ○ | ○ | ○ | × | × | ○ | × |
| | |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 | × | × | × | × | × | × | × |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6) | | | | | 2유형군 | 3유형군 | 4유형군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27) | (6) | (3) |
| | |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 | × | × | × | × | × | × | ○ | × |
| | | 참전명예수당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 (국기초, 차상위)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가구특성별지출기타 | ○ | ○ | ○ | ○ | ○ | ○ | × | × |
| | 근로소득공 제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 | ○ | ○ | ○ | ○ | ○ | × | × |
| | | 행정인턴 | ○ | ○ | ○ | ○ | ○ | ○ | × | × |
| | | (노인)상시근로소득 | × | × | × | × | × | × | ○ | × |
| | | 만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만2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 예비역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자립적립금(시설수급자) | ○ | ○ | ○ | ○ | ○ | × | × | × |
| | | (맞춤형)만2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국기초, 차상위, 한부모)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 | ○ | ○ | ○ | ○ | ○ | ○ | × | × |
| | |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 보육료(농어민가구) | ○ | ○ | ○ | ○ | ○ | ○ | × |
| 대출상환액중 이자비용50% | ○ | | ○ | ○ | ○ | ○ | ○ | × | × |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1ha미만 | ○ | | ○ | ○ | ○ | ○ | × | × | × | |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발농사직접지불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6) | | | | | 2유형군 (27) | 3유형군 (6) | 4유형군 (3)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 | |
| | |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 ○ | ○ | ○ | ○ | ○ | × | × | × |
| 일반재산 공제 |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 500만원 이내의 농지, 가축, 종묘, 농기계 등 | ○ | ○ | ○ | ○ | ○ | ○ | × | × |
| | | 일반재산 자연감소분 | ○ | ○ | ○ | ○ | ○ | ○ | ○ | × |
| 금융재산 공제 | 장기저축 | 장기저축 | ○ | ○ | ○ | ○ | ○ | ○ | × | × |
| | 생활준비금 | 생활준비금 | ○ | ○ | ○ | ○ | ○ | ○ | × | × |
| | 자연감소분 | 금융재산 자연감소분 | ○ | ○ | ○ | ○ | ○ | ○ | ○ | × |
| | 한센인 피해자 국가보상금 | 한센인피해자 국가보상금 | ○ | ○ | ○ | ○ | ○ | ○ | ○ | × |

● 부채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6) | | | | | 2유형군 (27) | 3유형군 (6) | 4유형군 (3)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 | |
| 부채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연체금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할부금 | × | × | × | × | × | × | × | × |
|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임대보증금(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 | × | × | × | × | × | ○ | × |
| | 개인간사채 |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 × | × | × | × | × | × | × | × |
| | | 법원인정사채 | ○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대 출금 | 농지연금 | ○ | ○ | ○ | ○ | ○ | ○ | ○ | × |
| | | 주택연금 | ○ | ○ | ○ | ○ | ○ | ○ | ○ | × |
| | 국외부채 | 국외부채 | × | × | × | × | × | × | × | × |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보장결정

3

I. 개 요 • 149

II.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49

III.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150

IV. 보장결정 • 153

V. 통 지 • 154

VI. 이의신청 • 155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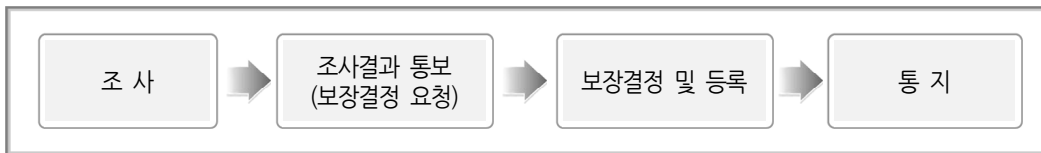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03 | 보장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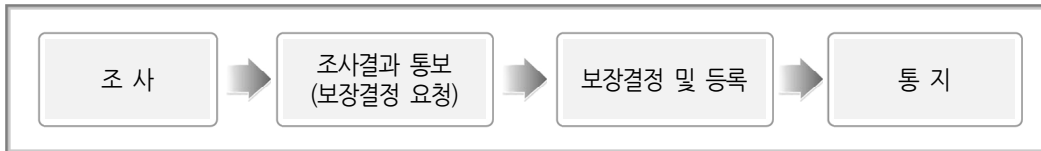


I 개요

- 보장기관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통지함
- 일반적인 보장결정 절차
 - 복지급여



- 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II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III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 복지급여

| 기준 | 기초 생활보장 | 기초 연금 | 장애인 연금 |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지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긴급복지지원 | 한부모 가족지원 |
|---------|--|--|--|--|--|---|--|---|
|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23년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23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 - | -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 · 대도시 : 241~310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52~194백만원 이하 · 농어촌 : 130~16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72%) |
| 부양 의무자 |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X | X | X | X | X | X | X |
| 기타 자격 | - | - 65세 이상 노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 - 어린이집 이용 - 만0-5세 (만0-2세는 기본보육반 또는 연장보육반) | - 어린이집 미이용 - 84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참고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 원/월)

|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2,077,892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 2인 가구 | 3,456,155 | 1,036,846 | 1,382,462 | 1,624,393 | 1,728,077 |
| 3인 가구 | 4,434,816 | 1,330,445 | 1,773,927 | 2,084,364 | 2,217,408 |
| 4인 가구 | 5,400,964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 5인 가구 | 6,330,688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 6인 가구 | 7,227,981 | 2,168,394 | 2,891,193 | 3,397,151 | 3,613,991 |
| 7인 가구 | 8,107,515 | 2,432,255 | 3,243,006 | 3,810,532 | 4,053,758 |
| 8인 가구 | 8,987,049 | 2,696,116 | 3,594,819 | 4,223,913 | 4,493,525 |
| 9인 가구 | 9,866,583 | 2,959,977 | 3,946,632 | 4,637,294 | 4,933,292 |
| 10인 가구 | 10,746,117 | 3,223,838 | 4,298,445 | 5,050,675 | 5,373,059 |

□ 한부모가족지원

(단위 : 원/월)

| 구 분 |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 기준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Chapter

0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5장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구분 | 장애인 활동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
|---------------|--|--|---|--|---|---|
| | | | | | 발달재활 서비스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지원 |
| 소득 · 재산 |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다만 기준중위소득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건보료 판정) |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건보료 판정) |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원칙 (건보료로 판정) - 사업별로 상이 | -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건보료로 판정) |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건보료로 판정) |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건보료로 판정) |
| 서비스 요구 |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일정 점수 (42점)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 지지체별 예외 지원 대상 선정 가능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만 18세 이하 청소년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 입소 산모는 만 18세 초과 가능)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분만 취약지 산모 등 | 사업별 상이 | - 만 65세 미만 -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u>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u>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 · <u>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 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u> · <u>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 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 - 만18세미만 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중복 장애인정) | - 한쪽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를 가진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IV 보장결정

① 조사결과 통보

- 조사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사업팀에 통보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금융재산 조회를 거치는 사업은 동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보장결정 요청
 -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금융정보 조회 이전이라도 긴급 생계지원 실시
 - 민원처리기한(기초생활의 경우 30일) 내 금융 조회 결과가 회신 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 연장 안내

② 보장결정

-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은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전자결재)
 - 통합조사팀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해 보장 적합여부 및 급여내용을 판단하여 사업팀에 보장 결정 요청
 - 해당 사업팀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보장결정 등록

V 통 지

① 개 요

- 해당사업팀 담당자는 보장결정 내용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② 통지방법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함
 -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③ 통지대상 및 내용

- 통지대상 : 신청인, 부양의무자
- 통지내용
 - 신청인 : 결정내용(적합, 부적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보장기간,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비용 징수 관련 사항(기초생활보장)

④ 통지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기초생활보장, 보육료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사회서비스
- ※ 상기 외 사업은 해당 사업별 지침 참고

VI 이의신청

1 개요

- 보장기관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2 법적근거 및 신청방법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 | 긴급복지지원 | 영유아 보육·양육수당·영아수당(현금) | 한부모가족지원 |
|---------|---------------------------------------|--|-----------------------|------------------------------------|--|-----------------------|--------------------------------------|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40조 | 기초연금법 제22조 | 장애인연금법 제18조 | 장애인복지법 제84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 지침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신청대상 처분 |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 (급여 중지 포함) | 기초연금과 관련된 처분 (지급결정, 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신청에 대한 처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 | - 지원결정 내용 (연장 결정 포함)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 (급여중지 포함) |
| 신청인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 긴급지원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고지받은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대리인 |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리인 |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 긴급지원대상자 | 보육료지원 신청자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
| 신청기한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 | 30일 이내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서면 | 서면 | - | 서면 | 구두 또는 서면 | 서면 |

3 이의신청 절차

| 구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 복지 | 긴급복지 지원 |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 한부모 가족지원 | |
|-----------------------|--|--|---|--------------------------------|-----------------------------|---------------------------------------|-------------|--------|
| 접수 | · 생계·의료·주거 시·군·구청장 (사회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 교육급여 시도교육감(시군구청 신청 대행 가능) | 시·군·구청장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군· 구청장) | 시·군·구청장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 시·군·구청장 (사회복지담 당부서 또는 읍·면·동) | 시·군·구청장 | |
| 송부 | · 10일 이내 · 교육급여 신청 대행인 경우 15일 이내 | 즉시 | - | - | 10일 이내 | - | - | |
| 확 인 · 처 분 | 처리 기관 | 시·군·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구청장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군· 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 | |
| | 처리 기한 | 30일 이내 |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15일 이내 | 1개월 이내 | 15일 이내 | 30일 이내 | 30일 이내 |
| | 처분 효력 | 이의신청 대상 최초처 분 결정 일자로 소급 | 급여신청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달로 소급 - 급여신청 이외는 처분 결정월로 소급 | - | - |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 | - | |
| 통 지 | 대상 | · 생계·의료·주거 이의 신청인, 시·군·구청장 · 교육급여 이의 신청인 | 이의신청인 (시·군· 구청장) |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인, 시·군·구청장 |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인 |
| | 방법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 불복시 | · 생계·의료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주거 90일 이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교육 9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 - | - | - | - | - | - | |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④ 이의신청 서식

- 이의신청서(공통서식)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급여·서비스 실시 4

I. 급여·서비스 개요 • 161

II. 복지급여 • 166

III.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183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04 | 급여·서비스 실시



I 급여·서비스 개요

1 주요 복지급여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 | | | |
|----------------------|--|------------|---|--|--------------------|--------------------|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
| 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 지급 자가가구 :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 유지급여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 415,000원/년 -중등 : 589,000원/년 -고등 : 654,000원/년 | 1인 - 70만원 | 80만원 |
| 지급일 | 매월 20일 | 수급자로 결정된 날 | 매월 20일 | 분기별 25일까지** | 사유발생시 | |
| 급여 개시일 | 신청일 | - | 신청일 | 신청일이 속한 달 | - | - |
| 최초 급여 산정 방법 |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 - |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 월할 계산 | - | - |
| 중지시 급여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일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 - |
| 전출 입시 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전 - 신거주지 • 16일 이후 - 구거주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전 - 신거주지 • 16일 이후 - 구거주지 |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 에서 지급 | - | - |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바우처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사를 통해 지급(선불카드는 수령 확인 후 별도 지급)

| 구분 |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 | | 장애인연금 |
|-------------|--|--|--|--|
| | |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 수당 |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대상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이상 경증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 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
| 급여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단독-최고 323,180원 노인부부-최고 517,08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6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4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중증-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7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2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64세 : 최대 323,180원* * 부부장애인- 최대 517,080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부가급여* |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0일 | | 매월 20일 |
| 급여 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 (사전 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 | 신청일이 속한 달 | | 신청일이 속한 달 |
| 최초 급여 산정 방법 | 100% | 100% | | 100% |
| 중지시 급여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 전출 입시 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전 - 신거주지 16일 이후 - 구거주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전 - 신거주지 16일 이후 - 구거주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전 - 신거주지 16일 이후 - 구거주지 | |

* 부가급여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 기초(생계·의료) | 8만원 | 403,180원* |
| 기초(주거·교육) ※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초과 | 2만원 | 4만원 |

| 구분 | 부모급여 (현금) | 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 | | |
|----------------------|--|---|------------------------------|--|---|--------------------------------------|
| | | | 아동교육비 | 아동양육비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 대상 | '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영유아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 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고등학교 재학생 | 18세 미만 아동 | 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 급여 액 | 0~11개월-월 70만원 12~23개월-월 35만원 | 0~11개월-월 20만원 12~23개월-월 15만원 24개월~86개월미만-월 10만원 ※ 장애아동 : 0~35개월-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농어촌양육수당 : 0-86 개월미만 아동 10-20만원 | 급지(지역)별 | • 자녀아동양육비월 20만원 • 추가지원: - 5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35세 이상 미혼모· 부자 가족, 조손가족 월 50,000원 - 5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당 월 100,000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양육하는 만 34세 이하 한 부모가족 아동당 월 50,000원 | 연 93,000원 | 월 5만원 |
| 지급 일 | 매월 25일 | 매월25일 | 분기별 납입기한 전 | 매월 20일 | 연 1회 * 7월 급여지급일 (7.20)에 지급. 단, 7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신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선정된 날 이후 급여지급일에 지급 | 매월 20일 |
| 급여 개시 일 | 신청일 | 신청일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이 속한 달 |
| 최초 급여 산정 방법 | 100% | 100% | 월할 계산 | 100% | 100% | 100% |
| 중지 시 급여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시설퇴소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 전출 입시 급여 | • 15일 이전-신거 주지 • 16일 이후-구거 주지 | • 15일 이전-신거주지 • 16일 이후-구거주지 | 전입일이 속한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지급 | • 15일 이전-신거주지 • 16일 이후-구거주지 | 급여지급 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에서 지원 | 미정 |

②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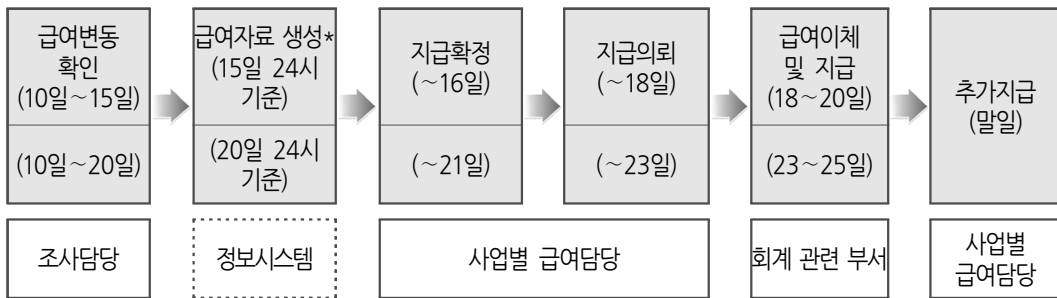
| 구분 | 영유아보육료지원 (i-사랑카드) | | | |
|-----------|--|-----------------------|----------------------------------|---|
| | 만0~2세아 보육료지원 | 만3~5세아 보육료지원 | 장애아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지원 |
| 대 상 | 만0~2세전계층 | 만3~5세 전계층 | 기준대상자 중 만0세~12세의 미취학 장애아 | 기준소득액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 서비스 내용 | 소득수준 무관지원 연령별 정부 지원단가 전액지원 | 소득수준 무관지원 월/ 280천원 | 월 559천원 * 누리만3~5세 장애아 : 559천원 | 정액 100천원 * 방과후장애 아동 : 279천원 |
| 지급일 | 바우처카드 결제 후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 | |
| 급여 개시일 | 신청일 | | | |
| 최초급여 산정방법 | 지원유형에 따라 일할계산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 | | |
| 중지시 급여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 | |
| 전출입시 급여 |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소재지 보장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 | | | |

| 구분 | 사회서비스(바우처) | | |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 가사간병방문 지원 | 청년마을 건강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지원 |
| 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만6세 이상~만65세미만)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기준대상자 중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선정기준 개별 적용 | - 만65세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 1~3급 등록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 (재산)기준 없음 * 우선순위대상 - (1순위)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이동 센터 연계의뢰 청년 | - 만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 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를 가진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 서비스 내용 | - 중증장애인의 사회 활동 지원 위해 지급 (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 활동지원급여 : 936~7,475천원 · 특별지원급여 : 313~1,247천원 | - 표준서비스기간 · 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 쌍생아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가 쌍생아 이상 출산(2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제공인력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세부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사업 안내 참고) | - 서비스별, 지역별 상이 | - 시간 : 24시간, 27시간 - 내용 :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기본 3개월 10회 지원 -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 차등 적용 | - 월 14~22만원 상당의 언어 치료, 미술·음악 치료 등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 지원 (지역별 상이) | - 월 16~22만원 상당의 언어 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 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 지도의 프로그램 제공 |
| 급여 개시일 | 매월(27일)대상자 결정처리 및 전송완료된 대상자에 대해 익월 바우처 생성 원칙 (단,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 수시신청이며, 결정통보 후 익일 생성) | | | | | | |
| 중지시 급여 | 익월 바우처 생성 중지(2개월 미사용, 2개월 본인부담금 미납, 부정행위자) | | | | | | |
| 전출입시 급여 | 바우처생성 시 거주하는 보장기관에서 월단위 바우처 지급원칙 단,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전출 시 해당 바우처 중지되며,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 1회성사업으로 전출입처리 없음 | | | | | | |

II 복지급여

1 급여 지급절차

가. 개요



* 급여자료생성은 당월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이후에는 급여지급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불가(단, 지급제외처리는 가능)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의뢰(교육청→한국장학재단) 후 다음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카드 포인트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 가능

나. 절차별 처리내용

1 급여변동 확인

-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자료 반영
 - 조사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생성일까지 변동자료 확인 및 반영

2 급여자료 생성

- 정기 지급분은 매월 각 사업별 급여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 정기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는 급여이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급여자료 생성 일자를 조정
- 급여자료 생성일(매월 15일) 이후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급여가 미지급 된 경우 사업별 담당자가 추가급여기간동안 수시생성 가능

3 지급확정

- 급여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 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4 지급의뢰

-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

※ 교육급여는 교육행정시스템(NIES)을 통해 관리하되, 바우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교육바우처시스템과 연동하여 지급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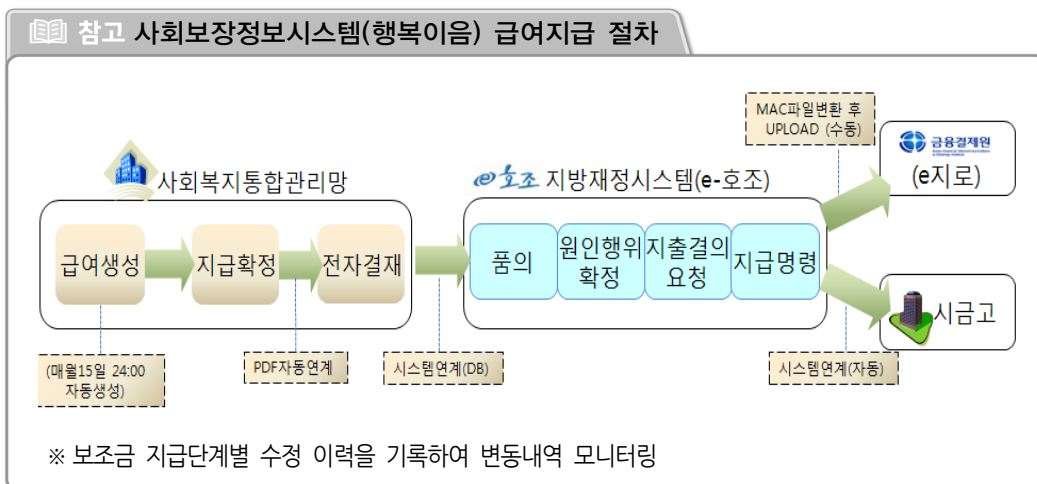
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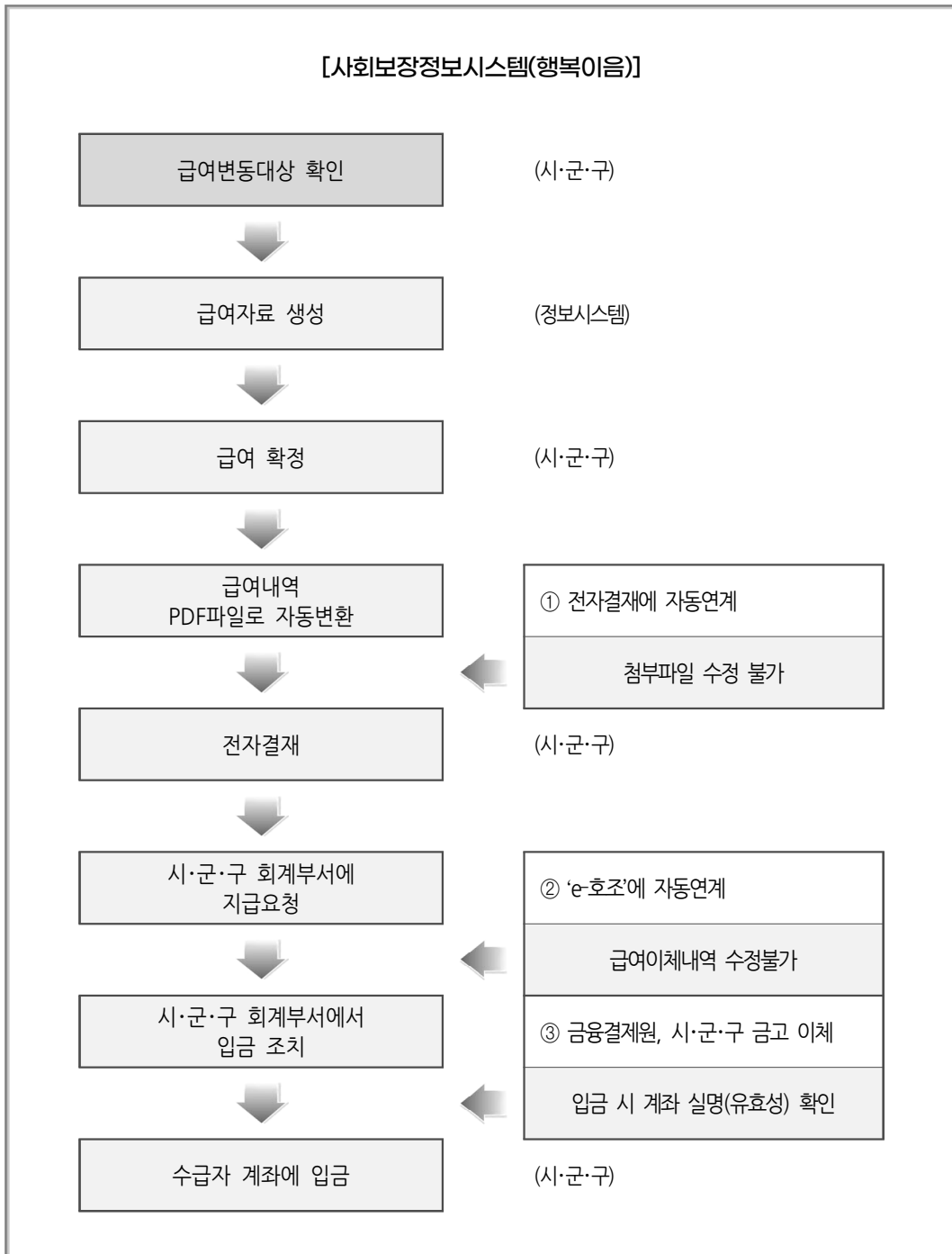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6 추가지급

-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장결정자는 정기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 지급일 이후 수시생성 후 추가지급 가능



참고 복지급여 지급 절차 비교



참고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절차



- ① **(교육급여 신청 접수)** 수급 대상 가계의 교육급여 신청(온·오프라인)을 접수
- ②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후 교육청(학교)으로 결과 전달
- ③ **(급여 보장 결정·통지)** 수급 대상 학생의 학교에서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급여 신청인에 결정 결과를 통지
- ④ **(지급의뢰)**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의 관할 교육청에서 월 단위 급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바우처 지급의뢰
- ⑤ **(바우처 신청 접수)** 사업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기수급자사전등록) '23. 3. 2.(목) ~ 20.(월) 예정 / (온라인 신청 운영) '23. 3. 29.(수) ~ '24. 6. 28.(금)
- ⑥ **(바우처 대상 검증)** 관할 교육청의 바우처 지급의뢰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정보를 검증(전산 기반)하여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정
- ⑦ **(바우처 배정 처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바우처 신청인의 신청 정보를 카드사로 전송(장학재단 → 카드사)하여 바우처 포인트 배정 처리
- ⑧ **(바우처 사용 지원)** 카드 바우처 배정 및 잔액(문자 안내), 바우처의 사용범위 및 방법 등 바우처 이용 문의 응대 및 문제해결 지원

참고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연계 급여 및 서비스 목록

■ 정기급여 : 총 53종

| 보장단위 | 급여·서비스단위 | 지급주기 | e호조 연계 여부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일반) | 매월지급 | ○ |
| | 생계급여(시설) - 주, 부식비 등 | 매월지급 | ○ |
| | 생계급여(시설) - 월동대책비 | 연1회 | ○ |
| | 시설위로금 특별위로금 | 연1회 | ○ |
| | 주거급여 | 매월지급 | ○ |
| 자활지원 | 자활급여 | 매월지급 | ○ |
| | 희망키움통장 | 매월지급 | ○ |
| | 내일키움통장 | 매월지급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 매월지급 | ○ |
| | 청년저축계좌 | 매월지급 | ○ |
| | 자활장려금 | 매월지급 | ○ |
| 아동복지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매월지급 | ○ |
|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 매월지급 | ○ |
| 입양아동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 매월지급 | ○ |
|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매월지급 | ○ |
| 영육아 보육 | 양육수당(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 매월지급 | ○ |
| | 장애아동양육수당 | 매월지급 | ○ |
| | 농어촌양육수당 | 매월지급 | ○ |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 | 매월지급 | ○ |
| 노인복지 | 기초연금 | 매월지급 | ○ |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 매월지급 | ○ |
| | 장애인연금-부가급여 | 매월지급 | ○ |
| | 장애수당(생계, 의료) | 매월지급 | ○ |
| | 장애수당(시설) | 매월지급 | ○ |
|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매월지급 | ○ |
| |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 매월지급 | ○ |
| | 장애아동수당(시설) | 매월지급 | ○ |
|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매월지급 | ○ |

■ 청구성급여 : 총 49종

| 보장단위 | 급여·서비스단위 | 지급주기 | e호조 연계 여부 |
|-------------|--------------------------|------|--------------|
|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 수시지급 | ○ |
| | 장제급여 | 수시지급 | ○ |
| | 생계급여(긴급) | 수시지급 | ○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장제급여 | 수시지급 | ○ |
| 긴급복지 | 긴급복지(생계지원) | 수시지급 | ○ |
| | 긴급복지(교육지원) | 수시지급 | ○ |
| | 긴급복지(해산비지원) | 수시지급 | ○ |
| | 긴급복지(장제비지원) | 수시지급 | ○ |
| | 긴급복지(의료지원) | 수시지급 | ○ |
| | 긴급복지(주거지원) | 수시지급 | ○ |
| |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 수시지급 | ○ |
| | 긴급복지(연료비) | 수시지급 | ○ |
| | 긴급복지(전기료) | 수시지급 | ○ |
| 한부모가족 지원 | 부자검정고시학습바-등록비 | 수시지급 | ○ |
| | 부자검정고시학습바-교재비 | 수시지급 | ○ |
| | 모자검정고시학습바-등록비 | 수시지급 | ○ |
| | 모자검정고시학습바-교재비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부자검정고시등 학습지원-학원비 | 매월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부자검정고시등 학습지원-교재비 | 연1회 | ○ |
| | 청소년한부모모자검정고시등 학습지원-학원비 | 매월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모자검정고시등 학습지원-교재비 | 연1회 | ○ |
| | 청소년한부모모자검정고시등 학습지원-교통비 | 매월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모자검정고시등 학습지원-교복구입비 | 1회지원 | ○ |
| | 청소년한부모부자검정고시등 학습지원-교통비 | 매월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부자검정고시등 학습지원-교복구입비 | 1회지원 | ○ |
| | 청소년한부모부자자산형성계좌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모자자산형성계좌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활동촉진수당 | 수시지급 | ○ |

| 보장단위 | 급여·서비스단위 | 지급주기 | e호조 연계 여부 |
|--------|----------------------|------|--------------|
| |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활동촉진수당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의료비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의료비 | 수시지급 | ○ |
| 의료급여 | 의료급여(요양비) | 수시지급 | ○ |
| |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 수시지급 | ○ |
| | 건강생활유지비 | 수시지급 | ○ |
| | 본인부담보상금 | 수시지급 | ○ |
| | 본인부담금상한금 | 수시지급 | ○ |
| 특별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특별지원(자립지원)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특별지원(상담지원)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 수시지급 | ○ |
| | 청소년특별지원(활동지원) | 수시지급 | ○ |
| 노인복지 | 사할린한인지원(배우자항공비) | 수시지급 | ○ |
| | 사할린한인지원(아파트집기비품) | 수시지급 | ○ |
| 입양아동지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수시지급 | ○ |
|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 수시지급 | ○ |
| |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 수시지급 | ○ |
|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수시지급 | ○ |
| | 장애인등록진단비 | 수시지급 | ○ |
| | 장애인등록검사비 | 수시지급 | ○ |
| 사회복지시설 | 운영보조금(시설) | 수시지급 | ○ |
| | 기능보강보조금(시설) | 수시지급 | ○ |
| | 사업비(시설) | 수시지급 | ○ |
| 아동복지 |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 수시지급 | ○ |
| | 아동발달지원계좌 | 수시지급 | ○ |

② 급여기준

가. 급여지급일

● 정기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단, 기초연금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 교육급여는 분기별 25일까지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급되며, 급여자료 생성 다음달 부터 바우처 이용이 가능함

● 추가지급일 : 매월 말일

- 보장결정일이 급여자료생성일 이후인 경우

나. 급여개시일

● 급여신청일이 개시일

-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단, 기초연금의 사전신청인 경우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의료급여, 긴급복지는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 입양아동지원은 '수급자로 결정 통지한 날일 속한달'이 급여개시일이 됨

● 급여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분 급여의 전액 지급

● 교육급여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는 월할 계산 지급

-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생계비 등 첫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

다. 거주지변경 시 지급기준

● 전입일이 급여생성일(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전입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급여생성일(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전출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 단,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는 대상자 또는 자격 중지 상태에서 신거주지 전입 후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전입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 가구주의 전출 없이 학비지원 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 지급

라. 급여중지자 지급 기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의 경우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학비 지급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미지급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제외

3 급여변경

가. 변경사유

-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결혼·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나. 변경내용

- 급여의 종류, 급여방법, 급여액 등

다. 급여 변경자 지급 기준

-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의 변동시 변동 당월 기준으로 급여 지급

라. 변경방법

- 본인의 신청에 의한 변경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 ※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마. 통지

-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 통지방법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4. 급여중지

가. 중지 사유

-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복지대상자의 생활수준 등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등
- 복지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복지대상자가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 기초연금은 지급 정지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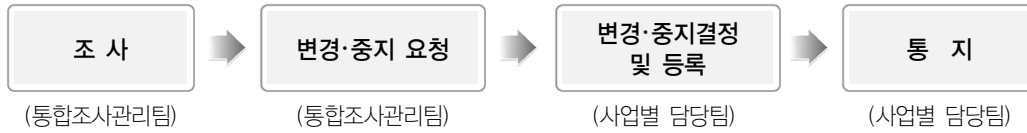
나. 중지 시기

-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군·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
 - ※ 급여 중지는 수급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급여 중지 후 서비스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중지 절차

-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전자결재 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

[급여 변경·중지 절차]



※ 기초연금사업은 지급정지·상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

5 급여지급 계좌 관리

가. 급여 계좌 명의·수급자 명의

1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급여형태를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로 지급

2 급여계좌 예외

- 예외 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 의가 인정하는 자
- 대리 수령 가능한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제출 서류
 - 대리 수령 신청서

- 대리 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진단이 내려진 병원진단서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 그 외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이 가능한 경우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
 - 주거급여(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2조)
 -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 한부모가족지원(자녀학비) 기관(학교)계좌로 지급 가능
 -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2항)
 - 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3조제3항)
 - ※ 단, 기초연금사업에서 부부 수급자의 경우 기준과 같이 부부가 동의하면 배우자 일방의 계좌에 입금 가능함

3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 급여이체 시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①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시·군·구와 주거래 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② 금융결제원으로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수급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 등록 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 금융결제원은 다시 'e-지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여 말일 추가지급대상으로 처리

나. 급여계좌 수

1 배경

- 그동안 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2개 이상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복지사업별로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거나, 영유아복지 및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 확대 등에 따라 각 사업별로 계좌의 명의인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급여계좌 수를 제한하는데 한계

2 급여계좌 등록

- 2개 이상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규정하는 계좌 명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급여별로 계좌 지정 가능

※ 단, 기초생활보장, 한부모지원사업 등 동일보장사업 내에서 여러 종류의 현금성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각 사업의 지침에서 요구하는 대로 1계좌 운영

- 예시 1: 한부모가정지원사업(모자가정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은 모두 1계좌로 수급
- 예시 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개인단위 급여로 각각 다른 통장으로 지급가능. 양육수당 통장A은행 통장, 아동수당C은행 통장 지급 가능

참고 복지급여 수급자

| 급 여 명 | 수 급 자(급여계좌 명의인) |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 긴급복지지원금 | -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구성원 |
| 장애인연금 |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중복3급) |
| 장애수당 |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장애아동수당 |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부모 등 보호자 |
| 기초연금 | - 65세 이상 노인 |
|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아동) | -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입양아동의 부모 |
|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 입양장애아동의 부모 |
|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 한부모 |

※ 제3자(기관)가 수급자가 되는 급여 : 장제급여, 교육급여, 의료비지원 등

참고 압류방지 전용 통장**1.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요**

- 도입배경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용통장 도입 (본인도 입금불가)
 -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압류방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35조(압류금지)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지급권의 보호)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방지 등)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방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담보 및 압류금지)
 - 아동수당 : 아동수당법 제18조(아동수당 지급권의 보호)

《 압류방지 전용통장 주요내용 》

- 가입대상 :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수급자중 희망자
- 상 품 명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입금제한 :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 *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통장표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2.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 (기존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 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 은 행복이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상담·신청/ 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구좌 등록관리)
 -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시 각별히 주의요망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
 - * 12(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13(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15(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 **입금제한 및 압류거부**
 - 참여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동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방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통장으로 '압류명령서'를 제시,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함

3.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 은행 이체이후 입금 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 오류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임에도 압류여부가 "NO" 되어 있거나, 일반계좌임에도 압류 여부가 "YES"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 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행복이음 "지방재정 연계 처리현황" 메뉴, 오류현황 화면 에서 조회(오류 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변경 후 재지급) 오류 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 처리하여 재지급
 -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4.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수급자가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시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 해당급여의 수급금만 입금이 허용되므로 '카드 결제 후 취소시 카드사의 카드 환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 납부금'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 본인도 해당 복지급여 이외의 다른 금품을 입금을 할 수 없으므로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토록 안내
- 수급자가 채무나 신용불량 등으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신청한 경우, 채무와 신용문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복이음의 서비스의뢰 기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연계 등록
 - * 행복이음 서비스 의뢰 메뉴 : 행복이음/상담신청/서비스의뢰관리/서비스의뢰 신청
 - * 서민금융진흥원(고금리 대출 전환, 맞춤형 대출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감면 지원)

III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1 바우처 지급절차

가. 개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없음

나. 절차별 처리내용

1 예탁금 납부

- 시·군·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즉시 예탁
 -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하고, 국비·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라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필요

2 대상자 결정·통지

- 결정자료 전송기한 : 매월 27일
 -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수시 전송(전송기한 제한 없음)
-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
 - 자료 전송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송일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 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송일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신규 대상자에 한하며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 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단 장애인활동지원금 전송일자 제한이 없음에 유의)
-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및 등급변경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

3 카드발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 3사
 -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 | | | |
|---|--|---------|--|--|
| 구 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
| | | |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 발급기준 |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 결제계좌 | 모든 은행계좌 | 해당은행 계좌 | 필요 없음 | |
|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 | 사회보장정보원 |
| 발급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 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 | | | |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 | | |
|-------------------|--|----------------------------------|----------------------------------|
|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 접수처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 문의 | 1899-4651 www.bccard.com | 1899-4282 www.lottecard.co.kr | 1566-3336 www.samsungcard.com |

●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 업무절차 | 처리내용 | 업무주체 |
|-------------|--|--------------------|
| 신청서 작성·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신청인 → 읍·면·동) ● (만 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제출 | 신청인 |
| 신청서 입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이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 읍·면·동 |
|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이음'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 해당 카드사)) | 시·군·구 |
| 카드 제작·배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 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 |
| 바우처 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대상자 |

-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 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 (만14세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2-1호) 징구
 - (만14-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 (만19세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3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 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 ① 만14~19세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 ② 만19세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주민센터로 배송
 - * 주민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 단축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 (신규 신청 시와 동일)

4 본인부담금 납부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사업별 납부방식 및 기간

- 개인별 지정계좌에 납부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 1차- 전월 11일~전월 말일, 2차- 당월 1~10일, 3차 당월 11~25일
 - ※ 납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일까지 입금
- 제공기관 직접 납부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 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5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은 시·군·구의 예약금과 본인부담금이 바우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 서비스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야 함

6 서비스 결제

- 서비스 제공 후 제공인력(또는 제공기관)은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휴대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7 비용지급 및 정산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비용을 결제단말기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 청구
- 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5일, 15일, 25일)서비스 비용을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입금내역은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자별 집행내역을 시·군·구에 정산
 - 시·군·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게재

2 바우처 생성 및 지급 기준

가. 바우처 생성일

- 정기생성 : 매월 말일(월 1회 생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전월 11일~말일 중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본인부담금이 '0원'인 대상자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별 바우처 생성주기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지원기간 시작 전 달 말일 22시에 1회 생성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전월 말일 18:00까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한 수급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대상자 전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및 바우처 생성 제한 대상자 제외

● **수시생성** : 당월 1~15일(본인부담금 납부 익일 후 생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당월 1~15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당월 1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 생성

● **추가생성** : 당월 16~25일(매일 생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당월 11~25일 중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제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 당월 1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 생성

나. 서비스 개시일

● 서비스 신청 후 익월 1일 서비스 개시

-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신청 후 본인부담금 납부 익일 서비스 개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다. 바우처 유효기간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말일 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괄소멸 처리 됨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제외)
 - ※ 장애인활동지원은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중지처리 가능
- 서비스 유형별 생성주기에 따라 지원되는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유형별 지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처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1회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종료해야 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서비스 지원기간(3개월)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처리

라. 거주지 변경 시 생성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바우처 지원은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처리 되며 전출 익월 부터는 전입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
 - 바우처 지원은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해야 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 바우처 결정시점의 관할 주소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마. 서비스 중지자 지급 기준

- 서비스 중지(사유)가 결정(발생)된 달의 바우처 비용지급은 사유별 결제 유효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지 및 자격상실 정보 전송 시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전송
 - 사망, 말소 또는 본인 서비스 포기로 인한 서비스 중지의 경우 결제 유효기간이 즉시 중지되어 서비스 후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음
- 사망 또는 포기의 경우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정산절차를 거쳐 익월에 지급

③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 관리

가. 변경사유

- 서비스대상자의 '전·출입'에 의한 거주지 변동
- 서비스대상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의한 등급 재판정에 따른 '등급 변경'
- 서비스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 부정사용, 2개월 연속 미사용 등의 중지 사유에 따른 자격 상실

나. 변경내용

- 서비스대상자의 서비스 등급(판정등급, 서비스 인정시간, 바우처 서비스 단가, 본인 부담금 등)변경, 거주지 변경 및 자격변경에 따른 서비스 상태 변경 등

다. 변경방법

- 사업별 전·출입 시 처리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전송
 -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계속 여부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결정하되, 부적합 대상일 경우 “판정결과 변경”으로 중지 처리하여 자격을 해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해당 서비스가 자동 중지처리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출 및 중지처리 없이 기존 서비스 지속
- 등급변경 시 처리
 - 본인의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에 의한 등급 변경

- 신청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경우 행복이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가능
 -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자격 상실

-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서비스 포기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자격 상실
- 바우처 부정사용, 2개월 이상 연속 미사용 또는 2개월 연속 본인부담금 미납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자격 상실 가능(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 제외)

라. 통지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통지 가능

4 서비스 중지

가. 중지사유

- 서비스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지원기간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나. 중지시기

- 즉시 중지가 원칙
 -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담당자는 상실 처리 후 행복이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유로 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상실 처리 후 즉시 중지됨

참고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 중지사유 | 요 건 |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
|---------|---------------------------------|--|
| 본인포기 |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 사망·말소 등 |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 자격종료 |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 판정결과변경 |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 바우처 미사용 |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다. 중지절차

-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전자결재 후 행복이음을 통하여 중지처리
-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

[변경·중지 절차]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사후관리

5

I. 개요 • 197

II. 변동사항 관리 • 198

III. 기타 관리 • 206

IV. 보장비용 환수 • 216

V. 반환명령 • 221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05 | 사후관리



I 개요

1 목적

- 수급자 가구의 변동사항을 확인·반영하고, 확인조사 등을 수행하여 수급자격, 급여 종류, 급여액 등이 적정한지 관리하기 위함

2 사후관리 절차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급여 적정성 조사·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가구원,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변동 확인 ● 급여 누락·중복, 의사무능력(미약)자, 사망의심자 정보 등 관리 |
| 보장결정 변경 및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변경·정지·중지·상실여부, 급여수준 등 변경 및 등록 |
| 보장결정 변경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정지·중지·상실 일자, 내용, 사유, 이의신청 절차 등 통지 |
| 급여 변경·중지·정지·상실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생성·중단된 급여의 확인 및 확정 ● 확정된 급여의 이체 또는 지급 중지 등 |
| 급여 환수 및 반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이 확인되거나,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수 및 반환 |

Chapter

02

공
통
요
구
절
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5장

II 변동사항 관리

1 개요

- 수급자의 거주지, 소득·재산, 가구원 정보 등 급여의 수급자격과 종류, 금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
-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보관 관리

2 변동사항 확인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 급여액,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부양여부 등

3 변동사항 확인방법

가. 일반적인 확인

- 수급자의 신고
-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다.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수급자의 거주 여부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 특이사항 등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가. 수급자 변동사항

| 변동사항 확인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처리할 일 |
|------------|-----------------|----------------|--|
| 거주지 변동 | 세대 전부 | 알림 | |
| | 가구원 일부 | 알림 | ①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
| |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 알림 | 해당자 보호종지 등 |
| 가구원 변동 | 출생 | × | ①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
| | 사망 | 알림 | ①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
| | 실종 | 알림 |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
| | 말소 | 알림 |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
| | 결혼 | ×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
| | 이혼 | × |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 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
| | 출입국 내역 | 알림 | * 사업별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

| 변동사항 확인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처리할 일 |
|-------------|-------------------|--|--|
| | 군 입대 | 알림 |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
| | 군 제대 | 알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
| | 교정시설 입소 | 알림 |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
| | 교정시설 출소 | 알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
| | 가출 | 알림 | 해당자 보호종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
| | 사망의심자 | 알림 |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
| 소득·재산 변동 | 소득·재산 공적자료 | 알림 | 변동자료 확인 반영 |
| | 공적자료 외 신고소득·재산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 기타 변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알림 |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
|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 | 근로능력 | - 만65세 이상자 알림 - 만18세 이상자 알림 -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 장애인 등록 알림 | -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
| | 가구 특이사항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나.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 변동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처리할 일 |
|-----------|-----------------|----------------|--|
| 거주지 변동 | 세대 전부 | 알림 |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
| | 가구원 일부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 알림 | 해당자 보호종지 등 |
| 가구원 변동 | 출생 | ×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사망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변동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처리할 일 |
|-------------|------------------|----------------|--|
| |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 능력 재판정 |
| | 말소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결혼 | × |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이혼 | ×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군입대, 군제대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교정시설 입출소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소득·재산 변동 | 소득·재산 공적자료 | 알림 |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
| 기타 변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인적사항 변경처리 |
|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 | 가구 특이사항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 (알림기능)
 - * 단독가구 사망·말소 시 자동으로 자격을 중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줌(알림기능)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 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 변동 등 처리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 변동사항에 대해 당월 미처리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되며, 변동처리 후 해당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 공적연계자료의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은 중앙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 가구구성 변동사항(가구원 인적, 소득·재산 등) 처리 현황
 -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가구원 인적, 소득·재산 등) 처리 현황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분에 대한 반영 시점

라. 입수자료별 처리 방법

- 교정시설 입·출소자, 군 입·제대자
 - 정보시스템의 변동알림을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
 - 교정시설 입소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소에 입소중인 자로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정지)
 -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형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정시설 입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 군입대자는 현역병 등으로 입영한자(공익근무원, 상근예비역등 제외)로서 입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 교정시설 퇴소자, 군 제대자의 처리
 - 교정시설 퇴소자 및 군 제대자의 급여신청은 급여중지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가능
 - * 단, 장애인연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멸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을 적용
- 장기 출국자 처리 방법
 - 비수급 조사가구원*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 등을 변동알림으로 통보하고 소득·재산도 조사
 - * 기초연금의 만65세 미도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보육·양육수당, 부모급여 수급자의 부모
 - 출입국 등에 따른 중지 대상자는 개인을 보장중지 처리하고, 보장가구원에서는 제외 처리하되 조사가구원에는 포함
 - * 기초연금의 장기출국자(해외체류 60일 이상자의 경우)는 지급정지 대상으로 처리하고, 입국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전제로 한 급여*는 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 하여 해외 체류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보장중지되면 해당 급여도 당연 중지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인 경우 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지급 중지

- 출·입국 기록은 있으나 1회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정보 시스템에 중점관리자로 등록·관리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비용173의 출처 등을 확인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경우 1회 해외체류기간의 기준을 60일로 함

- 보육료·양육수당*·부모급여**은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지급을 정지하며 재입국 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 출국한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급, 익월부터 지급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부모급여 : 출국한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급, 익월부터 지급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

참고 해외 장기 체류 의심자 관련 처리 절차

●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 정보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제공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므로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마. 거주지 변경 처리

● 보장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변경 시 처리방법

| 구 분 | 사업별 | 구 거주지에서 할일 | 신 거주지에서 할일 |
|------------------|-----------------------------|--|---|
|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 전체 * 긴급복지 제외 |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급여 실시 |
|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 국민기초 생활보장 | ①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②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 동일보장가구 해당 : 전출 미처리 - 동일보장가구 미해당 : 전출 처리 ③ 전출처리 한 경우 보장가구원수 변경 ④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 ① 시스템에서 전입 사항 알림 ② 동일 주소지내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동일 보장가구원 유무 확인 ③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
| | 긴급복지 지원 | ①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②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③ 동일보장가구에 미해당하는 경우에 전출 미처리 ④ 지원대상 가구원수 변경·급여변경 등 | ① 시스템에서 전입사항 알림 ②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위기상황 계속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후 지원 결정(가구원 변동 시 사후조사 추가 실시) |
| | 영유아 보육 |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전출통보 |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아동)의 전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
|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비우체) | ① 시스템에서 서비스 수급자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자격 중지 ② 서비스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 ① 서비스 수급자의 전입시 시스템에서 알림 ② 대상자가 받던 서비스가 신거주지 에서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여부 확인 |
| | 한부모 가족지원 | ① 시스템에서 부/모의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

※ 원본서류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송

● 복지사업별 보장기관의 기준

| 구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 긴급복지 지원 | 영유아 보육 | 가정양육수당 | 사회복지 서비스이용권 대상(바우처) | 한부모가족 지원 |
|----------|--|-------------------------------|---------------------------------------|----------------------|-------------------------------|-------------------------------|---|
| 보장 기관 | 동일보장 가구의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이용시설 소재지 시·군·구 |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부나 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예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원 1인이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보장가구로 보호받는 등록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단위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급여는 개인단위 급여이므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예시 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노인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가구단위의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기초연금은 개인단위의 급여이므로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III 기타 관리

1 개요

-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누락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관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2 누락·추가서비스 안내

- 수급자 중 개별 급여·서비스의 선정기준에 적합 하지만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누락 급여·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 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 안내
-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 : 교육급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 의료급여 자격 취득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이상이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

참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15.9.1 개통)

누락서비스 관리 ☞ 장애인누락서비스 대상자

장애인연금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시 중지된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 : 장애(아동)수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시 중지된 대상자

장애인연금(선정기준완화) 추가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기준 3급 중복장애인)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가 없는 대상

기초생활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누락서비스 관리 ☞ 장애인누락서비스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 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이나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 중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복지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누락서비스 관리 ☞ 연령도래자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추출기준):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됨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확인(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추출기준):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학교 재학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중인 만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수당 전환대상(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추출기준):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 도래로 장애수당 전환대상이 됨

장애수당 전환대상 확인(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추출기준):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 도래로 장애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으로 예상되는 자
* 학교 재학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중인 만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기초연금 신청대상(장애인연금)
(추출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

※ 연령도래자 제공시점 : 연령도래 1개월 전 및 2개월 전

- 신청 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직권으로 추가 신청(보장결정 시에도 누락 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 연령 변동에 따라 추가서비스 신청 가능자를 조회하여 안내
 - 예시 • 만 65세 도래자 : 기초연금 신청 안내, 의료급여 종별 변경(2종 → 1종), 근로능력 변경(유 → 무)
 - 기초생활수급자 중 : 중학교 진학 예정자의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변경 안내
- 전년도 급여신청자 중 신년도 사업기준 변경으로 수급권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조회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기능
 -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정 대상자에 대해 실시
 - 시·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3 중복 급여·서비스 방지

- 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별 급여·서비스 내역을 분석하여 동일 대상자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는 급여·서비스를 차단
 - 서비스 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능한 사업들을 알림기능으로 제공하여 중복지원 사전 차단
 -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서비스 내역을 분석하여 중복지원되는 급여·서비스를 조회하여 알림으로써 사후차단

● 기타 지원제외 대상

| 사업명 | 급여 및 서비스명 | 지원 제외대상 |
|--------------|----------------------|--|
| 기초생활 급여 | 생계급여 | - 의료·자활급여특례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강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 | 주거급여 | - 의료·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사용대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 노숙자 쉼터, 한국강생보호공단시설'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
| 자활지원 | 자활소득공제 | - 차상위계층 - 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
|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 노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 - 기초생활보장급여 |
| 저소득장애인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 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이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 |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내용(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

| 사업명 | 급여 및 서비스명 | 지원 제외대상 |
|------------------------------|---|--|
|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미소금융사업 중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 '자영업자 관련 대출 자금' 용자 대상 |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용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 어린이집미이용 아동지원 | 양육수당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변동신청 아동) •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료 신청을 할 경우 •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변경 신청일부터) • 변경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불가(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음 |
| | 복지자금대여 | -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 용자 - 주택자금 용도로 대여는 불가함 |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 발달재활서비스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중증장애아돌봄 서비스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대상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 왼쪽 사업의 급여·서비스는 오른쪽 “지원제외대상”에게는 지원할 수 없음

4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부적정 수급자 검색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별 선정기준(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선정 요건)과 개인·가구별 조건(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을 비교하여 기준 초과자 검색
 -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중지대상, 연령기준 초과, 장애 등 자격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중지 되었는데 경증장애수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으로 인해서 부가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 중지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 조회결과 미적용 사례 등
- 부적정수급 의심자 등록
 -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등록하여 관리
 - ☞ 유형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자, 차량명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기존부정수급이력자 등
- 오프라인(off-line) 조사정보 제공
 - 정보시스템에 미 연계 된 소득·재산 등 관련 자료를 필요시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하여 기준초과 또는 급여조정이 필요한 자의 명단 제공
 - ☞ 예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 복권당첨금, 전국 회장장 등의 사망자 정보 등
- 중점관리대상자 처리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처리 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
 - ☞ 복지부는 의뢰 건을 검토하여 자체처리 가능으로 판단시 해당 지자체로 반송하고 중앙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후 결과를 송부

5 급여중지자 관리

- 급여중지(탈락) 후 5년 이내에 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 5년 이내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급여 중지자(탈락자)의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재신청 시 신청(상담) 화면에서 서비스 수혜이력 및 중지사유 확인 가능

6 ⑥ 의사무능력(미약)자 관리

- 의사무능력 대상자 등록
 - 기존 오프라인으로 관리되는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및 이력관리
 - 읍·면·동 담당자는 「인적정보 조회」를 통한 수급자를 조회하여 의사무능력 대상자 선택, 대상자·급여관리자·업무담당자 등 관련 정보 입력
(의사무능력 대상자 유형)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
 - 의사무능력자 조회
 - 등록된 의사무능력 대상자 조회 및 등록된 정보 수정
 - 관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조회
 - 의사무능력자 관리 및 점검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검 유무를 화면상 해당년도 반기별 조회
 - 의사무능력자 점검결과 등록
 - 읍·면·동 담당자는 반기별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상황 확인 및 점검 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결과표」에 입력 및 결과 수정 가능
 - ※ 점검결과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 [국기초 서식 43호] 참고
 - 등록된 의사무능력자의 ‘대상제외’ 기능 부여, 제외사유 입력
 - ※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표」에 반기이내 등록
- 예시**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관리 - 6월 31일까지 점검결과 등록 완료

7) 사망의심자 정보 관리

● 목적

- 화장장, 병원 등 사망 관련 정보를 '사망의심자 HUB'로 통합 관리하여,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에 따른 복지급여 과·오지급을 방지하고 사망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 사망의심자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은 정보(화장·매장정보, 병·의원, 장기요양 시설 정보)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3조 제2항([별표 1] 제26~27호)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 추진 경과

- ('10. 6.) 최초 사망정보 확인대상자 및 사망 자료 입수(수기관리)
- ('13. 3.)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기반 구축 완료
- ('13.11.) 범부처 1차 확대구축 ... 활용기관 총 10개
- ('14. 8.) 행복e음 '사망의심자' 급여 미생성 기능 적용
- ('14.12.) 범부처 2차 확대구축 ... 활용기관 총 17개
- ('15. 2.) 행복e음 사망의심자 중 사망확인(17개 기관)된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서비스 자동중지 기능 적용
- ('15. 8.) 외국인 사망의심자 정보 입수정보 확대
- ('15. 9.) 범부처 3차 확대구축 ... 활용기관 총 21개
- ('16. 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매장 등 신규정보* 입수정보 확대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6.1.29)으로 묘지, 봉안, 자연장, 장례식장 정보 추가
- ('17.12.) 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이용자 정보 입수정보 확대
 - * 재가급여 이용자 정보 : 장기요양기관 미이용상담 사유가 "사망"인 건 중 사망확인으로 계약해지 된 대상자
- ('20.10.)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 입수 정보 확대

● 처리 방법

- (입수) 사망의심자 정보를 보유한 행정망 내 5개 입수기관과 정보 연계, 행복이음 화면*에 사망의심자 정보 조회 기능제공

* 행복이음 > 변동·사후 > 사망의심자HUB > 사망의심자사망확인조회

| 번호 | 입수 기관명 | 개통일자 | 입수자료 |
|----|----------------------|-----------|----------------------|
| 1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13.03.01 | (내국인 정보) e하늘 사망(화장)자 |
| | | '15.08.10 | (외국인 정보) 외국인 사망의심자 |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 '13.03.01 | 장기요양시설 사망자 |
| | | '17.12.20 |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사망자 |
| 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3.03.01 | 병원 사망자 |
| 4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시스템) | '20.10.06 |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 |
| 5 | 행복이음 지자체 | '14.01.01 | 장제급여 신청자 |

- (변동알림 및 급여미생성) 사망의심자 정보 입수된 수급자의 경우 변동알림으로 보장중지 등 처리를 위해 변동알림* 제공하며, 동시에 급여는 자동으로 다음 달부터 미생성 처리

* 행복이음 > 변동·사후 > 사망의심자HUB > 사망확인및등록관리

- (지자체 검토) 사망의심자 정보 중 “사망의심” 정보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수급자의 사망여부를 직관*하여 수정 처리, “사망확정” 정보는 사망 처리에 준하여 조치

* (직관) 사망의심자 정보는 사망신고 지연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공적자료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하며, 직접 업무담당자가 당사자의 사망을 직접 관찰(직관, 直觀)한 결과를 행복이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망의심) 입수기관으로부터 사망의심자 정보로 취급 중에 있으나, 타 처리기관에서 사망확인이 2차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지자체에서 실제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사망확정) 입수기관 및 타 처리기관에서 사망 확인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이 사실상 불필요함(다만, 최근 사망확정자임에도 생존자가 사후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검토결과 입력) 확인 결과 ‘사망’ 및 ‘생존’ 등 처리하며, 생존 등록 시 미지급 급여 소급 지급 처리(사망자가 아닌 수급자의 급여가 미생성시 급여미생성 사유가 ‘사망 확인대상자’일 경우 사망확인등록에서 확인결과를 ‘생존’으로 입력)

- * 확인결과가 '사망'으로 등록된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자격 및 서비스가 자동 중지됨에 유의 ('15.2월~)
- * 급여가 미생성된 사망의심자가 '생존'으로 확인된 경우, 사망의심자 검토(확인) 결과를 '생존'으로 등록하여야 급여가 정상 생성됨
- (정보 최신화 및 공유) 처리 결과('사망', '생존')에 대해 타 활용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여 부당한 민원인 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방지
- 유의사항
 - 사망의심자에 대해 현장 방문 또는 유선 통화를 통해 사망 사실 확인(건강을 묻는 등 우회적으로 질문)
 - 등록된 사망의심자 확인결과는 타 기관에도 공유되며, 타 기관에서 등록한 확인 결과에 대해서도 조회 및 참고 가능
 - 사망 확인자에 대해 자격·서비스 중지 등 사업별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예 :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권 상실 조치)
 -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확인 불가할 시 보장기관 판단 하에 자격 일시정지 등 조치

IV 보장비용 환수

1 보장비용의 정의

- (광의) 각 법령에 의해 지급된 급여 실시비용 및 인건비와 사무비 등 보장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협의·일반적 개념) 생계·주거급여 등 급여 실시비용

2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 | 긴급복지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 기초연금법 제19조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 장애인복지법 제51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
| 용어 | 비용징수 | 환수 | 환수 | 환수 | 비용환수 | 비용환수 | 비용징수 |
| 환수 대상자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은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 |

| 구 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기초 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 복지 | 긴급복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
| 환수 대상 급여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 기초연금 | - 장애인연금 | - 경증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포함) - 장애인자녀 교육비 |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해산비·장제비 - 연료비 등 | - 가정양육수당 | • 한부모 가족지원 - 교육비/ 양육비 -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 양육비/자립 지원수당 - 검정고시비/ 고교학습비 - 자산형성계좌 |

③ 보장비용 환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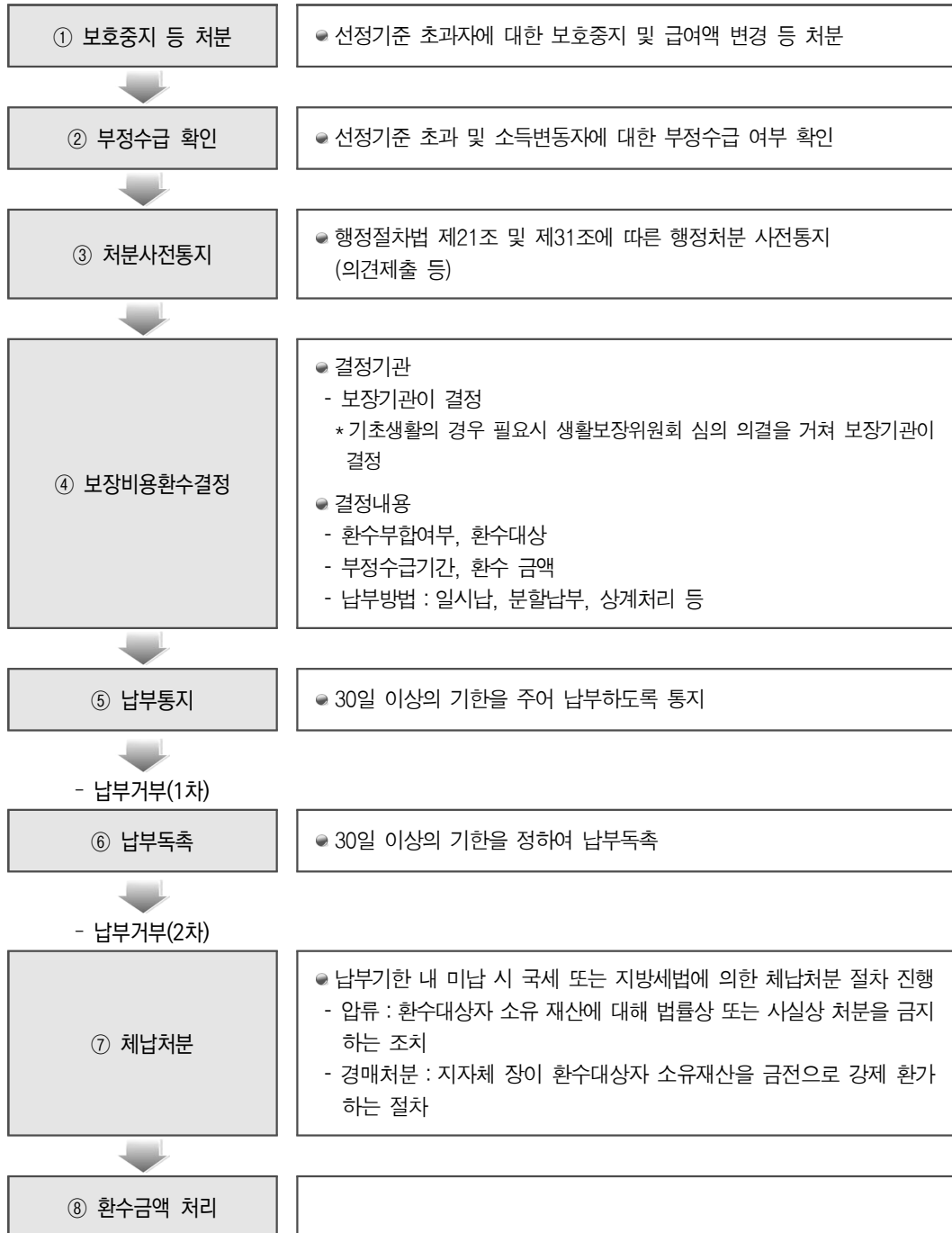
가. 필요성

- 사업별로 상이한 환수절차를 표준화하여 보장비용환수 업무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

나. 대상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다. 환수절차



라. 환수 절차별 처리방법

1 부정수급 확인

- 선정기준 또는 급여기준 초과자에 대해 보장중지 또는 급여액 변경 등의 처분을 함
- 선정기준 초과 또는 급여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
-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 시·군·구 담당자는 부정수급자에게 보장중지 처분 통지서 발송

2 보장비용 환수 결정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내용 검토결과 보장중지처분이 타당하고 부정 수급자인 경우 비용환수대상자로 등록
- 부정수급에 대한 납부대상자 정보(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등록
- 환수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환수대상금액을 산정하여 등록
- 환수대상자별 환수방법(일시납·분납·상계), 환수·반환 여부, 환수방법(일시납·분납·상계)에 따른 환수계획을 등록
 - 환수·반환 여부를 판단하여 반환인 경우 상계여부를 결정하고, 상계처리인 경우 상계처리 계획을 등록(상계년도, 상계주기, 개월수, 환수금액 등)
- 필요시 산출내역을 심의기구에 상정하여 환수제외금액 및 제외대상 여부를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등록
 - 심의기구 :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긴급복지)

3 보장비용 환수절차

-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함(납부기한 30일)
- 납부대상자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독촉
 - 독촉 납부통지서 발송(2차 납부기한 30일)

- 체납처분
 - 독촉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리 절차(압류, 경매처분 등)를 진행함
 - 체납처분에 대한 법적조치내역을 등록함
- 결손처리
 - 결손처분은 보장기관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을 수행하고, 결손처분내역을 등록함
- 환수처리내역등록
 - 환수처리된 것을 확인후 환수내역을 등록함
- 환수금액의 처리

V 반환명령

1 법적 근거

| 사 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 아동복지 | 한부모가족지원 |
|--------|----------------|---------------------|------------|---------------|
| 관련 법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 <u>긴급복지지원법</u> 제15조 | 아동복지법 제3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 |
| 용어 | 반환명령 | 반환 | 반환명령 | 반환명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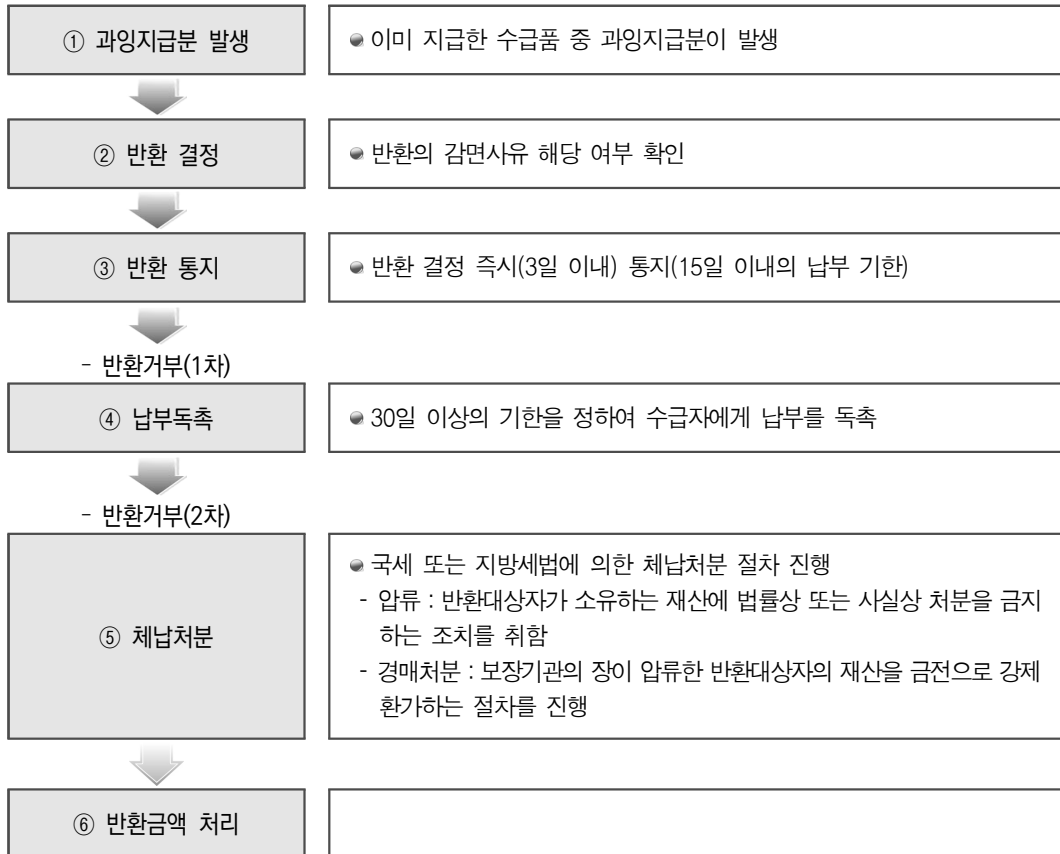
2 반환요건 및 대상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상계하여 반환 완료
 -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면인 경우에 해당

3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반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금액의 감면 및 면제를 결정
 - 위의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경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반환의 감면 결정 후 개최되는 당해년도 첫 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함

4 반환 절차 및 처리방법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서 식

6

I.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 226

II. 사업별 개별서식 • 287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서 식 목 록

I.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 | |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226 |
|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신규·변경) | 230 |
|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31 |
|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233 |
| [별지 제1호의5서식]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236 |
| [별지 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237 |
| [별지 제3호서식]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238 |
| [별지 제4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239 |
| [별지 제5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 241 |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242 |
| [별지 제7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 259 |
| [별지 제8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262 |
| [별지 제9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 275 |
| [별지 제10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 277 |
| [별지 제11호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차) | 278 |
|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 279 |
|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280 |
| [별지 제14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 282 |
|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283 |
| [별지 제16호서식] 현장 조사서 | 285 |
| [별지 제17호서식]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 286 |

II. 사업별 개별서식

| | |
|--|-----|
| [사업별 서식 제1호]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287 |
| [사업별 서식 제2호]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288 |
| [사업별 서식 제3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293 |
| [사업별 서식 제3-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294 |
| [사업별 서식 제4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295 |
| [사업별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296 |
|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출실태조사표 | 297 |
| [사업별 서식 제7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299 |
| [사업별 서식 제8호] 고용·임금확인서 | 300 |
| [사업별 서식 제9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301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 처리기간 | | 별도안내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 | 주소 | (실거주주소 ¹⁾ : _____) | | | | | 휴대전화 ²⁾ | |
| | | | | | | | 전자우편 | |
| 가족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배우자 관계 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³⁾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⁴⁾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⁵⁾ : _____, _____ | | | | | | | | |
| 부양의무자 ⁶⁾ | 수급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가구원수 | 전화번호 | |
| | 의 | | | | | | | |
| | 의 | | | | | | | |
| | 의 | | | | | | | |
| | 의 | | | | | | | |
| 급여계좌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비고(사유) ⁷⁾ | | |
| | | | | | | | | |
| 통지방법 | |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 | | | | |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 4) 해당자에 한함
-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기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4쪽 중 2쪽)

| 보장구분 | | 사회보장급여 내용 |
|--------|---|--|
| 기초생활보장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⁹⁾ [] 기타 ⁹⁾ [] 교육급여 | |
| 영유아 |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_____)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 |
| 이동수당 |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
| 아동·청소년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 |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
| 노인 |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
| 장애인 |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 한부모 가족 |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
| 기타 |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 ¹⁰⁾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 | | |
|--------|---|-------------------------|--------------|----------------|
| 감면 서비스 |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 | |
| |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 고객번호 : _____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_____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_____) 사업자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사업자 :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서)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휴대전화 번호 | 이동통신사 |
|----------|----|-----------------------|---------|-------------------------------|
| 가족 사항 | | | |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 | | | |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 | | | |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 |
|---|--|
| <p>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p> <p>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p> <p>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p> <p>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p>확인 (√ 체크)</p> <p>[]</p> |
|---|--|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5장

(4쪽 중 3쪽)

| | |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
|--|-----|

| 선택적 동의 | 동 의 (√ 체크) |
|---|---------------|
|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모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
| 7.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유의 사항 | 확 인 (√ 체크) |
|--|---------------|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 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현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
|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¹⁾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임양대상), 보정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 안 내 사 항 | | |
|---|--|---|
| 처 리 기 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 |
| 관 계 법 률 | 보장구분 | 해당 법률 |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
| |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
| | 아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
| | 노인 | 기초연금법 |
| |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기타 |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
| 신청시 구비서류 | | 추가 제출서류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²⁾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희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 (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제출하는 곳 |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 |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1.1>

(3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30일)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
| 가족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등거여부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 | | | | |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사유) | |

| 제출처 | | 사회보장급여 내용 | | |
|--|---|---|--|---|
| 아파트 주거권 및 아파트 주거권 및 아파트 주거권 | []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 지원대상자 |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 0~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 차액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통장(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 |
| | | 지원대상자 | 신청조건(1개 선택) | 서비스시간 |
| | | [] 가시간병방문지원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월 24시간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7시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 |
| | | 발달장애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
|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지원대상자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재활 [] 청능재활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행동재활 [] 놀이심리재활 [] 재활심리 [] 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 [] 심리운동 기타() |
| |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 지원대상자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재활 [] 기타 () |
|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
| | 발달장애 부모 상담 지원 | 지원대상자 |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
| | 발달장애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기본형/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방과후활동서비스 | |
| |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서비스명 | |
| | | 지원대상자 | 서비스명 | |
| |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 | |
| | | 지원대상자 |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요육자 신청가능 | |

(3쪽 중 2쪽)

| |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자 | | | |
| |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
| 활동지원급여 |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
| |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학교생활 | [] 직업생활 |
| 특별지원급여 | 신청유형 | [] 장애상태의 변화 | [] 학교생활 | [] 직업생활 |
| | 신청유형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거주지 이전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자 | [] 출산 [] 자립준비 | [] 보호자일시부재(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 지급방식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일 경우) | [] 기타 |
|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보통저축(카드 보유자) | [] BC(은행) | [] 삼성 | [] 롯데 |
| | * 유의사항 | [] 신한 | [] KB국민 | [] 신한 |
| 보 건 소 | 지원대상자 | 출산(예정)일 | 년 | 월 일 |
| | 지원 유형 | [] 단태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인력1명 [] 인력2명) [] 산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다태아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요건 |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 |
| |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 |
|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기타 | | | |
| 보건 소· 주민 센터 | 지원대상자 | | | |
| |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
| 유 의 사 항 |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차제 사업)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 | | 확인 (✓ 체크) |
| <p>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호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공데이터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 | | [] |
| 유 의 사 항 | | | | 확인 (✓ 체크) |
| <p>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 | | | []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2.1.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 | | | | | | | | |
|----------------|-----------|---|--|-------------------------|--|--------------|--|----------------|--|
| 자 격 구 분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휴대전화 | | | |
| 감면 서비스 | | 전체 신청 |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 | | | | |
| | | 선택 신청 | | [] 전기요금 | | [] TV수신료 면제 | | [] 휴대전화요금 | |
| | | | | [] 지역난방요금 | | [] 도시가스요금 |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휴대전화 번호 | 이동통신사 |
|----------|-------------|-----|-----------------------|---------|----------------------------|
| 가족 사항 | | | |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 | | | |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 | | | |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 | | | |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감면 및 복지 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장애인복지시설 2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소 | | | 휴대전화 |
| 시설 입소 (이용) 대상자 | 01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희망입소 (이용)시설 |
| | | 주소 | | 희망입소 기간 |
| | 02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희망입소 (이용)시설 |
| | | 주소 | | 희망입소 기간 |
| 입 소 (이용) 시 설 안 내 | 노인복지시설 |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 |
| | 아동복지시설 |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 |
| | 장애인 복지시설 |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 | |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 | |
| | 여성복지시설 |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 |
| | 노숙인 복지시설 |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 |
| | 기 타 | | | |
| 입 소 (이용) 사 유 | | | | |
|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 |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 | | | | |
|--|----------------|------|---|---------------------|------------------------------------|
| 처리기간 | | 4일 | | | |
| 신청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대상자 와의관계 |
| | 주 소 (시설소재지) |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 예금주 | 계좌번호 |
| 해산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 소 (시설소재지) | | | | |
| | 해산(예정)일 | 년 | 월 | 일 |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 명 |
| 사망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 소 (시설소재지) | | | | |
| | 사 망 일 | 년 | 월 | 일 | 사망원인 |
|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 | | |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

유의사항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창업(구입)형태 ¹⁾ |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개인 <input type="checkbox"/> 자활공동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
| 사업명 | | | | | | | | | | |
| 사업 내용 |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기존사업투자 <input type="checkbox"/> 업종변경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구입 | 사업장 위치 | | <input type="checkbox"/> 있음 (m ²) | | | | | | |
| | | 임대내용 | | <input type="checkbox"/> 전세 | | | | | | 원 |
| | | | | <input type="checkbox"/> 월세 | | | | | | 원 |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원 |
| | | 차량내용 | | <input type="checkbox"/> 보증금 | | | | | | 원 |
| <input type="checkbox"/> 신차 | | | | 년식, | 원 | | | | | |
| <input type="checkbox"/> 중고차 | | | | 년식, | 원 | | | | | |
| 기술 보유 | 현재 종사직종 | 자영업 | | |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 | | | |
| | | 근로자 | | | | 근로자 | | | | |
| | | 기타 | | | | 기타 | | | | |
| | 경력 | 년 | | 경력 | 년 | | | | | |
|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종류 | | | | | | | |
| 사업 일 정 ²⁾ | 일정 |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 | | | | | | |
| | 1월 | | | | | | | | | |
| | 2월 | | | | | | | | | |
| | 3월 | | | | | | | | | |
| | 4월 | | | | | | | | | |
| | 5월 | | | | | | | | | |
| | 6월 이후 | | | | | | | | | |
| 사업자금 운용 | 총 사업 소요자금 | 원 | | 예상소요 경비내역 | 예 상 매출액 | - 월별 () | | | | |
| | 신청용자 금액 | 원 | | | | - 년매출액 () | | | | |
| | 부족자금 확 보 |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 | | | () | | | | |
| 기술·경영지도 계획 | <input type="checkbox"/> 지역자활센터장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지도 받고 싶은 내용 | | | | | | |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시행 2021.1.1 >

| | | | | | | |
|--|--|--|------|---|------|--|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 | | | 유효기간 | | |
| | | | |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 | | |
| 용 자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
| 용자기관명 | | | | 전화번호 | | |
| <p>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위 용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p> <p>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용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문의전화번호 : _____ 귀하</p> | | | | | | |
| 구비 서류 | <p>- 아래 ①, ② 중 택 1</p> <p>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p> <p>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p> <p>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p>※ 자금 대여 결정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p> | | | | | | |
| <p>※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용자금액, 용자일자, 용자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용자불가결정시 사유 등)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요망</p> | | | | | | |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는 공문시행으로 같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 | | |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휴대전화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 급여·서비스내용 | |
| 비고 | | | | | | |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급여개시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정지), 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 급여지급, [] 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 []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구분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고 72%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0~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대신하여 부모급여(보육료)를 수급합니다. 만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이 지급됩니다. 보육료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성 명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본 인 | | | | |
| 배우자 | | | | |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 보호자 | 성명 | | 관계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연락처 | |
| 지원기관 | 기관명 | | | | 대표자 | |
| | 주소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지원내용 | | | | | | |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기초연금 급여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본인 | | 원 | | |
| 배우자 | | 원 | | |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이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이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지급금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3. 이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출생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단,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법원 절차 진행, 미혼부의 자녀로 법원에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이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
4. 이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해외출생 아동은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 기간 산정)에는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수급아동 연령 초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발생·소멸,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복수국적),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 정지 : 행방불명·실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 지원대상 | | 사회서비스명 | 정부지원액 (월) | 본인부담금 (월) |
|-----------|------|----------|--------------|--------------|
|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 이용권 유효기간 | 지원내역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 활동지원등급 | 등급 | 종합점수 | 점 |
|--------------|----------------------------------|--|---|
| 결정 급여 | [] 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 긴급활동지원 | | |
| 월 한도액 | 월 원 |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긴급활동지원 월 원 | |
| 본인부담금 | 월 원 | | |
|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 | | |
| 급여개시일 | | | |
| 유효기간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회의건 | | | |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 | |
|---------|---|
| 이용 서비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 서비스이용시간 | [] 시간 |
| 급여개시일 | |
| 유효기간 | |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 희망e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행을 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출 항 목 | 금 액(원) |
|---------|--------|
| 합 계 | |
| 학 자 금 | |
| 전 기 료 | |
| 건강보험료 | |
| 정보·통신비 | |
| 기 타 | |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대신하여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수급합니다.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서비스유형 | 지원유형 | 보장기간/지원시간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기간 종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유형 | 급여개시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관계 | 차상위 계층 | 생년월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지급금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급여개시일 |
|-------|------|------|------|------|-------|
| | | | | | |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부모급여(현금) | |
| | | | | |
| | | | | |

2.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부모급여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 동안 부모급여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부모급여를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서비스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자격변경 시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은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부모급여(현금)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부모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현금) 자격이 중지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영아수당(현금) | |
| | | | 가정양육수당 | |
| | | | | |

2. 귀하가 사전에 신청하신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23개월에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일시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 또한, 결정 당시 아동의 만 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 자격은 자동 중지되며, 가정양육수당으로 별도 신청없이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서비스 변경이용 시 반드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귀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첫만남이용권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지급>

| 보호자 | | 지급대상자 | | | 이용권 유효기간 | 이용권 지급금액 |
|----------|----------------------------|----------|-----------------|------|-------------|----------|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신청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기재 | | | | | |
| | | | | | | |

<현금지급(디딤씨앗통장 계좌)>

| 지급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지급금액 | 입금일 | 비고 |
|----------|------|------|------|------|-----|---|
| | | | | | | 디딤씨앗통장 관리·운영은 아동분야사업안내(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

3. 첫만남이용권 발급 안내

-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등록된 카드사의 보호자 명의「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시설보호아동은 첫만남이용권을 현금(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되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화폐·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우리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등록된 1개 카드에만 바우처 이용권(포인트)을 지급, 생성합니다.(생성 후 이용가능)
- 첫만남이용권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유흥업소·사행업소 및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사용 이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타 바우처(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를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 타 바우처 이용권이 우선 차감되며,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 중복수혜 대상자 결제 유형별 예시

-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원 개인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부담
 - ※ 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관계 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이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바, 반드시 이러한 목적하에 이용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

[] 대상제외

| | | |
|---------|---|----------|
| 신청내용 | 보장구분 | 급여·서비스내용 |
| 대상제외 사유 |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격심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안 내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 | |
|--------|----|--|-----|
| [] 변경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 용 |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input type="checkbox"/> 조제분유 추가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정지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 용 |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중지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 용 |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input type="checkbox"/>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뢰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임원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상실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 용 |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96개월이 되는날) <input type="checkbox"/> 영아수당 수급연령 초과(생후 24개월이 되는날) <input type="checkbox"/> 국적상실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교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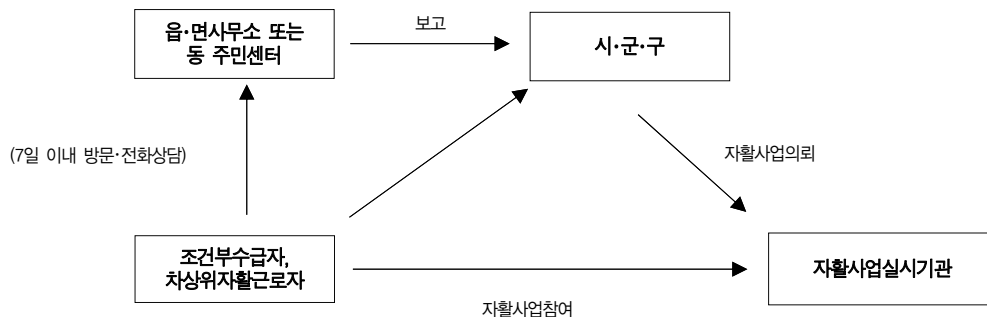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 | | | | | |
|--------|-------|--|-----|------|---------------------------|
| 조건부수급자 | 대상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구 분 |
| | | | | |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 | | | | |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 | 특이사항 | [] 가구원 일부보장() [] 조건부수급자() [] 기타() | | | |
| | 보장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유의 사항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 | 주 소 | |
| | 보장가구원수 | 명 |

| 산 정 내 역 |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 | 비고 |
|------------------|--------------|---|---|---|----|
| | 원 | 원 | 원 | 원 | |
| 생계급여 | 원 | 원 | ○ 소득인정액 (가+나+다) - 소득평가액 ¹⁾ (나) - 재산의 소득환산액 ²⁾ (다)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의료급여 | 원 | 원 | ○ 소득인정액 (가+나+다) - 소득평가액 (나)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주거급여 | 원 | 원 | ○ 소득인정액 (가+나+다) - 소득평가액 (나)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교육급여 | 원 | 원 | ○ 소득인정액 (가+나+다) - 소득평가액 (나)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지역별 차이 있음

[참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소득 금액>

(단위: 원)

| 근로·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이전소득 등 | 부양비* |
|---------|------|-----------|----------------|
| |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미약구간)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부과되는 소득

<재산 가액>

(단위: 원)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면]

서식4호-[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6.20>

| 접수번호 |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신청인 (보호대상자)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의 관계 | | 주소 | | 세대주의 관계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보장 신청 | |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서류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표기함 | | 세대주의 관계 | | 주소 | | 세대주의 관계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구분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 간접상태 (장애, 질병) | 근로능력 유무·사유 (학교명, 학년반)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 학년반) | 자격증 (경력) |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 직업관련 | | 취 업 상 태 | 보장상태 | | |
| | | | | | | | | | | 구분 | 직종 | | 직업 | 고용형태 | 직장명 |
| 기구원 | 이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부양 의무자 | 수급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가구원수 | 직업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재산의 소득·재산액 | 소득 인정액 | 월평균 지출금 | 부양능력 판정 사유 | | | |
| | 이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조사 결과 |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 | <input type="checkbox"/>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 | | | | | | | | | | 부양능력자 유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297mm×210mm(일반용지 60g/m(제활·용품))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감-1) <개정 2021.1.1>

| 연도/분기 |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 | | | | | | | | 세대주 | |
|---------------|------------------------------|-----------------------|-----------------------|----------------------|----------------|-------|------------------|----------------|--------|-------|--|-----------|--|
| 세대주 및 주소 변동사항 | | 세대주 변동 사항 | | | | | | | | | | 주 소 변동 사항 | |
| | |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변동일자 | 변동사유 | 주소 | 전화번호 | 전입일자 | | | | | |
| | | | | | | | | | | | | | |
| 가구원 사항 | | | | | | | | | | | | | |
| 구분 | 세대주와 관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가구원별 보장구분 | 가구원별 지원급여 (금융거래좌) | 개인별소득 | 소득합계 | | 자 산 | | | | | |
| | 본인 | | | | 전기구원 소득액 | 소득금제액 | 건축물 토지 | 금융 채 | 장기저축 | 재산총액 | | | |
| 보장 가구 | | | | | 소득금제액 | | 어업권/ 임대재산 | 부채 | 생활준비금 | 공제총액 | | | |
| | | | | | 전기구원 소득평가액 | | 자동차 | 금융기관 | 추가기초공제 | 기초공제액 | | | |
| | | | | |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 | 선박/항공기 | 금융기관외 기관대출금 | 금융기관 | 인정부채액 | | | |
| | | | | | | | 동신 | 임대보증금 | 소득총액 | 소득총액 | | | |
| | | | | | | | 회원관등 | 개인간부채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 | |
| 보장구분사항 | | | | | | | | | | | | | |
| 내 용 |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자활지원, 부양인) | |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노인복지 (기초연금) | | | | | |
| | 개시일 | | | | | | | | | | | | |
| 보장 기간 | 종지일 | | | | | | | | | | | | |
| | 정지일 | | | | | | | | | | | | |
| | 상실일 | | | | | | | | | | | | |
| 보장유형(등급) | | | | | | | | | | | | | |
| 보장가구원수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참-2)

| | | | | | |
|--------------|---|--|---|--------------|-------|
| 관리번호 | | | 세대주 |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작성일자 :) | | 작성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기초생활 보장사유 | <input type="checkbox"/> 연소(18세미만) <input type="checkbox"/> 연로(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병명:)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정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실직·미취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실패 <input type="checkbox"/> 저임금·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장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부양의무자 |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명, 부양능력 미약() 명, 부양능력 있음() 명 | | | | |
|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 <input type="checkbox"/>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 | | |
| 특례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특례유형() <input type="checkbox"/> 특례수급자(가구진제, 가구원 일부)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개시일()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종료일() | | | | |
| 근로능력판정 | | | 판정사유 | | |
| 긴 급 여 | <input type="checkbox"/>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급여일시() <input type="checkbox"/> 급여사유() | | | | |
| 생 계 급 여 |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수 () | | | | |
| 주 거 급 여 | <input type="checkbox"/> 월세임차료 <input type="checkbox"/> 유지수선비(현금여, 점검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전세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추가인정지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 | | | |
| 교 육 급 여 | 성 명 | 학 교 명 | 학 년 반 | 성 명 | 학 교 명 |
| | | | | | 학 년 반 |
| 해 신 급 여 | <input type="checkbox"/> 해신자 () <input type="checkbox"/> 해신일자 () | 장 제 급 여 |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자() | | |
| |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사유:) | 시청료감면고객번호 | | | |
| 각 종 감면제도 | 복 지 전 화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사유:) | | | |
| | 상허수도요금 | 신청증빙자료 불투 | 기 타 | | |

210mm×297mm(백상지)(80g/㎡)

(갑-4)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세대주 | | | | | | | | | | |
| 영유아보육·유아학비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보육료 ·유아학비 감면아동 | 성명 | 보육시설·유치원명 | 시설전화번호 | 이용기간 | 성명 | 보육시설·유치원명 | 시설전화번호 | 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아동·청소년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아동급식 | 성명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비고 | 성명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소년소녀 가정 | 사유 |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가출 <input type="checkbox"/> 부모방탈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부모복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가출 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장애 <input type="checkbox"/> 부모폐질 | | | | | | | | | |
| | 성명 | 요구 및 문제 | 보호 방향 | 시 설 입 소 | | | | | | | 입소일자 |
| | | | | 시설명 | 소재지 | | | | | | |
| 청소년 특별지원 | 성명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성명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을-1)

| 관리번호 | | 세대주 | | | | | | | | | |
|------------|------|--|--|-------------------------|--|-------------------------|------------------|-------------------------|--|-------------------------|--|
| 장애인 복지 대상자 | | (작성일자 :) | | | | | 작성일자 : (서명 또는 인) | | | | |
| 장애인 성명 | | 복지욕구 | | 복합장애정도 | | 심사원료여부 | | 최초장애등록일 | | 중복장애유무 | |
| | | [] 보장구지원([] 보조구지원([]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장애연금 [] 장애수급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장애아동수당 [] 의료비 [] 학비 [] 자급대여 [] 시설임소 [] 활동지원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 | | | | | | | |
| 장애사유 | 장애등급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장애유형 | |
| | | [] 선천성 () [] 후천성 () | | [] 선천성 () [] 후천성 () | | [] 선천성 () [] 후천성 () | | [] 선천성 () [] 후천성 () | | [] 선천성 () [] 후천성 () | |
| 장애사유 | 장애등급 | 보장구 | | 취업알선 | | 학 비 | | 장애수당 | | 장애인연금 | |
| | | 종 류 | | 직 종 | | 대 상자 | | 대 상자 | | 대 상자 | |
| | | 교부일자 | | 기 관 | | 학교명 | | 지급개시일자 | | 지급개시일자 | |
| | | 일 자 | | 학년/반 | | 의 료 비 | | 장애아동수당 | | 장애아동수당 | |
| | | 특수교육 | | 직업훈련 | | 의 료 비 | | 장애아동수당 | | 장애아동수당 | |
| 장애사유 | 장애등급 | 발생연령 | | 발생연령 | | 발생연령 | | 발생연령 | | 발생연령 | |
| | | 기간 | | 기간 | | 기간 | | 기간 | | 기간 | |
| | | 직 종 | | 직 종 | | 직 종 | | 직 종 | | 직 종 | |
| | | 대 상자 | | 대 상자 | | 대 상자 | | 대 상자 | | 대 상자 | |
| | | 의 료 급여종별 | | 의 료 급여종별 | | 의 료 급여종별 | | 의 료 급여종별 | | 의 료 급여종별 | |
| 장애사유 | 장애등급 | 시설통소(이 용) | | 시설통소(이 용) | | 시설통소(이 용) | | 시설통소(이 용) | | 시설통소(이 용) | |
| | | 소제지 | | 소제지 | | 소제지 | | 소제지 | | 소제지 | |
| | | 진화번호 | | 진화번호 | | 진화번호 | | 진화번호 | | 진화번호 | |
| | | 입소(이용)일자 | | 입소(이용)일자 | | 입소(이용)일자 | | 입소(이용)일자 | | 입소(이용)일자 | |
| | | 입소(이용)기간 | | 입소(이용)기간 | | 입소(이용)기간 | | 입소(이용)기간 | | 입소(이용)기간 | |
| 장애사유 | 장애등급 | 발급일 | | 발급일 | | 발급일 | | 발급일 | | 발급일 | |
|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 | | 배기량 | | 배기량 | | 배기량 | | 배기량 | | 배기량 | |
| | | 소유자 | | 소유자 | | 소유자 | | 소유자 | | 소유자 | |
| | | 반납일자 | | 반납일자 | | 반납일자 | | 반납일자 | | 반납일자 | |

210mm×297mm(백상지)(80g/㎡)

(을-3)

| 관리번호 | | 작성일자 :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 | | | | | 세대주 | |
|--------------|--------|---------------------------|------|------|--------|--------------|----------|-----------|--|
| 노인복지 대상자 | |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 | | | | | (서명 또는 인) | |
| 구분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검진일자 | 조치의견 | 검진의료기관 | 검진결과(정상여부 등) | | | |
| 건강진단 | 1차 검진 | | | | | | | | |
| | 2차 검진 | | | | | | | | |
| 취업알선 | 대상자 성명 | 희망직종 | 취업일자 | 취업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입소 (이용) | 대상자 성명 | 시설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입소(이용)일자 | 입소(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관리번호 | | 직상자 직명 | | | | 세대주 | | | | | | | | | |
|----------------|------------|-------------------------------|-------------------------------------|--------------------|----|--|--|------|-------|----------|--------|----------------|------------|----------------|--|
| | | (직상일자 :) | | | | 성명 (서명) | | | | | | | | | |
| 대상자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 | 수급사항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h>해당구분</th> <th>지급액구분</th> </tr> <tr> <td>[] 단독가구</td> <td>[] 전액</td> </tr> <tr> <td>[] 부부가구 1인 수급</td> <td>[] 감액(원)</td> </tr> <tr> <td>[] 부부가구 2인 수급</td> <td></td> </tr> </table> | | 해당구분 | 지급액구분 | [] 단독가구 | [] 전액 | [] 부부가구 1인 수급 | [] 감액(원) | [] 부부가구 2인 수급 | |
| 해당구분 | 지급액구분 | | | | | | | | | | | | | | |
| [] 단독가구 | [] 전액 | | | | | | | | | | | | | | |
| [] 부부가구 1인 수급 | [] 감액(원) | | | | | | | | | | | | | | |
| [] 부부가구 2인 수급 | | | | | | | | | | | | | | | |
| 이력 | 변동내역 |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이의신청 | 사유 | [] 수급 미해당 [] 기초연금 급여액 [] 수급권 상실 [] 부양이득 환수 [] 기타 | | | | | | | | | |
| | | 소득·재산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부담이득 | 결과 |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사망 [] 소득·재산 증가 [] 해외체류 60일 [] 재소자 [] 기타 | | | | | | | | | |
| | 기초연금 급여액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부담이득 | 금액 | 환수 | [] 환수완료 []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 | | | | | | | | |
| | 연금내역 | 변동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과태료 부과 | 금액 |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기타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 거짓자료 제출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 기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붙-5)

| | | | | | | |
|---------------------------------|---------------------|-----------|--------------------|-----------------|---|---|
| 관리번호 | | | | | 보호자 | 성명 |
|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지급개시일 |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 상실일 및 상실사유 | 수급사항 | |
| | | | | | 가구유형 | 보호유형 |
| | | | | |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조손 <input type="checkbox"/> 친인척·제3자 | <input type="checkbox"/> 시설보호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 조손(대리) [] 일반) <input type="checkbox"/> 입양대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이 력 내 역 |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 사유 | 이의신청 | <input type="checkbox"/> 수급 미해당 [] 아동수당금액여액 |
| | | [] 2회차 : | | | |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상실 및 중지 |
| | | [] 3회차 : | | | | <input type="checkbox"/> 부당이득 환수 [] 기타 |
| | | [] 4회차 : | | | | 결과 <input type="checkbox"/>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 | | [] 5회차 : | | | | 사유 <input type="checkbox"/> 사망 [] 해외체류 90일 <input type="checkbox"/> 귀적상실 [] 기타 |
| 보 호 자 변 경 이 력 | 보호자 변경이력 | [] 1회차 : | | 금액 | 부당이득 | 금액 |
| | | [] 2회차 : | | | | 환수 |
| | | [] 3회차 : | | | | 환수원로 <input type="checkbox"/>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
| | | [] 4회차 : | | | | 금액 |
| | | [] 5회차 : | | | | 금액 <input type="checkbox"/>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120,000원 [] 200,000원 |
| | | | | 과태료 부과 사유 | <input type="checkbox"/> 거짓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답변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210mm×297mm(백상지(80g/㎡))

(붙-6)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세대주 |
| 노숙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부랑인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복지욕구 | [] 시설입소 [] 취업입선 [] 직업훈련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기타() | | 시 설 입 소 | 대상자 | 시설명 | 소재지 | 입소일자 | 입소기간 | |
| | | | | | | | | | | | |
| 후원·자원봉사 내용 | | | | | | | | | | | |
| 후원 현황 | 후원자 | | 후원방법 (정기, 일시) | 후원기간 |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 | 후원용도 | 소년소녀 기장 | | 월후원액 | 후원금관리자 관 계 |
| | 성명/기관명 | 주소/전화번호 | | | 현 금 | 물 품 | | 후원금액 | 후원금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원 봉사 현황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방법 (방문요일/시간) | 자원봉사 기간 | 자원봉사 내용 | | 자원봉사 대상자 | 비 고 | | | |
| | 성명/기관명 | 주소/전화번호 | | | 자원봉사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앞면]

| | | | |
|---|---|--|------------------|
|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 |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 |
| 보장 구분 | | | |
| (전화번호 :) | | | |
| 용자자 연 대 포 01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용자자외의 관계 |
| 성 명 | | | 직 업 |
| 02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용자자외의 관계 |
| 성 명 | | | 직 업 |
| 자금종류 및 용 도 | |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자립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생업자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자금 <input type="checkbox"/>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사무보조기구입비 <input type="checkbox"/> 자기개발훈련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자립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생업자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시업 개요 | | | |
| 용자금액 | 금 | 원 | 용자일자 |
| 상환방법 | □ 거치기간이자 (매월, 분기, 연2회, 연1회) □ 원리금 (매월, 분기, 연2회, 연1회) | 년 월 일 | 용자기간 |
| | | 년 | 년 |
| | | 개월 | 개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월 | 월 |
| | | 일 | 일 |
| | | 년 | 년 |
| | | 월 | 월 |
| | | 일 | 일 </ |

[뒷면]

|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 응지일을 기준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작성 관리) | | | | |
|--|---|-------------|-------------|-------------|
| 조사회수 및 일자 | 1회(년 월 일) | 2회(년 월 일) | 3회(년 월 일) | 4회(년 월 일) |
| 상환여부 | | | | |
| 운영실태 | | | | |
| 조 사 자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 조사회수 및 일자 | 5회(년 월 일) | 6회(년 월 일) | 7회(년 월 일) | 8회(년 월 일) |
| 상환여부 | | | | |
| 운영실태 | | | | |
| 조 사 자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 조사회수 및 일자 | 9회(년 월 일) | 10회(년 월 일) | 11회(년 월 일) | 12회(년 월 일) |
| 상환여부 | | | | |
| 운영실태 | | | | |
| 조 사 자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 ※ 작성범례 | <input type="checkbox"/> 상환여부 (1:잔액상환, 2:일부상환, 3:잔액미상환) <input type="checkbox"/> 운영실태 (1:성공, 2:현상유지, 3:운영부실, 4:중도폐지)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제할용품))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시행 2023.1.1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 | | | | |
|---------------------|--------------------|--------|-----------|-----------|
| 수급자 (보호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거주지(소재지) | | | |
|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양의무자 | [] 기타() |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 | | | |
| 환수(반환) 사유 | | | | |
| 환수결정액 | | 원 | 납부장소 | |
| 기 납부액 | | 원 | | |
| 납부액 | | 원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일까지 | 산출내역 | 별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제 체납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 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4.1>

[1면]

| | | | | | | | |
|---|---|---|--|-----|-------------|------|----------|
| 가입 기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 | | | | 처리기간 30일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I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내일키움통장(<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금융)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A(매출액 10% 이상)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B(매출액 10% 미만)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C(매출액 '0'인 사업단) <input type="checkbox"/> 인턴·도우미형)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키움통장(만15~39세 이하인 생계수급 청년) <input type="checkbox"/> 청년저축계좌(만15~39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주소 | 전자우편 | | | | | |
| | 직업 | 근무지 및 주소 | | | | | |
| | 비상연락 | 관계 | 성명 | 연락처 | | | |
| 가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1. 신청내용 : 월별 저축액 _____ 원 ※ 저축기간은 36개월 2. 신청동기 * 가구특성, 현직장 근무경력,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안내받았다면 안내받은 지역자활센터명 등 적시 | | | | | | |
| 적립 및 사용 계획 | 3. 저축액 사용계획 <input type="radio"/> 저축목적 : <input type="checkbox"/> 주택구입·임대 <input type="checkbox"/>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input type="checkbox"/> 창업·운영자금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자립·자활 <input type="radio"/> 향후 자립·자활계획 : | | | | | | |
|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 | 미참여 / 참여(사업명 : _____, 기간 : _____, 수령액 : _____) | | | | |
| 희망·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 | 최초 / 재가입(사업명 : _____, 참여기수 : _____, 적립횟수 : _____) | | |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 _____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 할 것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축 동의서

동의

- 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적립금은 목적으로 한 적립수준이 도달할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희망키움통장 I(생계·의료급여 수급자통장), II(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해지*하여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해지 사유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희망키움통장 II)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시 등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미달,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청년저축계좌)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교육 이수 미충족,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시 등
-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

* 지급요건

- (통장 I)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통장 II) 3년 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가입기간 중 군입대 시 5년 이내 탈수급

(청년저축계좌) 3년 간 통장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총3회) 이수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일키움통장(지활근로사업단 참여자통장)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 입금과 지자체의 내일키움 적립 승인 및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신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모두 생성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과 가입유지 가능한 사업단에 성실참여(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하셔야 매월 적립 승인이 이루어지고 내일키움장려금이 생성되며 내일키움수익금은 참여하시고 계신 사업단의 수익금에 따라 차등 생성됩니다.
- 만약 저축 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 및 사용용도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환수해지*하여야 하며 가입유지 기간 동안 적립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 지급됩니다.

* 환수해지 사유 :

가입 가능한 지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교육 및 사례관리 연 4회 미만, 지급요건 (가.항 또는 나.항)** 미충족 등

** 지급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 (탈수급 포함)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나. 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제외)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금융복지지원사업 제외)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신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 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 | |
|-------|---|-----------------------------|
| 월 저축액 | 원 | ※ 저축기간은 36개월이며, 납입일은 매월 20일 |
|-------|---|-----------------------------|

-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자 (생년월일)

(성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4.1 >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 | | | | | |
|---|---|--|------|--|------|--|
| 구 분 |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II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내일키움통장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금융)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A(매출액 10% 이상)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B(매출액 10% 미만)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C(매출액 '0'인 사업단) <input type="checkbox"/> 인턴·도우미형)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키움통장(만15~39세 이하인 생계수급 청년) <input type="checkbox"/> 청년저축계좌(만15~39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
| | 근무지 | | | | | |
| 신청내용 | 월별 저축액 _____ 원 ※ 저축기간은 36개월 | | | | | |
| 구비서류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 | | |
| 본인적립금 입금기한 | 첫 입금 년 월 일까지 (이후 매월 입금일 20일까지)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를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대상으로 결정(추천)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희망·내일키움통장적립 예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민간위탁기관장 </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15px; margin-top: 10px;">직인</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margin-top: 20px;">문의 전화번호 :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_____ 귀하</p> | | | | | | |
| 구비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신청인의 위임장(인간증명서 1부)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p>※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의사항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수급권자의 소득·재산, ③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청 및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3.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5. 「의료급여법」 제3조의3 등에 의거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6.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 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8. 본인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재산 정보 등을 국가보훈처 또는 문화재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 또는 문화재청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9. 의료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의료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p>동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 <p>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p>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6.6.30>

| 현장 조사서 | |
|-------------|--|
| 조사 대상 | |
| 조사 목적 | |
| 조사 기간 | 20부터 20까지 |
| 조사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
| 조사의 범위 | |
| 관계 법령 | |
| 제출자료 | |
| 기타 | |
| 년 월 일 | |
| 기 관 명 |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직인</div>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Chapter

02

국
회
예
정
부
회
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5장

(사업별 서식 제2호)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 | | | |
|-------------------------------------|-----------------------|--|---------|---|--|
| 카드 신청인 | 성명 | 한글 | 대상자와의관계 | | |
| |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택주소 | | | 집전화 | |
| | | | | 휴대전화 | |
| 신청카드 | 카드 구분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문카드(임의선택불가)□ ※ 우체국, 신한 현대증권은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 신청구분 | 신규□ 재발급□ | |
| | 카드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한□ 현대증권□) |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 |
| 직장정보 (본인) | 직장명 | | | 부서명 | |
| | 직장주소 | | | 직장전화번호 | |
| 청구서수령지 | ① 주택 ② 직장 ③ 이메일 | | | 이메일 | |
| 카드수령지 | ① 주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 | 문자 알림 서비스(SMS) ① 신청 ② 미신청 | |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① 징구 ② 미징구 | | | 현금카드기능 [※ 현금카드 기능 가능여부 및 연결 계좌는 카드사별 상이] | |
| | (*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 | | | |
| 바우처 사용내역 e-mail발송 | ① 신청 ② 미신청 | | | 체크카드명세서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카드사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한 현대증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하의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이용할 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 그린카드(에코머니 멤버십) 서비스의 제공 정산¹⁾
- 롯데멤버스 및 롯데마트 다동이클럽 가입 및 서비스 제공·관리²⁾
-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하의 카드 관련 업무
-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하의 영업목적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정산의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아이행복카드 관련 제휴기관, 나이스 등 VAN사, 롯데멤버스 제휴사²⁾, 다동이 클럽 제휴사²⁾

■ 개인정보 활용 공공기관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수사기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¹⁾, 지방자치단체¹⁾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다만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를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 신청카드관련 제휴기관은 별도의 안내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서의 바우처카드 부분 작성 요령

1. 필수 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필수 기재사항 제외 : 직장 관련정보
2.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 기재란'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 표시
 - 신용카드 :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 체크카드 : 사용시 마다 연결계좌 잔고 내에서 즉시 결제가능
 - 전용카드 : 신용불량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요류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 청구서 수령지 -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 신용카드 : 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 체크카드 :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메일로 발송
 - 유의사항 :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읍·면·동 중 선택하여 표시하며 배송지별 관련배송정보기재
(예 : 자택 - 보호대상자주소, 직장 - 직장주소, 전화번호, 읍·면·동 - 읍·면·동주소)
※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자택 카드수령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로 카드수령 지정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배송지 정보 중 읍·면·동정보(읍·면·동명, 담당자명, 읍·면·동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읍·면·동주민센터의 해당내용으로 상세기재함.
예) 읍·면·동명 : 교1동사무소, 담당자명 : 홍길동, 읍·면·동주소 : 서울 종로구 교1동 112, 읍·면·동전화번호 : 02-1234-5678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14세 이상은 체크카드 발급가능
 - 14세 미만은 카드발급 불가
 - 현금카드 기능 - 카드사 및 은행별로 상이하여 카드발급 과정에서 별도 안내
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각 카드사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별 서식 제3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 | | | | |
|------------------------------------|--|--|--------|---|----|
| 발급 대상자 | 대상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 대리인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대상자와의 관계 | |
|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 | |
| 신청구분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 | 재발급사유 |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카드 수령지 | 수령인 |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족 등) | |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 |
| |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 수령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 | | |
| | 자택 | □□□□□□ | | 전화번호 | - |
| | 직장 | □□□□□□ | | 전화번호 | |
|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시간병방문지원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대리신청인) | | |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 | | | | 귀하 |

안내 및 유의사항

-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hapter

02

국민행복카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5장

(사업별 서식 제3-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 | | | |
|------------------------|--------|--|--|--|
|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 성명(한글)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법정대리인 | 성명(한글) | | |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사업별 서식 제5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input type="radio"/>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비우체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input type="radio"/> 보유 기간 :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 | | | | | | | | | |
|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nput type="radio"/>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input type="radio"/> 관 련 법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
|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국민행복카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input type="radio"/>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input type="radio"/>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 | | | | | | | | | |
|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60%;"><input type="radio"/>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동의함</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동의하지 않음</td> </tr> <tr> <td><input type="radio"/>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td> <td style="text-align: center;">[] 동의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 동의하지 않음</td> </tr> <tr> <td><input type="radio"/>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td> <td style="text-align: center;">[] 동의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 동의하지 않음</td> </tr> </table> | | | <input type="radio"/>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input type="radio"/>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input type="radio"/>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input type="radio"/>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
| <input type="radio"/>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
| <input type="radio"/>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
|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p> <p><input type="radio"/>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 | | | | | | | | | | |
| <p>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p> | | | | | | | | | | | |

【참고】 지출항목별 해당품목

| 지출항목 | 해당품목 | |
|-------|----------------|--|
| 식품비 | 1. 곡물 및 가공품 | 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
| | 2. 고기, 야채 |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
| | 3. 과일 | 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
| | 4. 빵 및 음료 |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
| | 5. 외식비 | 식사대, 학교급식대 |
| 주거비 | 6. 월세 | 월세 |
| 광열수도비 | 7. 수도요금 | 수도료 |
| | 8. 전기요금 | 전기료 |
| | 9. 취사, 난방비용 | 등유, 도시가스 |
| 피복신발비 | 10. 의복, 신발 | 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
| 의료비 | 11. 입원, 진료비 | 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
| | 12. 의약품비 | 양약, 조제약 |
| | 13. 간병비 | 가구원의 입원으로 발생하는 간병 비용 |
| 이자비 | 14. 채무이자 상환비 | 금융기관 등 채무로 매월 상환하는 이자액 |
| 교육비 | 15. 고교납입금 | 고교납입금 |
| | 16. 보육료 | 보육료 |
| | 17. 교재, 참고서비 | 중고교재, 참고서 값(1인당) |
| | 18. 학원비 | 입시 및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
| 교양오락비 | 19. 방송수신료 | 방송수신료 |
| | 20. 기타오락비 | 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
| 교통통신비 | 21. 교통비 | 버스, 택시, 지하철 및 전철, 화물운송료 |
| | 22. 자동차유지비 | 부품 및 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
| | 23. 전화요금 |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
| | 24. 인터넷이용료 | 인터넷이용료 |
| 기타 | 25. 담배, 술값 | 소주, 맥주, 담배 |
| | 26. 가사용품 및 서비스 | 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
| | 27. 가타 잡비 | 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
| | 28. 사회보험료 | 연금, 건강보험료 등 |

(사업별 서식 제9호)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 | | | 처리기간 | |
|---|--|------------|--|--|-------|-------|
| | | | | | 즉 시 | |
| 신 청 인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연락처 :) | | | |
| 복 지 급 여 ① | 복지대상자 (신청인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보장구분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한부모가족 [] 영아수당·양육수당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기타 (급여명:) | | | |
| | 계좌 | 현 행 | 금융기관 | | | 예 금 주 |
| | | | 계좌번호 | | | |
| | 변 경 | 금융기관 | | | 예 금 주 | |
| | | 계좌번호 | ※ 압류방지계좌여부(<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 | |
| 복 지 급 여 ② | 복지대상자 (신청인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보장구분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한부모가족 [] 영아수당·양육수당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기타 (급여명:) | | | |
| | 계좌 | 현 행 | 금융기관 | | | 예 금 주 |
| | | | 계좌번호 | | | |
| | 변 경 | 금융기관 | | | 예 금 주 | |
| | | 계좌번호 | ※ 압류방지계좌여부(<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 | |
|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10px 0;">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p> | | | | | | |
| 구비서류 | | 급여통장 사본 1부 | | | | |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23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apter

03

부 록

제1장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장 권한정리 통합 지침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인정보보호지침

1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01 | 개인정보보호지침



I 일반사항

1 목 적

- 이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발 행 일 2023년 3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인 쇄 처 대승사 (044-868-2037)
